



# 수원시체육회 정관



**수원시체육회**

# 수원시체육회 정관

제정 2021. 4. 27.

개정 2022. 3. 25.

**제1조(근거 및 명칭)** ① 이 법인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에 따라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체육 단체로 경기도체육회 정관 제6조 및 제35조에 따른 경기도체육회의 회원단체이다.

② 이 법인의 명칭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 제3항에 따라 ‘수원시체육회’라 하며, 영문으로는 “Suwon City Sports Council”이라 한다.

**제2조(목적)** ‘수원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는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수원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여가선용 및 복지향상과 체육인의 인권과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며 우수한 경기자 양성으로 수원시 및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체육회의 사무소는 수원시에 둔다.

**제4조(사업)** 체육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과 활동을 수행한다.

1. 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종목단체 및 동체육회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2. 수원시 내 각종 종합체육대회 개최 및 국제교류
3. 경기도체육회가 개최하는 각종 종합대회의 참가 및 경기도체육회가 승인한 사업의 주최·주관
4. 수원시 선수·지도자 및 직장운동경기부의 육성과 경기기술의 연구촉진
5. 수원시 체육인의 권익 증진, 복지 및 교육 관련 사업
6. 수원시민 생활체육 운동전개 및 생애주기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
7. 수원시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
8. 수원시의 학교체육(청소년체육활동 포함), 전문체육, 생활체육의 진흥 및 연계 사업
9. 수원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10. 수원시 체육역사 발굴, 확산 등 문화사업
11. 수원시 스포츠응원단 및 태권도시범단 운영 사업
12. 수원시로부터 수탁 받은 업무와 이와 관련된 제반 사업
13. 체육회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원 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14. 그 밖의 수원시 체육진흥 및 체육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5조(체육회 제공이익의 수혜자)** ① 체육회는 목적사업을 수행할 때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으로 한다. 다만,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체육회의 목적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종교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 제2장 회 원

**제6조(조직)** ① 체육회의 회원단체는 회원종목단체와 동체육회로 구성하며, 정회원단체, 준회원단체 및 인정단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원단체의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회원단체’는 정회원단체로서의 권리 및 의무사항을 이행할 것에 대해 동의하여 체육회 이사회를 거쳐 대의원총회(이하 “총회”라 한다) 의결로 회원 가입을 확정된 단체를 말한다.
2. ‘준회원단체’는 체육회 이사회의 의결로 준회원단체로서 가입을 승인받아 권리 사항을 제한받는 단체를 말한다.
3. ‘인정단체’는 체육회 이사회의 의결로 해당 단체의 대표성을 한시적으로 인정받을 뿐 권리와 의무사항을 적용받지 않는 단체를 말한다.

③ 동체육회는 체육회 정회원단체로 한다.

**제7조(권리와 의무)** ① 체육회는 경기도체육회 정관 제8조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② 체육회는 경기도체육회 이사회에서 정한 시기에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체육회는 대한체육회 정관 제2조 제4항과 같이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도핑방지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회원종목단체의 권리와 의무)** 회원종목단체 및 동체육회의 체육회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대한체육회 정관 제10조를 준용한다.

**제9조(관리단체의 지정)** ① 체육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종목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체육회의 정관 또는 규정으로 정한 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때
2. 60일 이상의 회원종목단체장의 궐위 또는 사고
3. 대한체육회 및 경기도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와의 분쟁
4. 타 지역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및 해당 회원종목단체 내의 각종 분쟁
5. 재정악화 등 기타 사유로 정상적인 사업수행 불가

② 체육회가 관리단체를 지정하려는 경우 회원종목단체 또는 그 대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관리단체로 지정된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은 관리단체로 지정된 날로 그 직에서 즉시 해임된다.

④ 관리단체로 지정된 정회원단체는 체육회의 총회 개최 시 재적대의원 수에는 포함되나 출석대의원 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다.

⑤ 관리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체육회의 ‘관리단체운영규정’을 준용하여 별도로 정한다.

⑥ 경기도체육회가 ‘경기도종목단체 규정’에 따라 체육회 회원종목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것을 요구한 경우 체육회는 해당 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하고 그 결과를 경기도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가입 및 탈퇴 등)** ① 제6조에 따라 체육회의 회원이 되려는 종목단체는 경기도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에 회원으로 가입을 한 후 체육회에 회원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종목단체는 탈퇴서를 제출하고 체육회에서 탈퇴할 수 있다.

③ 체육회는 경기도체육회 ‘가입·탈퇴규정’에 따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정한다.

④ 경기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가 결성되지 않은 종목이 체육회의 회원이 되고자 할 경우에는 체육회 ‘가입·탈퇴 규정’에 따라 가입할 수 있다.

**제10조의2(회원종목단체의 강등·제명)** ① 정회원단체 또는 준회원단체가 제8조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회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체육회는 총회에서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강등 또는 제명할 수 있다.

② 인정단체가 제8조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회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체육회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원종목단체를 강등 또는 제명하려는 경우에는 그 의결에 앞서 해당 단체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이 정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회원종목단체의 강등 또는 제명에 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 제3장 총 회

**제11조(총회의 구성)** ① 체육회의 총회는 정회원단체의 장으로 대의원을 구성한다.

② 제1항의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③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총회 3일 전까지 체육회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대의원 자격을 가진 사람이 체육회의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대의원 자격을 상실하며, 해당 단체에서 추천한 부회장 1명이 대의원이 된다.

**제12조(총회의 기능)** 체육회의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체육회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정회원단체의 가입, 강등 및 제명
3. 준회원단체의 강등 및 제명
4. 임원의 선임(사무국장 선임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해임에 관한 사항
5.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 사항

**제13조(의장)** ① 총회의 의장은 체육회의 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회장이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 또는 정한 순서가 없을 경우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의장이 된다.

② 제14조 제3항에 따라 소집된 총회의 경우에는 해당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이사, 대의원 또는 감사 중 연장자가 총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출석대의원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대의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 제14조(총회의 소집) ① 체육회의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5일 이내에 회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4. 제28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③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어나 대의원, 감사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④ 총회의 소집은 개최 7일 전까지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⑤ 총회는 통지된 안건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하여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 ⑥ 총회는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없다.

**제15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총회는 이 정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16조(총회 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자신과 체육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 제17조(임원의 불신임)** ① 총회는 체육회의 임원(사무국장을 포함한다. 이 조에서 이와 같다)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으며, 일부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선출된 날로부터 만 1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 ③ 해임안은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해임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해당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 ⑤ 해임안이 의결되면 총회는 빠른 시일 내에 신임임원을 선출하여 체육회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 제 4 장 이사회

- 제18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체육회의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된다.
- ② 체육회의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규정의 제정 및 개정

3. 기본재산의 편입에 관한 사항
4.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사무국장의 임면동의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8. 준회원단체·인정단체의 가입승인 및 인정단체의 제명
9. 기타 중요사항

**제19조(이사회회의 소집)** ① 회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5일 전까지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8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소집되지 않은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 중 연장자가 이사회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그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이사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⑤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⑥ 이사는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자신과 체육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⑦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통신수단 등에 의해 심의 및 결의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20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21조(긴급한 업무의 처리)** 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서면결의)** 회장은 회의에 올리고자 하는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서면결의로 이사회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가 정식으로 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제 5 장 임 원

**제23조(임원)** ① 체육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9명 이하(전문체육, 생활체육, 학교체육, 여성체육을 대표하는 인사 각 1명 이상 포함)
3. 이사 26명 이상 70명 이하(회장, 부회장, 사무국장을 포함한다) <개정 2022. 03. 25.>
4. 감사 2명

② 체육회의 임원은 체육회에서 다른 임원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

③ <삭 제> 2022. 3. 25.

**제24조(회장의 선출)** ① 회장은 대의원확대기구에서 선출한다.

② 대의원확대기구는 다음 각 호의 선거인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단체의 장
2. 체육회 정회원단체의 대의원 중 추천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

③ 제2항 제2호에 따른 선거인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차등을 둘 수 있다.

1. 종목의 규모(지도자, 선수, 동호인의 수 등을 말한다)
2. 동의 인구 규모

3. 종목의 특성(회장선거 직전에 개최된 전국체전, 소년체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등 각종 종합대회의 종목으로 채택되었는지를 말한다)

④ 선거일 결정과 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선거와 관련된 사무의 처리 및 의사결정을 위하여 선거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선거운영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을 포함한 이사가 제17조에 의한 해임의결 또는 사임, 법원에 의한 직무정지 등으로 26명 미만이 되거나, 임기 만료로 이사회가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의원총회에서 선거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3. 체육회와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전체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4.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체육회와 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으로 선임될 수 없다.

⑤ 체육회는「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의2 제7항에 따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회장 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회장을 포함한 비상임 임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의 임기 만료일 전 90일까지 후보자 등록 의사를 사무국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상임임원 및 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의 임기 만료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⑧ 회장이 제6항에 따라 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을 때에는 제출한 때부터 선거일까지 제26조 제1항에 따른 부회장(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자는 제외한다)이 직무를 대행하되, 부회장 전원이 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은 이사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⑨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 회장은 그 다음날부터 종전의 직무로 복귀한다.

1. 제6항의 후보자 등록의사를 사무국에 서면으로 철회한 경우
  2. 후보자 등록 마감일까지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3. 후보자 등록 이후 후보자에서 사퇴한 경우
- ⑩ 제8항에도 불구하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관계 업무에 한해 체육회를 대표할 수 있다.
1. 국외에서 개최되는 체육 관련 행사·대회·회의 및 교섭 등
  2. 국제올림픽위원회, 아시아올림픽평의회,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가 주최하거나 주무 부처와 합의한 국내 개최 국제행사(대회, 회의를 포함한다)
- ⑪ 제6항에 따라 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비상임 임원은 제출한 때부터 선거일까지(다만, 철회하거나 사퇴할 경우에는 그 날까지로 한다) 회장 선거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⑫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등록신청 시에 선거관리를 위탁받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 가능한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⑬ 회장의 선출방법 및 당선인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회장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유효투표 중 다수의 득표를 한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2. 다수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3. 후보자가 1명인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⑭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회장 후보자의 자격요건, 결격사유, 기탁금액 및 반환 조건, 대의원확대기구의 규모와 구성, 등록 및 선거 절차, 선거운영위원회의 설치, 부당한 선거개입 및 그에 따른 징계 등 회장선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제25조(선거의 중립성)** ① 체육회의 임직원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 등 체육단체의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체육회 관계단체의 다른 임직원, 대의원, 선거인 등에 대하여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이에 따른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체육회의 임·직원이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 재적이사 3분의 1 또는 대의원 4분의 1 동의로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체육회 이외 체육회 관계단체가 요구하는 경우 체육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③ 경기도체육회는 체육회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체육회 회장선거 관리 등에 관하여 개선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체육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6조(회장의 직무대행)** ①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한 부회장 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며, 부회장이 없을 경우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사람이 경기도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하며, 궐위된 날로부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선출하여야 하며,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장의 직무대행자는 통상적 사무를 수행하며, 정책의 전환, 인사의 이동 등 현상유지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를 처리할 수 없으나 긴급한 사안인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로 처리할 수 있다.

**제27조(임원의 선임)** ① 부회장 및 이사(사무국장을 제외한다)는 회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로 선임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기 총회에서 선임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위임된 임원 선임권한의 기한은 총회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임 받은 이후 첫 번째 이사회 개최 직전까지 유효하다.
- ③ 체육회는 학교체육 전문가 1명을 부회장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 ④ 임원은 학교체육, 전문체육, 생활체육을 대표하는 인사를 포함하여 고르게 구성되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1. 동일 대학(학사)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임원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 2. 전문체육관계자가 재적임원수의 3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3. 생활체육관계자(선수 출신을 제외한다)가 재적임원수의 3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4. 교육계인사가 재적임원수의 2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5. 비경기인(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재적임원수의 2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6. 특정 성별의 비율이 7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되, 정회원단체 중 회원종목단체 대표인 대의원 중에서 행정감사 1명,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회계감사 1명을 선임한다.
- ⑥ 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추천한 자를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차기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⑦ 회장은 경기도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하며, 인준 후에 임원의 결격 및 기타 사유가 드러나 인준에 하자가 있는 경우 경기도체육회가 직권으로 인준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 ⑧ 경기도체육회가 구비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아 회장의 인준을 하지 않는 경우 즉시 해당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⑨ 제11조 제1항에 따라 대의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체육회의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제23조에 따라 정한 이사 정수(회장, 부회장 포함)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1개 단체에서 1명만 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28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체육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결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할 때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체육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
  -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부당한 것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수원시장에게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 ⑤ 임원이 체육회의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경우
  - 2.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 3.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

⑥ 임원이 체육회(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 회원단체, 시·도 및 시·군·구 종목단체를 포함한다)와 관련된 비위의 사실로 대한체육회 또는 경기도체육회의 감사처분을 받아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⑦ 임원이 체육회 운영 이외의 범죄사실로 구속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⑧ 체육회 회원종목단체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체육회의 임원이 된 사람이 해당단체에서 직무가 정지되었을 경우 체육회 임원으로서의 직무도 정지된다.

**제29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사무국장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사무국장이 임원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육회의 임원(사무국장을 제외한다)은 경기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장의 임기 횟수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외의 다른 임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부회장의 임기 횟수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나 이사 및 감사, 사무국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⑤ 제1항에 따라 이사 및 감사의 임기 횟수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및 부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나, 사무국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⑥ 회장의 임기는 회장으로 당선된 후 직근 정기총회일로부터 시작되어 이후 4번째 정기총회일 전날까지로 한다. 다만, 보궐선거에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이 확정된 날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⑦ 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부회장 및 이사로 선임된 정기총회일로부터 시작되어 이후 4번째 정기총회일 전날까지로 한다. 다만, 총회가 이사 선임을 회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회장이 이사 선임을 한 날에 임기가 시작된다.

⑧ 감사의 임기는 감사로 선임된 정기총회일 다음날부터 시작되어 이후 2번째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임원수가 증원되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다른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4.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 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부터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5.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 단체에서 재직 중에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가.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나.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다.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② 회장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 ③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은 임원이 될 수 없다.
- ④ 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회의 명예회장, 고문 등 일체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

**제31조(임원의 사임 및 해임 등)** ① 회장을 제외한 임원이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가 사임할 경우에는 사무국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②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본다.

1. 제27조 제7항에 따라 인준이 취소 또는 철회된 사람
2. 제3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
3. 체육회의 회원단체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이 해당 단체에서 해임되거나 사임하는 경우

③ 경기도체육회는 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단체 지정 요구서가 접수된 30일 전부터 또는 체육회가 관리단체를 지정하였을 시 이사회 안건을 회장, 부회장, 이사에게 통지한 날 30일 전부터 관리단체 지정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는 임원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32조(임원의 보수)**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 제 6 장 회원단체

**제33조(회원종목단체의 조직 및 구성)** ① 체육회 회원종목단체는 지역내 종목의 팀, 클럽(동호회 등)단체로 조직한다.

② 체육회 회원종목단체의 조직, 운영 등에 관해서는 경기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제34조(회원종목단체 임원의 인준 등)** ① 체육회 회원종목단체의 회장, 부회장은 경기도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의 인준동의서를 첨부하여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② 체육회의 인준 후 임원의 결격사유 및 기타 사유가 드러나 인준에 하자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인준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③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임원의 연임 제한 횟수 산정 시 해당 회원종목단체 및 다른 시·군·구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 임원의 경력도 포함한다.

## 제 7 장 각종위원회

**제35조(동체육회의 조직 및 구성)** ① 체육회의 회원단체인 동체육회는 해당 동의 종목단체를 회원으로 둘 수 있다.

② 동체육회는 이사회의 자문기구로 학교체육위원회와 생활체육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③ 동체육회 임원의 임기, 결격사유 등에 관해서는 체육회 동체육회 규정을 준용한다.
- ④ 동체육회의 조직, 운영 등에 관해서는 경기도체육회 시군체육회 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제36조(동체육회 임원의 인준 및 취소)** ① 동체육회의 회장은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 ② 동체육회는 학교체육전문가 1명을 부회장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 ③ 체육회는 동체육회의 회장 인준 후 임원의 결격사유 및 기타 사유가 드러나 인준에 하자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인준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제37조(각종 위원회의 설치)** ① 체육회는 사업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기구로 학교체육위원회, 생활체육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설치한다.

- ② 체육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제1항 이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③ 위원회 위원은 다른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으며,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원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동일 대학(학사)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원수의 20%를 부득이하게 초과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초과하여 구성할 수 있다.
- ④ 제1항의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체육회의 해당 위원회 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제38조(스포츠공정위원회)** ① 체육회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한다.

1. 체육회, 회원단체의 정관 및 규정 관리
2. 체육회, 회원단체 및 개인에 대한 포상 또는 징계
3. 회원단체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인정 심의

②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로 선임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장은 외부인사가 과반수 포함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의견을 들어 선임하고 그 결과를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법학자, 법조인 등 법률업무 종사자
2. 스포츠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스포츠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인권 분야에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종목단체로부터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
2.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임·직원인 사람

④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은 다른 각종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으며,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원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동일 대학(학사)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원수의 20%를 부득이하게 초과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총회의 의결 또는 선임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했을 때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초과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⑤ 이 밖에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체육회 정관 및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제3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제30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회가 설치하는 제35조 및 제36조의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 ②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보수·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15명 이하(위원장, 부위원장 포함)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39조의2(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제35조 및 제36조의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심의 대상자가 친족(「민법」제777조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인 경우
  - 2. 위원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심의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 3. 심의 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이해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 4. 그 밖에 심의의 공정성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
- ②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안의 심의에 대해 위원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 제 8 장 재 산 및 회 계

**제40조(재산의 구분)** ① 체육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한다.

-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2. 부 동 산
- 3. 기 금
- 4. 운영재산 중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 5. 이익잉여금 중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③ 기부금품의 사용용도는 기부하는 자의 지정에 따른다. 다만, 지정이 없을 경우에는 체육회가 정한다.

**제41조(재원)** 체육회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체육회의 운영을 하기 위해 지출하는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 1. 회원단체의 회비
- 2.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 3. 기부금 및 찬조금
- 4. 사업수익금
-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 6. 공공단체의 지원금·보조금
- 7. 기타수입금

**제42조(잉여금의 처리)** 체육회의 매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

- 1. 이월결손금의 보전

- 2. 차기 회계연도 목적사업비로 이월
- 3.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적립

**제43조(재산의 관리)** ① 체육회는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재정적·업무적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원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체육회가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체육회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체육회의 재산관리에 있어 이 정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것은「국유재산법」및「물품관리법」, 수원시 조례 등의 일반적인 관리의무 규정을 준용한다.

**제44조(재산의 대여 및 사용)** 체육회의 재산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제외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그 외의 사람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가 없이는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1.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의 회원단체,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체육회의 회원단체, 체육회 및 체육회 회원 단체의 임·직원
- 2. 체육회의 임직원과「민법」제777조의 규정에 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비법인 단체를 포함한다)
- 3. 기타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의 회원단체,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체육회의 회원단체, 체육회 및 체육회 회원 단체의 재산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제45조(회계연도)** 체육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6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체육회는 매 회계연도 시작 전에 수원시와 긴밀한 협의 및 조정을 거쳐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체육회가 예산 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수원시와 긴밀한 협의 및 조정을 거쳐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체육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결산서(재산증감사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작성하여 수원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7조(회계감사 등)** ① 체육회의 회계감사는 연 1회 실시한다.

② 체육회는 회원단체의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 등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다.

③ 체육회의 회계처리는 복식부기를 원칙으로 하고, 재산 및 회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제48조(체육회의 감사·징계 등)** ① 체육회 및 체육회 회원단체는 대한체육회 및 경기도체육회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관련 규정 및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대한체육회 및 경기도체육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육회 및 체육회 회원단체에 대하여 조직운영, 사업, 회계 등 전반에 관하여 조사·감사할 수 있으며, 체육회 및 체육회 회원단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체육회 및 체육회 회원단체가 경기도체육회의 정관, 제 규정 및 총회 의결사항을 위반하거나 경기도체육회로부터 지원받은 재정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 하였을 경우 경기도체육회는 체육회에 대하여 정관 및 관련 규

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단체는 경기도체육회의 요구를 따라야 한다.

④ 제2항과 대한체육회 주무부처장관의 요구에 따라 실시한 조사·감사 결과 업무와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밝혀지면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체육회 및 체육회 회원단체와 관계자에 대해 징계처분 또는 시정조치를 하거나 해당 단체에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단체는 대한체육회의 요구를 따라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대한체육회의 조사·감사 및 징계 요구는 대한체육회의 ‘감사규정’ 과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따른다.

## 제 9 장 사무국

**제49조(사무국)** ① 체육회는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④ 체육회는 임원의 친족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다만, 임원 취임 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된 사람은 예외로 한다.

⑤ 직원은 법령 및 ‘인사규정’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⑥ 사무국장과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50조(사무국 직제 등)** 사무국의 기구, 조직, 직제 및 복무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 제10장 보 칙

**제51조(해산)** ① 체육회는 재적대의원의 4분의 3 이상의 해산결의 또는 수원시장의 설립인가 취소로 해산한다.

② 체육회가 해산하였을 때에는 잔여재산은 수원시에 귀속한다. 다만, 이사회 의결을 거쳐 수원시장의 허가를 받아 체육회의 목적과 유사한 공공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제52조(정관의 변경)** ① 체육회는 경기도체육회 시·군체육회 규정(이하“시·군체육회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정관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② 체육회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의결 또는 재적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 후 경기도체육회에 보고하고 통보받은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체육회 총회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수원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체육회는 경기도체육회에 정관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개·수정 및 삽입이 필요하다고 요구받았을 경우 체육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3조(규정의 제정 및 개정)** ① 체육회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을 제정 및

개정한다.

② 체육회는 규정의 제·개정을 할 경우 해당 내용을 전자문서를 통해 경기도체육회에 알려야 한다.

③ 체육회의 정관 및 규정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54조(규정의 해석 등)** ① 경기도체육회의 시·군체육회 규정(이하 '시·군체육회 규정'이라 한다)은 이 정관에 우선하며, 이 정관과 시·군체육회 규정이 상이할 경우, 반드시 시·군체육회 규정에 따라야 한다.

② 체육회가 경기도체육회 정관, 시·군체육회 규정 및 기타 규정을 준용할 수 없거나 해석상 불분명한 사항은 경기도체육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55조(제한사항)** 체육회가 경기도체육회 정관, 제규정과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경기도체육회가 이사회 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른 권리 등을 제한 할 수 있다.

1. 경기도체육회 총회에 권한의 위임을 받은 대의원을 파견하여 발언, 의결할 권리
2. 대한체육회 및 경기도체육회 선거인 후보자 추천 권리
3. 경기도체육회에 건의 및 소청할 권리
4. 경기도체육회 주최·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할 권리
5. 경기도체육회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주관할 수 있는 권리
6. 대한체육회 및 경기도체육회 재정 지원
7. 국내대회 유치 및 개최
8. 국제대회 유치

**제56조(경영공시)** ① 체육회는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경영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시항목은 이사회 및 총회 회의결과, 예산집행내역, 외부평가, 감사결과와 그 외 체육회 회장이 정한 것으로 한다.

## 부 칙(2021.04. 27.)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경기도체육회 승인을 거쳐, 수원시장의 승인을 받아 설립등기를 마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권리·의무·재산 및 회원의 승계 등)** 설립 등기한 체육회는 법인설립 이전 '수원시체육회'의 모든 권리·의무·재산 및 회원을 포괄 승계하며, 법인설립시 이전 '수원시체육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제 3 조(경과조치)** ① 이 정관 시행 전 체육회의 법인설립을 위하여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정관 시행 당시 체육회의 임·직원은 「국민체육진흥법(법률 제17580호) 부칙 제7조 1항」에 따른 체육회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로부터 기산 하고 임기의 만료일은 제2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3년 정기총회일 전날까지로 하고 감사는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③ 이 정관 시행 당시 (구)수원시체육회가 행한 행위는 「국민체육진흥법(법률 제17580호) 부칙 제7조 제2항」에 따



라 체육회가 행한 행위로 본다.

④ 체육회의 임원(당연직 공무원 및 사무국장은 예외로 한다)의 연임횟수에는 (구)수원시체육회 및 (구)수원시생활체육회의 임원의 연임 횟수도 포함하여 산정한다.

⑤ 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 임원의 연임횟수에는 (구)수원시가맹경기단체와 (구)수원시종목별연합회의 임원의 연임횟수도 포함하여 산정한다.

부 칙 <2022. 3. 25>

(시행일) 이 정관은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회원종목단체 규정



**수원시체육회**

#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 정 2021. 12. 30.

## 제1장 총 칙

**제1조(근거 및 명칭)** ① 이 규정은 수원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정관 제6조 및 제33조, 34조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이 승인된 수원시 종목단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② 수원시종목단체(이하 “종목단체”라 한다)는 해당 종목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명칭을 정하여야 하며 수원시 ○○○○협회(회 또는 연맹)라 하고, 그 영문명칭도 별도로 정한다.

**제2조(목적 및 지위)** ① 종목단체는 해당 종목운동을 시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시민체력을 향상케 하며, 건전한 여가선용과 명량한 기풍을 진작하는 한편 운동선수 및 그 단체를 지원·육성하고 우수한 선수를 양성하여 국위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종목단체는 해당 종목을 소관하는 종목단체 등 경기도체육기구에 대하여 독점적 교섭권을 갖는 해당 종목의 유일한 단체로서 수원시를 대표한다.

**제3조(소재지 등)** ① 종목단체의 사무소는 수원시 관내에 둔다.

② 회원종목단체 중 정회원단체 및 준회원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제4조(사업)** ① 종목단체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수행한다.

1. 해당 종목에 관한 기본방침의 심의·결정
2. 해당 종목대회에 관한 자문 및 건의
3. 해당 종목에 관한 전국·국제대회 개최 및 참가
4. 해당 종목 대회의 주최 및 주관
5. 해당 종목 경기기술의 연구 및 향상
6. 해당 종목의 선수, 심판 및 운영요원 등의 양성
7. 해당 종목의 등록팀 및 동호인 조직 육성 지원
8. 해당 종목의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9. 해당 종목단체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원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10. 그 밖에 해당 종목 진흥 및 종목단체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종목단체는 등록팀 및 동호인조직 요청에 따라 소관범위 내 종목 보급 및 대회개최를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수원시 및 경기도이상 규모의 사업은 종목단체가 주최해야 한다.

## 제2장 조 직

**제5조(조직)** ① 동 종목단체와 등록팀, 동호인조직은 시종목단체의 대의원총회(이하 “총회”라 한다.)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 가입 할 수 있다.

② 동 종목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친 후 동체육회의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 ③ 종목단체는 총회의결을 거쳐 제4조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시규모연맹체를 설치할 수 있다.
- ④ 시종목단체에 대한 동체육회, 등록팀, 동호인조직 등의 권리와 의무는 본회 규정 제7조를 준용한다.

**제5조의 2(시규모연맹체)** ① 제5조 제3항에 따른 시규모연맹체는 구연맹체를 둘 수 없다. 다만, (구)수원시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와 (구)수원시생활체육회의 수원시종목별연합회가 시종목단체와 그 산하의 수원시규모연맹체로 통합한 경우에는 회원으로 구연맹체를 둘 수 있다.

② 종목단체는 수원시규모연맹체의 조직, 운영, 권리 및 의무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해 이사회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정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규약의 승인
2. 임원의 인준
3. 임원의 임기 횡수제한의 예외심사
4. 정기가사의 실시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③ 종목단체는 수원시규모연맹체에 대해 제2항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규정의 승인, 임원의 인준, 임원의 임기 횡수제한의 예외 심사, 정기감사의 실시 등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정하여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종목단체는 수원시규모연맹체에게 소관 범위 내의 대회 개최권을 줄 수 있다.

**제6조(본회에 대한 권리와 의무)** 종목단체는 본회 정관 제7조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 제3장 총 회

**제7조(총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종목단체의 총회는 다음 각 호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5. 25.>

1. 제5조 제2항에 따른 동종목단체, 등록팀, 동호인의 장
  2. 제5조 제3항에 따른 시규모연맹체의 장
- ② 제1항의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 ③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총회 3일 전까지 종목단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대의원수가 7명 미만으로 총회 구성이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29조 제4항에 따른 등록팀과 동호인 조직(스포츠클럽을 포함한다.)의장을 포함하여 총회를 구성할 수 있다.
- ⑤ 제4항의 대의원을 포함한 대의원수가 7명 미만인 종목단체는 본회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대의원 구성을 할 수 있다.
- ⑥ 제1항에 따라 대의원 자격을 가진 사람이 종목단체의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대의원 자격을 상실하며, 해당 단체에서 추천한 부회장 1명이 대의원이 된다.
- ⑦ 제1항의 대의원이 임기 중에 교체된 경우에는 동체육회의 인준사항을 시종목단체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⑧ 종목단체의 임원은 대의원 및 대의원의 대리인이 될 수 없다.
- ⑨ 종목단체의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종목단체의 해산 및 규약변경에 관한 사항
2. 동종목단체 및 등록팀, 동호인조직 및 수원시규모연맹체의 설치 회원가입 및 제명
3. 종목단체 임원의 선출 및 이사의 증원, 임원 해임에 관한 사항
4.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중요사항

**제8조(총회의 소집)** ① 종목단체의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종목단체의 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이 소집하여야 하며, 정기총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종목단체의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5일 이내에 회장이 개최하여야 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4. 제24조 제4항 제5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총회 소집권자의 결위 또는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도 불구하고 종목단체의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않은 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어나 대의원(회장직무대행 포함) 및 감사가 본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임시총회의 소집은 개최 7일 전까지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총회는 통지된 안건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하여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⑥ 총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염병 또는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으로 대면회의 실시가 어려울 경우 원격통신수단 또는 서면결의서 제출 등의 방식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이 경우 비공개 또는 무기명 투표가 필요한 안건은 의결할 수 없다.

**제9조(의장)** ①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회장이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 또는 정한 순서가 없을 경우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의장이 된다.

② 제8조제3항에 따라 소집된 총회의 경우에는 해당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이사, 대의원, 또는 감사 중 연장자가 총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출석대의원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대의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제10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의 과반수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관리단체는 재적대의원 수에는 포함되나 출석대의원 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다.

② 제명안은 총회에서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동종목단체(수원시규모연맹체 포함)를 제명하려는 경우에는 그 의결에 앞서 해당 단체에게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명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 제11조(임원의 불신임)** ① 총회는 종목단체의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으며, 일부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선출된 날부터 만 1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임원이 기소된 경우에는 경과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 ③ 해임안은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그 의결에 앞서 해당 임원에게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④ 해임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해당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 ⑤ 해임안이 의결되면 총회는 빠른 시일 내에 신임임원을 선출하여 종목단체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12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주고 받음을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종목단체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13조(총회의 운영)** 이 규정 외 종목단체의 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본회의 정관과 대한체육회의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규정'을 준용한다.

## 제4장 이사회

**제14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종목단체의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종목단체의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규정의 제정 및 개정
3. 기본재산의 편입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중요사항

**제15조(이사회의 소집)** ① 회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5일 전까지 안건·일시·장소를 분명하게 적어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5조 제4항 제5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소집되지 않은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 중 연장자가 이사회 소집권자가 되고,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이사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⑤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⑥ 이사는 금전 및 재산의 주고 받음을 수반하는 사항 등으로 자신과 종목단체의 이해가 상반될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⑦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원격통신수단 등에 의해 심의 및 결의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16조(이사 및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긴급한 업무의 처리)** ① 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으며,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회장은 회의에 올리고자 하는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서면결의로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가 정식으로 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는 이에 따른다.

## 제5장 임 원

**제18조(임원)** ① 종목단체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7명 이하(전문, 생활, 지역, 여성체육을 대표하는 인사 각 1명씩 포함 권고)
3. 이사 15명 이상 29명 이하(회장, 부회장 포함. 단, 최소 이사 정원은 최대 이사 정원에 과반수로 구성한다)

4. 감사 2명

② 종목단체의 임원은 해당 종목단체에서 다른 임원의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

③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임원의 수는 종목단체 총회의 의결로 10명 이하의 범위안에서 증원할 수 있다.(이사로 한정)

④ 임원은 등록선수로 활동 할 수 없으나 종목단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달리 할 수 있다.

**제19조(회장의 선출기구)** ① 회장은 회장선출기구에서 선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총회에서의 회장 선출이 불가피한 종목단체는 본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본회는 이에 따른 심사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장선출기구는 대의원, 선수, 지도자(종목단체의 임직원은 제외한다), 동호인(종목단체의 임직원은 제외한다) 등으로 10인 이상 150인 이내로 구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종목단체의 회장선출기구 인적 구성은 대한체육회의 「정관」 제24조를 준용한다.

**제19조의 2(회장선거 후보자 등록)** ① 회장선거 후보자는 해당 종목단체에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등록 시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회장 후보자 등록을 위한 제출서류, 종목단체별 기탁금의 금액 등 종목단체 회장 선거를 위해 필요한 사항

은 종목단체가 본회의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 후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회원, 준회원 단체에 한한다.

**제19조의 3(당선인 결정)** ① 회장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유효투표 중 다수의 득표를 한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 다수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③ 후보자가 1인인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6조에 따라 임원의 결격사유를 심사하고 하자가 없을 경우 그 1인을 투표 없이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19조의 4(기탁금 반환)** ① 종목단체는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납부 받은 기탁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30일 이내에 후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되지 않는 기탁금은 종목단체에 귀속된다.

1.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
2. 후보자가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기탁금 반환의 기준으로 정한 유효투표 총수의 비율을 기준으로 종목단체 특성에 따라 100분의 25의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다.

**제20조(선거의 중립성)** ① 종목단체는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소재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종목단체에서 직접 선거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중립적인 인사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종목단체가 직접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7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다만, 회장을 포함한 이사가 제11조에 의한 불신임 의결, 사임 또는 법원에 의한 직무정지 등으로, 이사 15명 미만이 되어 정상적인 이사회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총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3. 종목단체와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4.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종목단체와 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으로 선임될 수 없다.

③ 종목단체의 임·직원은 체육회의 대한체육회의 회장선거,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및 시·도종목단체, 시·군체육회 및 시·군종목단체 등 체육단체의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 밖의 선거결과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대한체육회의 회장선거,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및 시·도종목단체, 시·군체육회 및 시·군종목단체의 다른 임직원, 대의원, 선거인단 등에 대하여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이에 따른 보상 또는 보복으로써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해서는 안 된다.

④ 종목단체의 임·직원이 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 재적이사(다른 체육단체의 경우 해당단체의 재적이사로 한다) 3분의 1 또는 재적대의원(다른 체육단체의 경우 해당단체의 재적대의원으로 한다) 4분의 1의 동의로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본회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본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⑤ 본회는 종목단체의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해 종목단체에 회장선거 관리 등에 관하여 개선을 지시할 수 있다.

**제21조(회장의 사고 또는 결위 시 직무대행)** ①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에는 회장이 부



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 또는 정한 순서가 없을 경우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단, 외국 국적의 부회장은 제외한다.

- ② 직무대행의 기간이 사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는 통상적 사무를 수행하며, 정책의 전환, 인사의 이동 등 현상유지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를 처리할 수 없으나 긴급한 사안인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로 가능할 수 있다.
- ④ 회장이 궐위된 경우 제1항에 따른 사람이 본회의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하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제22조(임원의 선임)** ① 종목단체의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로 선임권한을 회장에게 위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기 총회에서 선임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된 임원 선임권한의 기한은 총회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임 받은 이후 첫 번째 이사회 개최 직전까지로 한정한다.

③ 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다. 단, 종목의 특성성에 따라 임원의 구성 비율을 본회의 승인을 받아 달리할 수 있다.

- 1.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임원수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
- 2. 선수 출신자가 재적 임원수의 1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기존 수원시종목별연합회 중 (구)수원시체육회 가맹 경기단 체와 통합하지 않은 단체는 예외로 한다.
- 3. 생활체육관계자(선수 출신은 제외한다)가 재적임원수의 20%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기존 (구)수원시체육회 가맹경기단체 중 (구)수원시생활체육의 수원시종목별연합회와 통합하지 않은 단체는 예외로 한다.
- 4. 비경기인(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재적임원수의 20%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5. 특정 성별의 비율이 7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7조제6항에 따른 대의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종목단체의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회장, 부회장 포함)의 20% 초과할 수 없으며, 이 경우 1개 단체에서 1명만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⑤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며, 제7조제1항의 대의원 중에서 행정감사 1인, 회계감사 1인(회계 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을 선임하여야 한다.

⑥ 종목단체 중 정회원·준회원 단체의 회장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⑦ 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추천한 사람을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차기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⑧ 종목단체의 임원이 취임 후에 제27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드러나는 경우에는 인준 취소 또는 면직, 해임된다.

**제23조(동일인의 겸직제한)** ① 종목단체의 대의원 및 임원은 다른 종목단체의 대의원 또는 임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근대5종, 바이애슬론, 철인3종, 루지·봅슬레이·스켈레톤 및 수중·핀수영의 경우 해당 종목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종목단체의 총회가 의결한 경우에 다른 종목단체의 임원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종목단체의 임원이 다른 종목단체의 회장선출에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전일까지 현재 소속 종목단체의 임원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③ 종목단체의 임원 중 회계감사는 다른 종목단체의 감사를 겸임할 수 있다.

- 제24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종목단체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무보수 비상근 명예직으로 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할 때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 및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목단체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종목단체의 보조금 등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위한 회계를 감사하는 일
  3.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
  4. 재산상황, 예산집행에 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 또는 본회에 보고하는 일
  5.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 ⑤ 종목단체의 임원이 해당 단체 또는 "대한체육회, 회원단체, 시·도체육회 및 그 회원단체 또는 지회"(이하 "체육회 관계단체"라 한다)의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1.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경우
  2.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3.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
- ⑥ 종목단체의 임원이 해당 단체, 체육회 또는 체육회 관계단체의 운영과 관련된 비위의 사유로 체육회의 감사처분을 받아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 ⑦ 종목단체의 임원이 해당 단체의 운영 이외의 범죄사실로 구속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 ⑧ 종목단체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종목단체의 임원이 된 사람이 해당 단체에서 직무가 정지되었을 경우 종목단체 임원으로서의 직무도 당연 정지된다.

**제24조의2(임원의 보수)**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 제25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계감사는 연임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 ②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원을 선출한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 ③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임원 수가 증원되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다른 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회장의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그 잔여기간에 4년을 추가한 기간으로 보며, 이 경우 제25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1회 재임(在任)한 것으로 본다.
-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리단체의 경우는 회장의 임기는 관리단체 해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25조의2(연임 횟수의 산정)** ① 임원의 연임 횟수 산정 시 다음 각 호에 따르며, 다른 종목단체의 임원의 경력도 포함한다.

1. 회장의 연임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회장 이외의 다른 임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2. 부회장의 연임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나 이사 및 감사로 활동한 기간

은 포함하지 않는다.

3. 이사 및 감사(회계감사 제외)의 연임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회장 및 부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한다.

② 임원의 연임 횟수 산정 시 연임 여부는 전임 임기의 만료일과 후임 임원으로서의 취임일의 연속여부와 관계없이 전후 임기 내 임원으로서 활동한 이력이 있으면 1회 연임으로 산정한다.(임기 내 사임한 경우도 포함한다.)

③ 제25조제7항의 보선된 임원과 증원으로 선임된 임원은 재임기간과 관계없이 1회 재임한 것으로 산정한다. 다만, 사임한 임원이 동일 임기 내에 임원으로 보선 및 증원된 경우는 재임 횟수로 추가 산정하지 않는다.

④ 제2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목단체의 임원은 본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18조, 제20조에 따라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제26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종목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종목단체의 회장으로 한정한다)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 및 시·군·구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9.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 및 시·군·구종목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10.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 및 시·군·구종목단체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나.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다.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11.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장의회의원
12. 사회적 물의, 본회와 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유사행위 등 기타 부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
13. 본회 이사회가 종목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당시 해당종목단체의 임원이었던 자로 지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 지 않은 사람(지정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임원이었던 사람 포함)

② 회장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③ 종목단체와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체의 임직원은 종목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종목단체의 필요에 따라 해당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종목단체는 해당자로부터 종목단체와 위법·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임원과 종목단체 간 거래관계에 위법·부당의 이의가 제기되면 본회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④ 임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약서 제출 후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즉시 해임되며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제27조(임원의 사임 및 해임)** ① 회장을 제외한 임원이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이 사임할 경우에는 사무국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② 본회 규정 제9조 제1항에 따라 종목단체가 관리단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 즉시 해당 단체의 임원은 해임 된다.

③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본다.

1. 제22조제8항에 따라 본회로부터 인준이 취소 또는 철회된 사람
2.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
3. 종목단체, 동종목단체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임원이 된 사람이 해당 단체에서 해임되거나 사임하는 경우
4.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대행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때

**제27조의2(명예직의 위촉)** ① 종목단체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회장 1명과 고문 등 명예직을 둘 수 있다.

1. 명예회장은 총회에서 추대하며 이사회 및 총회에 참석하여 자문할 수 있다.
  2. 고문 등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 ② 제26조제1항 각 호(제13호 제외)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의 명예직 지위를 가질 수 없다.
- ③ 명예직에 위촉된 사람에게는 보수 또는 급여성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 제6장 동 종목단체

**제28조(지위 및 명칭)** ① 동종목단체는 시종목단체의 회원으로 각 시 단위를 표시하는 독자적인 명칭을 가진다.

② 동종목단체는 동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그 사무소를 동체육회 소재지에 둔다.

③ 동종목단체는 동종목단체 총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팀 및 동호인조직을 회원으로 둘 수 있다.

**제29조(동종목단체의 총회)** ① 동종목단체의 총회는 다음 각 호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1. 동종목단체의 회원으로 가입한 등록팀(학생부·일반부) 대표
2. 동종목단체의 회원으로 가입한 체육동호인조직(스포츠클럽 포함) 대표
3. 수원시규모연맹체의 회원인 동연맹체의 장((구)수원시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와 수원시종목별연합회가 회원 종목단체와 그 산하의 수원시규모연맹체로 통합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의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팀(교사 및 지도자) 및 체육동호인조

직(총무담당자 등) 중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③ 동종목단체는 제1항에 따른 대의원수가 7명 미만이거나 대의원의 구성이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중 어느 한 분야에 편중되는 등의 사유로 총회 구성에 곤란한 때에는 동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등록팀과 체육동호인조직(스포츠클럽을 포함한다)을 포함하여 총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④ 동종목단체의 장은 등록팀의 장, 체육동호인조직의 장 또는 그 대리인(교사 및 지도자, 체육동호인조직의 총무담당자 등)의 회의를 다음 각 호의 단체군 별로 각각 소집하여 제3항에 따른 대의원을 선출한다.

1. 전문체육분야는 학생부 등록팀과 일반부 등록팀 대표
2. 생활체육분야는 체육동호인조직(스포츠클럽을 포함한다) 대표

⑤ 제3항의 대의원의 수는 등록선수 및 체육동호인 수의 비율에 따라 정원을 정하되 해당 동체육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동종목단체의 장이 제3항 및 제4항의 회의소집을 기피할 때에는 등록팀과 동호인조직의 장의 3분의 1 이상 서면동의를 받아 해당 동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후 회의를 개최하고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

**제30조(단체군 대의원의 정수 및 임기)** ① 동체육회는 제30조제4항에 따른 단체군별 대의원수를 실정에 따라 사전에 정하여야 한다.

② 단체군 별 대의원은 해당 총회일로부터 차기 총회 개최 전날까지 대의원 지위를 가진다.

**제31조(총회의 소집)** 동종목단체의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동종목단체의 장이 소집한다.

**제32조(동종목단체의 규정 등)** 동종목단체의 총회 및 이사회 구성, 운영 및 결격사유 등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따라 동체육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33조(임원인준 등)** ① 동종목단체의 회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시종목단체의 인준동의서를 첨부하여 동체육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② 시종목단체는 제1항에 따른 인준동의 여부를 30일 이내에 해당 동체육회에 회신하여야 하며, 기한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 동의하는 것으로 본다.

③ 동체육회가 인준한 동종목단체 임원이 임원의 결격사유 및 그 밖의 인준하기에 부적정한 사유가 드러나는 경우 본회는 동체육회에 인준 취소 또는 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체육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동체육회의 사무장은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동종목단체의 임원 인준을 우선 승인할 수 있으며,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동종목단체는 해당 지역 및 종목의 특수성에 따라 임원의 구성 비율을 동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달리할 수 있다.

**제34조(정관 등 승인)** ① 동종목단체는 제33조에 따라 동체육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 동종목단체의 규정을 제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종목단체와 협의를 거쳐 동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동체육회는 동종목단체가 정관(규약)의 제정·개정에 대하여 시종목단체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승인할 수 없다.

③ 동종목단체는 해당 종목의 대회운영 규정 등 해당 종목과 관련된 전문적인 규정에 대해서는 시종목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이의신청 및 감사)** ① 동종목단체는 시종목단체에 동체육회의 정관승인 및 회장 승인사항을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시종목단체는 보고를 받은 사항 중 시정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관련 사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동체육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동체육회는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③ 시종목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종목단체의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업무 전반에 대하여 조사·감사할 수 있다.

④ 시종목단체는 제3항에 따른 조사·감사 결과 업무관련 비위 또는 직무태만이 있는 경우 해당 임직원에 대해서는 동종목단체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종목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6조(동종목단체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 요구)**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종목단체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을 동체육회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체육회는 본회의 요구에 따라야 하며, 동체육회가 관리단체 지정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본회는 동체육회에 대해 본회 정관 제7조에서 정한 권리를 제한하거나 본회의 지원사항에 대해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1. 승부조작 및 단체운영 관련 범죄사실로 다수의 임직원이 기소되는 등 정상적인 조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정부, 경기도, 경기도체육회, 수원시 또는 본회 감사결과 관리단체 지정의 처분요구가 있을 경우

## 제7장 각종 위원회

**제37조(각종 위원회의 설치)** ① 종목단체는 사업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기구로 대회위원회, 경기력향상위원회, 선수위원회, 심판위원회, 생활체육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종목단체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제1항 이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7명 이상(위원장, 부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 위원은 다른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다만,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원 수의 20%를 부득이하게 초과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구성할 수 있다.

⑤ 종목단체의 등록선수는 경기력향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제38조(스포츠공정위원회)** ① 종목단체는 해당 종목단체 등의 각종 규정 관리, 표창 또는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로 선임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한 경우, 회장은 외부인사가 과반수 이상 포함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심의와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선임하여야 한다.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스포츠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스포츠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인권 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 및 시·군·구종목단체로부터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
  2. 체육회 관계단체의 임직원인 사람
- ④ 이 규정 외에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종목단체가 본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제3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제26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종목단체에 설치하는 제37조 및 제38조의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②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지급할 수 있다.
- ③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각종 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본회의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종목단체가 별도로 정한다.

**제39조의2(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제37조 및 제38조의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심의 대상자가 친족(「민법」제777조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인 경우
  2. 위원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심의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3. 심의 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4. 그 밖에 심의의 공정성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
- ②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안의 심의에 대해 위원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 제8장 재산 및 회계

**제40조(재산의 구분)** ① 종목단체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부동산
  3. 기 금
  4. 운영재산 중 이사회의 의결로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5. 이익잉여금 중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 ③ 기부금품은 기부하는 자의 지정에 따른다.
- ④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재원)** 종목단체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종목단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2. 기부금 및 찬조금

3. 사업수익금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5. 공공단체의 지원금 및 보조금
6. 기타 수입금(선수 등록비 또는 동호인 등록비 등)

**제42조(잉여금의 처리)** 종목단체의 매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처리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차기 회계연도 목적사업비로 이월
3.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적립

**제43조(재산의 관리)** ① 종목단체는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 재정적·업무적 부담을 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원시장(법인에 한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차입금(해당 회계연도 내의 수입을 상환하는 일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도 이와 같다.

- ② 종목단체가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종목단체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 ③ 종목단체의 재산관리에 있어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이외의 것은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의 일반적인 관리의무 규정을 준용한다.

**제44조(재산의 대여 및 사용)** 종목단체의 재산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제외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그 밖의 사람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가 없이는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및 시·도종목단체, 시체육회 및 시종목단체의 임직원
2. 종목단체의 임직원과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비법인 단체를 포함한다)
3.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경기도체육회 및 경기도종목단체, 시체육회 및 시종목단체 등과 재산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제45조(회계연도)** 종목단체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6조(예산 편성 및 결산)** ① 종목단체는 매 회계연도 시작 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요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종목단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결산서(재산증감사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47조(회계감사 등)** ① 종목단체의 회계감사는 연 1회 실시한다.

- ② 종목단체의 회계처리는 복식부기를 원칙으로 하고, 재산 및 회계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본회의 정관에 따라 종목단체가 별도로 정한다.

**제47조의2(본회의 감사·징계 등)** ① 본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종목단체의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 등 전반에 관하여 조사·감사할 수 있다.



- ② 경기도지사 또는 수원시장이 제1항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본회에 조사·감사를 요구할 경우, 해당 종목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본회는 제2항에 따른 조사·감사 결과 및 처분요구사항을 조사·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경기도지사 또는 수원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본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감사한 결과 업무와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밝혀지면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해당 단체와 관계자에 대해 징계처분, 시정조치 또는 직무관련 범죄에 대한 고발조치를 하거나 해당 단체에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단체는 본회의 요구를 따라야 한다.
- ⑤ 본회는 제3항에 따른 조사·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밝혀지고, 경기도체육회 또는 수원시장이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해당 단체와 관계자에 대하여 징계처분, 시정조치 또는 직무관련 범죄에 대한 고발조치를 하도록 본회에 요구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라야 한다.
- ⑥ 제4항에 따른 본회의 조사·감사 및 징계 요구 등은 경기도체육회의 「감사규정」 과 본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 ⑦ 본회는 제1항에 따른 결과 및 관리단체의 소속한 정상화, 신규 종목단체의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 등을 위하여 본회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 ⑧ 본회가 제7항에 따라 신규 종목단체에 파견하는 직원은 해당 단체에 이사회에 의결권한은 없으나 발언할 수 있는 정원 외 이사로 한다.
- ⑨ 종목단체는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고발대상, 고발주체, 고발기준, 시기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종목단체 임직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기준을 준용하여 세부고발 기준을 제정 및 시행하여야 한다.

**제47조의3(수원시종목단체 평가)** ① 종목단체는 본회 또는 수원시에서 매년 실시하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은 본회에서 정한 지침에 따른다.

**제48조(올림픽 등에 대한 권리 보호)** 종목단체는 대한체육회 정관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본회가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장 사무국

**제49조(사무국)** ① 종목단체는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는 사무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사무장은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종목단체는 임원의 친족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다만, 임원 취임 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된 사람은 예외로 한다.

④ 사무장 및 직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 및 취업규칙에 의하지 않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가·감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않는다.

⑤ 사무장을 포함한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회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⑥ 종목단체의 임원(감사는 제외함)의 연임 횟수 제한에 따라 심의의 대상이 되는 사람 중 예외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 및 제26조, 본회 정관 제30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해 종목의 사무장 등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제50조(사무국의 운영 등)** 종목단체는 사무국의 구성, 인사 및 복무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의 정관 및

지침(직제 표준화 지침 등)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야 하며, 아래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규정 제정 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체육회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1. 사무국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

가. 직원의 신분보장 및 근로조건(보수 및 복무 등)

나. 외부 인사 3인 이상이 포함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인사위원회 구성

다. 채용시 공개채용 원칙 및 체육인 출신에 대한 기회제공

라. 형사사건으로 기소 또는 정직 이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직원에 대한 직위해제

2. 모든 기록물의 관리 및 보존에 관한 사항

3.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제10장 보 칙

**제51조(해산)** 종목단체는 재적대의원 4분의 3 이상의 해산결의로 또는 본회의 회원가입취소(정회원단체 및 준회원단체만 해당한다)로 해산한다.

② 종목단체가 해산하였을 때에는 잔여재산은 수원시에 귀속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 허가(정회원단체 및 준회원단체만 해당한다)를 받아 종목단체의 목적과 유사한 비영리법인(공공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제52조(규약변경)** ① 종목단체의 규정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여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정회원단체 및 준회원단체에 한함) 체육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인정단체는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본회가 종목단체의 규약을 승인에 앞서 이에 대한 개·수정 및 삽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이에 대한 반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종목단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3조(규정 제·개정 등)** ① 종목단체는 이 규정에 따라 규약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이외에 해당 종목단체의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종목단체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정을 제·개정한다.

③ 종목단체의 규정(사무국 관련 규정 포함)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54조(규정의 해석)** ① 이 규정은 종목단체의 규약에 우선하며, 종목단체 규약을 이 규정에 맞게 변경하지 아니하여 종목단체의 규약과 이 규정이 상이할 경우에는 이 규정을 따라야 한다.

② 종목단체가 체육회의 규정, 이 규정 및 기타 규정을 준용할 수 없거나 해석상 불분명한 사항은 체육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55조(제한사항)** 종목단체가 체육회의 정관 및 이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이나 체육회가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체육회는 정관 제7조에서 정한 권리사항을 제한(정회원단체의 경우, 대의원 자격의 정지를 포함한다)하거나 체육회의 지원금 또는 지원 사항을 중단, 회수, 감액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제56조(경영공시)** ① 종목단체는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경영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시항목은 이사회 및 총회 결과, 예산집행내역, 외부평가, 감사결과와 그 외 종목단체의 장이 정한 것으로 한다.

**제57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수원시 보조예산이 추가로 수반되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 수원시(주무부서장)와 협의하여야 한다.

#### 부 칙 (제정 2021. 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 2항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새로 선임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6조(임원의 결격사유) 1항 13호의 개정 규정은 이 규정 시행이후 관리단체로 지정되는 종목단체의 임원부터 적용한다.

## 수원시종목단체 임직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회원종목단체 임직원(퇴직자 포함)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범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를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토록 함으로써 회원종목단체 청렴 문화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① 회원종목단체 책임자와 감사담당자는 임직원(퇴직자 포함)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회장 또는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장 또는 감사는 임직원(퇴직자 포함)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보고받은 경우에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하여야 한다.

③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이를 묵인한 임직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조치하여야 한다.

**제3조(고발대상)** 고발대상은 회원종목단체 임직원(퇴직자 포함)이 직무와 관련된 개별 법령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로 한다.

**제4조(고발의 기준 및 고발시기)** ① 회장 또는 감사는 범죄의 고발 여부를 결정 할 때에는 그 범죄사실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1. 횡령·유용금액이 100만원(공소시효 내의 누계금액) 이상인 경우
2. 100만원 미만이라도 횡령·유용금액을 전액 원상 회복하지 않은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으로 징계를 받은자가 또다시 수수를 한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한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여 수수한 경우
6.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고 수사 시 비위행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7. 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
8. 그 밖에 범죄의 횡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회장 또는 감사는 임직원(퇴직자 포함)의 공금 횡령 등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범죄행위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때에는 조사결과 증거자료에 따라 횡령 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고발한다.

**제5조(고발 절차 등)** ① 고발은 회장의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행위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② 범죄혐의의 내용이 정부 정책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이거나,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고발처리상황 관리)** ① 회원종목단체 책임자는 고발대상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을 문서로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제2조 제1항에 따라 회장 또는 감사에게 보고하지 않은 임직원에 대하여는 회원종목단체 인사규정에 의거,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종목단체 및 시규모연맹체에 대한 조치)** 회원종목단체의 장은 종목단체 및 시규모연맹체의 장에게 이 기준을 준용하여 세부고발기준을 제정 및 시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가입 · 탈퇴 규정



**수원시체육회**

# 가입·탈퇴 규정

제 정 2021. 12. 3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원시체육회 정관 제6조 제1항 및 제10조 제3항에 따른 수원시체육단체(이하 “체육단체”라 한다)의 수원시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 가입 및 탈퇴의 절차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입”은 본회 규정 제7조에서 정한 권리 및 의무사항을 이행할 것에 동의하여 본회에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2. “탈퇴”는 본회가 회원으로 가입을 승인한 회원단체 규정에서 정한 회원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한다.
3. “올림픽 종목 및 아시아경기대회 종목”은 제8조에 따른 등급 및 가입심의 당시의 올림픽대회(이하 “올림픽”이라 한다) 또는 아시아경기대회(이하 “아시안게임”이라 한다)의 개최종목으로 채택된 종목을 말한다.
4. “전국종합체육대회 종목”은 제8조 등급 및 가입심의 당시 대한체육회 정관 제5조제1항제2조에 의한 대회의 개최종목으로 채택된 종목을 말한다.

**제3조(종목단체의 가입신청서류)** ① 본회에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종목단체는 매 회계연도 11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단체 소개서(연혁, 종목설명, 활동개요, 조직 등)
3. 임원 명단(개인별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포함)
5. 단체의 규약 및 제 규정
6. 회원가입을 의결한 대의원총회 자료 및 회의록
7. 단체의 규약 및 모든 규정
8. 고유번호증(또는 사업자등록증)
9. 선수 및 팀(스포츠클럽 포함), 동호인조직 등록 현황
10. 시·군종목단체 및 산하연맹체 설치 현황
11. 경기대회 및 동호인대회 개최 실적
12. 전년도 사업실적 및 해당년도 사업계획서
13. 전년도 수입·지출결산서 및 해당년도 수입·지출예산서
14. 해당 단체의 국제경기연맹 및 아시아경기연맹에 관한 참고자료

② 제1항제14호에 해당하는 연맹이 없는 종목단체는 자료의 제출을 예외로 한다.

**제4조(정회원단체의 가입요건)** ① 본회에 정회원단체로 가입하고자 하는 종목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1. 수원시를 대표하는 해당 종목 유일의 단체일 것

2. 종목이 「국민체육진흥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체육의 요건을 갖추었을 것
  3. 수원시를 총괄하는 권위와 지도력이 인정되는 종목단체일 것
  4. 도내 16개 이상의 시·군종목단체가 해당 시·군체육회에 가입되어 있을 것
  5. 종목단체가 주최하는 대회가 연 1회 이상일 것
  6. 국제올림픽위원회 또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로부터 국제경기연맹 및 아시아경기연맹이 승인을 받는 종목일 것. 다만, 경기종목 또는 단체의 특성에 따라 예외로 할 수 있다.
  7. 해당 종목의 보급도와 경기력 발전성이 인정될 것
  8. 본회의 정관 및 '수원시종목단체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종목단체의 규정이 제정되어 있을 것
- ② 올림픽 또는 아시안게임 종목이며, 동시에 전국종합체육대회 종목은 제1항 제4호와 관련한 시·군종목단체 조직 수에 관한 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③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될지라도 본회가 정회원단체로 가입시킬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하여야 한다.

**제5조(준회원단체의 가입요건)** ① 본회에 준회원단체로 가입하고자 하는 종목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1. 수원시를 대표하는 해당 종목 유일의 단체일 것
  2. 종목이 「국민체육진흥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체육의 요건을 갖추었을 것
  3. 수원시를 총괄하는 권위와 지도력이 인정되는 종목단체일 것
  4. 도내 10개 이상의 시·군종목단체가 해당 시·군체육회에 있을 것
  5. 종목단체가 주최하는 대회가 연 1회 이상일 것
  6. 해당 종목의 보급도와 경기력 발전성이 인정될 것
  7. 본회의 규정 및 '수원시종목단체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종목단체의 규정이 제정되어 있을 것
- ② 올림픽 또는 아시안게임, 전국종합체육대회 종목은 제1항 제4호와 관련하여 시·군종목단체가 9개 이상 조직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동계 올림픽 종목에 대하여는 시·군종목단체 조직 수에 관한 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③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될지라도 본회가 준회원단체로 가입시킬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하여야 한다.

**제6조(인정단체의 가입요건)** ① 본회에 인정단체로 가입하고자 하는 종목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1. 수원시를 대표하는 해당 종목 유일의 단체일 것
  2. 종목이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의 요건을 갖추었을 것
  3. 수원시를 총괄하는 권위와 지도력이 인정되는 종목단체일 것
  4. 해당 종목의 보급도와 경기력 발전성이 인정될 것
  5. 본회의 정관 및 '회원종목단체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종목단체의 규정이 제정되어 있을 것
- ②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될지라도 본회가 인정단체로 가입시킬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절차)** ①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심의절차는 본회 정관 제10조에 따른다.

② 본회에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단체는 인정단체로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올



림픽 또는 아시안게임 종목이며 동시에 전국체육대회 종목은 준회원단체로 전국체전종목은 인정단체로 가입할 수 있다.

③ 준회원단체는 준회원단체 승인일로부터 만 3년이 지나야 정회원단체 승격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본회는 승인 조건 이행 여부를 반드시 심사하여야 한다. 인정단체의 준회원단체 승격 경과 기간과 심의 요청 또한 같다.

제8조(등급 및 가입심의) ① 본회는 정회원단체, 준회원단체, 인정단체의 가입요건을 매년 심의한다.

② 등급심의에서 정회원, 준회원단체가 제5조 또는 제6조의 가입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단체가 된다.

③ 제6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는 유보단체로 지정하되, 1년간의 가입요건 충족 유예기간을 두며 유예기간 중 가입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로 회원단체의 자격을 회복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제9조에 따르며, 유보단체로 지정된 단체는 본회의 사업 참여와 예산지원의 제한을 받는다.

④ 본회의 등급 및 가입심의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자체 심의 회의체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9조(탈퇴요청 및 강등·제명)** ① 회원단체가 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탈퇴서를 제출한 경우 본회는 해당 단체를 탈퇴하게 하여야 한다.

② 본회 정관 제9조에 따라 관리단체로 지정된 단체가 관리단체로 지정된 날부터 2년간 관리단체 지정 해제가 되지 못한 경우 본회는 해당 단체를 제명시킨다.

③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단체에 대해서는 본회 정관 제10조의2에 따라 강등 또는 제명할 수 있다.

1. 회원의 가입요건을 상실하여 회원단체로서의 존속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2. 회원단체가 그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본회 정관, 규정, 지시사항을 위배하여 회원단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임원 간의 분쟁, 재정악화, 집행부 부재 등의 사유로 회원단체로서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4. 본회 위상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체육발전을 저해하는 회원단체일 경우
5. 본규정 제8조 제2항에 해당하는 종목단체일 경우

④ 회원단체가 해산한 경우 본회의 회원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제10조(탈퇴신청)** 회원단체가 본회 규정 제10조 제2항에 의해 탈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탈퇴서
2. 탈퇴이유서
3. 탈퇴를 결의한 총회 회의록

**제11조(동체육회 규정의 적용)** 동체육회는 본회 수원시종목단체의 동종목단체에 한하여 가입·탈퇴 규정의 가입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2021.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접 수 일		수원시체육회 회원가입 신청서				
접수번호						
신청인 (대표자)	①단체명			②연 락 처		
	③주 소					
	④성명(한자)			⑤생년월일		
	⑥현 주소					
⑦설립 연월일						
⑧설립목적						
⑨회원 및 지회 현황		회원수			지회수	
⑩아시아/국제연맹과의 관계		명칭			회원가입 여부	
<p>「수원시체육회 정관」 제10조제1항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수원시체육회 회원 가입을 신청하며, 동 규정 제7조 및 「가입·탈퇴 규정」에서 정한 권리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p>						
<p>년      월      일</p>						
신청인(대표자)				인		
<b>수원시체육회장 귀하</b>						
<b>붙임서류</b> 1. 단체 소개서(연혁, 종목설명, 활동개요, 조직 등) 2. 임원 명단(개인별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포함) 3. 단체 규정 및 모든 규정 4. 회원가입을 의결한 대의원총회 자료 및 회의록 5. 경기개요 및 경기규칙 6. 고유번호증(또는 사업자등록증)		7. 선수, 팀, 동호인조직 등록 현황 8. 동 종목단체 및 산하연맹체 설치 현황 9. 경기대회 및 동호인대회 개최 실적 10.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서 11. 수입·지출결산서 및 수입·지출예산서 12. 국제 및 아시아연맹에 관한 참고자료 13. 기타(대회 개최실적 및 대회 입상현황 등)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약식)

- 본인은 신원조사기관이 본인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개인정보(범죄경력 등 민감정보 포함. 이하 동일) 수집 목적 등 아래 유의사항을 이해하였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규정 등에 따라 신원조사기관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유기관장은 원활한 신원조사를 위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해당 신원조사기관에게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 본인이 서명한 동의서 복사본은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유의사항 (개인정보 수집 목적·관리방법, 정보제공 동의 거부 가능 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집된 개인정보자료·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신원조사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공공기록물관리예관한법률」에 따라 관리·폐기되며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li> <li>■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보 제공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신원조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li> </ul>

년     월     일

성명    (서명)

■ 본인 동의

성 명	생년월일	서 명	
		개인정보 제공 동의	민감정보 제공 동의

※ 신원조사를 위해 수집되는 정보자료 항목

개인정보	민감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 조회자료(경찰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죄경력·수사·수배 조회자료(경찰청)</li> </ul>

개인정보 보유기관장 귀하



# 관리단체 운영 규정



**수원시체육회**

# 관리단체 운영 규정(안)

제 정 2021. 12. 30.

**제1조(근거 및 목적)** 이 규정은 수원시체육회(이하“본회”라 한다) 정관 제9조에 의하여 지정된 수원시회원단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사항을 정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회의 회원단체에만 적용한다.

**제3조(관리단체 지정의 통지)** 본회는 회원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하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적어 해당 회원단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한다.

1. 관리단체 지정사유
2. 관리단체 지정일
3. 관리단체 지정의 효력
4. 임원인준 취소
5. 그 밖의 주요사항

**제4조(관리단체 지정의 효력)** ① 관리단체로 지정된 회원단체는 모든 권리 및 권한이 즉시 정지되며, 본회가 해당 회원단체의 전반적인 업무를 맡아 처리한다.

② 해당 회원단체 임원 및 관계자(이하 “회원단체 관계자”라 한다)는 회원단체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해당 회원단체와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으며, 본회의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③ 관리단체 지정사유의 소멸 등 회원단체가 정상화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본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단체에 관리단체 지정해제를 통지하고, 해당 관리단체는 통지를 송달받는 즉시 본회의 가입 회원단체로서의 권리를 회복한다.

④ 관리단체 지정 시 해당 회원단체의 대의원 중 종목단체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른 대의원은 관리단체 지정일부터 2년간 소속 단체장으로서의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관리단체 운영 상황에 따라, 본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직무정지 기간을 다르게 정 할 수 있다.

**제5조(회원단체 관계자의 의무 등)** ① 관리단체로 지정된 회원단체의 관계자는 본회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회의 각종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정보제공 등 본회의 자문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회원단체 관계자는 본회의 관리단체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조달· 사무공간 제공 등 모든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본회는 본회의 관리단체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회원단체 관계자를 즉시 징계 절차에 회부할 수 있다.

④ 회원단체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해당 회원단체가 정상화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위원회의 설치)** ① 본회는 관리단체로 지정된 회원단체의 업무를 맡아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회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이사회에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본회 직원 중에서 회장이 지명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관리단체로 지정된 회원단체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

1. 총회 기능에 관한 사항
2. 이사회 기능에 관한 사항
3. 법제·상벌에 관한 사항
4. 사무국의 사무집행에 관한 사항
5. 회원단체 정관(또는 규약)에 규정된 사업 및 관련 모든사항

② 위원회는 해당 관리단체의 정상화를 위해 필요할 경우 해당 단체의 대의원총회 개최 및 임원 선임에 대한 기간 등의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로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4.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위원에게 소관업무를 나눠 맡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종 소위원회(대회위원회, 심판위원회, 스포츠공정위원회 등)를 둘 수 있으며, 각종 소위원회의 명칭과 소위원회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써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회 규정 및 그 밖의 규정을 준용한다.

## 부 칙 (제정 2021.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문위원)** 제6조에도 불구하고 종목별 전문적 자문을 위한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재적위원 및 의결정족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사무국 규정



**수원시체육회**

# 사무국 규정

제 정 2022. 2. 16.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원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정관 제50조에 의하여 사무국의 기구, 조직직제, 복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 이 규정은 체육회에 근무하는 정규직 직원에게 이를 적용한다.

② '기간제근로계약' 또는 '무기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적용한다.

## 제2장 채용 및 근로계약

**제3조(채용)** ① 직원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회장이 정하는 전형방법에 의하여 채용할 수 있다.

1. 재공고 이후에도 해당직에 대한 채용 후보자가 채용 인원수에 미달될 때

2. 직무의 성질상 고시선발 방법이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채용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는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시험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용(시험)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원시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이에 위탁하여 할 수 있다.

③ 채용의 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외부심사위원은 과반 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전형단계별 위원구성을 달리 해야하며 필기시험은 문제유출 등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1. 외부위원은 심사 직전에 선정하고 명단은 비공개로 한다.

2.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근무경험 관계(퇴직자, 비상임 이사) 및 사제지간 등 관계없는 자를 선정한다.

3. 면접시험은 블라인드 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출신지, 가족관계, 학교명, 사진, 성별, 연령 등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④ 채용 시 모든 과정에 감사업무 담당자가 입회 및 참관한다.

⑤ 채용관련 서류는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보존기간 5년간 지난 경우 파기한다. 다만 채용계획 및 채용결과에 관한 서류는 영구보존한다.

⑥ 신규채용직원은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⑦ 최종합격자 중 임용 포기 시 차순위자를 임용할 수 있다.

⑧ 회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공고예정 15일 전까지 수원시장에게 통보해야하며, 인력수요의 변화 등으로 채용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사전에 통보한다.

1. 채용의 필요성 예상결원 및 정·현원 현황, 채용인원

2. 응시자격요건, 필기시험여부, 서류전형 심사기준, 면접방법, 시험단계별 시험위원 위촉계획

⑨ 수원시장은 채용계획에 대하여 통합채용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회장은 수원시장이 제시한 의견을 원칙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채용서류의 반환)** 「채용절차공정화에 관한법률」 제11조에 따라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채용절차공정화에 관한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채용정보의 공시)** 직원의 채용 시 채용 공고 등 채용에 관한 정보를 고용노동부 고용정보시스템(워크넷)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6조(임직원의 친인척 채용규모의 공개)** 신규채용인원 중 기관 임직원의 친인척(배우자, 4촌 이내, 혈족 및 인척) 관계가 있는 채용인원을 매 분기별로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규직, 무기계약직, 계약기간 1년 이상 비정규직, 그 밖에 인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7조(신규 채용자 임용기준)** ① 직원을 신규채용 할 때에는 별표 제2호의 직원채용 기준에 의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자격기준은 공무원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신규 채용 응시자의 가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규 채용에 응시 할 경우 채용심사에서 일정한 점수를 가산 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해당하는자
2.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장애인
3. 기술직의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자

**제9조(인사교류)** 체육회장은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사무의 효율성 제고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직원과 협의하여 수원시체육회와 수원시장장애인체육회간의 인사교류를 실시 할 수 있다.

**제10조(구비서류)**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다음의 구비서류를 제출한다.

1. 이력서 1부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자격증명서(필요한 경우 성적증명서 첨부) 1부
3. 경력증명서 1부
4.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및 주민등록 등·초본(병역사항포함) 각 1부
5. 면허증사본(기술직에 한함) 1부
6. 사진(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사진) 1매

**제11조(근로계약의 체결)** ① 체육회는 직원을 채용 할 경우 서면에 의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근로계약에는 임금(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취업할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 등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근로계약에 이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은 무효로 하고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근로계약서에 제2항의 사항을 개략적으로 기재하거나 기재를 생략한 경우 이 규정에 정한 내용이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제12조(부패방지법 위반자 등에 대한 취업제한안내)** 본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제1항에 따른 부패방지법 위반자 등(이하 “부패방지법 위반자 등”이라 한다.)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안내하여야 한다.

**제13조(자격규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귀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또는 집행을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법 위반자 등 취업제한자

### 제3장 복 무

**제14조(직원의 의무)** ① 직원은 법령 및 사무국 규정, 체육회 각종 규정을 준수하며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본회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직원은 본회의 기밀과 그 직무상 취득한 사실을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누설하거나 임의로 조화에 응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근태관리)** ① 직원은 정시까지 출근하여 정시부터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직원이 결근 또는 지참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속 부서의 장에게 사전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가능한 방법으로 사후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직원이 지정된 시기까지 출근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참으로 하며, 12시까지 출근하지 아니할 때는 결근으로 처리한다. 다만, 업무상의 이유로 사전에 소속부서장의 승인을 받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직원이 근무시간 중 조퇴 또는 외출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직원이 소속 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월 3회 조퇴 또는 지참을 하는 경우에는 무단결근 1일로, 월 3회를 초과하는 매 2회마다 무단결근 1일로 본다. 이 경우 결근일수에 대해서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감액 지급한다.

⑥ 근로기준법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따라 근로시간을 적용할 수 있다.

- 선택적근로시간제의 시간은 1시간 내외로 정하며, 1년 단위로 신청하여 실시한다.

**제16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① 체육회는 직원이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의 행사, 공의 직무의 집행 등을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공민권 등의 행사에 지장이 없는 경우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 특성상 과업 종료 후 공민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출장)** ① 직원이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출장명령을 받아야 한다.

② 출장자가 귀임하였을 때에는 귀임 후 3일 이내에 복명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에 속하는 사항이나 간단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구두로 복명할 수 있다.

**제18조(심사위원회의 설치)**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 국외출장 등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공무 국외출장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 국외출장자 등의 소속기관이 아닌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 국외출장 등
2. 각종 시찰, 견학, 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 국외출장 등과 그 연간운영계획
3. 소속 직원에 대한 포상 또는 격려 등을 위한 공무 국외출장 등과 그 연간운영계획
4. 해당 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 국외출장 등
5. 그 밖에 사무국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 국외출장 등

**제19조(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국장이 되고, 감사담당 부서장을 포함하여 7인 이하로 구성하며,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② 심사위원회 위원(장) 중 국외출장 대상자가 본인 및 소속 간부·직원 등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장)은 심사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위원회 소집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서면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제20조(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 및 절차)** 심사위원회는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심사대상에 대하여 여행의 필요성, 여행자의 적합성,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여행시기의 적시성 및 여행경비의 적정성 등을 사무국의 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제21조(출장의 제한)** 물품구매계약 또는 용역에 포함된 출장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사업특성상 현지 공장검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부분은 계약에서 분리하여 따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다.

**제22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 등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 등은 30일 이내에 결과 보고서를 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무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 등의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구축한 정보유통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담당부서로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겸직금지)** 직원은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른 직무를 겸직 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4조(신상변경신고)** 직원은 주소이전, 개명, 기타 이력 및 가족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제25조(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직원의 인사 사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직원의 채용고시
2. 직원의 포상 및 징계
3.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
4. 기타 인사에 관한 주요 사항

③ 인사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은 수원시체육회 인사위원회 규정을 따른다.

**제26조(보직)** ① 보직은 직급에 따르되 각자의 기능, 경력 등을 참작하여 본회의 필요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배치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직급 미달자를 상위직급에 보직케 할 수 있으나 직무대리로 한다.

② (순환보직 등) 동일부서 또는 동일직위에 3년 이상 근속한 자를 우선적으로 순환보직 한다. 다만,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업무상 순환 보직이 적합하지 아니한 직무에 근무하는 직원은 그렇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인사규정상 징계를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해당징계기록이 삭제될 때까지 동일한 업무에 전보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전보라 함은 동일직종의 직급 내에서 보직 변경 및 부서간 이동을 하는 것을 뜻하며 각자의 능력을 고려하여야 하며 실적 우수 근무자가 타부서 근무를 희망하는 경우 본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전보하여야 한다.

⑤ 채용비리 연루자는 감사·인사 업무 보직을 제한 한다.

**제27조(인사교류)** 체육회장은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사무의 효율성 제고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직원과 협의하여 수원시체육회와 수원시장애인체육회간의 인사교류를 실시 할 수 있다.

**제28조(승진)** ① 직원을 승진 임용할 때에는 직급별 승진서열표에 의하여 동일직열의 차하위에 있는 직원을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승진시험방법에 의하여 해당직급에 임용하거나 사무국 편제의 개편부서의 신설 혹은 폐합 등으로 말미암아 정원의 조정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일반직 및 기술직의 승진은 다음 각 호의 기간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1. 4급 : 재직 5년 이상
2. 5급 : 재직 4년 이상
3. 6급 : 재직 3년 6개월 이상
4. 7급 및 8급 : 재직 2년 이상
5. 9급 : 재직 1년 6개월 이상

③ 전 제②항의 재직기간에는 다음 각 호의 1의 기간은 계상하지 아니한다.

1. 임시직(계약직) 기간
2. 개인적 사유에 의한 휴직 기간(육아휴직 제외)
3. 정직 기간
4. 직위해제 기간

**제29조(정기승급)** ① 일반직(사무, 기술) 직원의 승급은 1회 1호봉을 원칙으로 하고, 1개 호봉 승급 소요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승급은 최초호봉 확정 월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해당 월에 승급한다.

**제30조(특별승진, 승급)**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기승진, 승급 외에 특별승진 및 승급을 할 수 있다.

1. 품행이 단정하고 의무에 근면하여 직원으로 모범이 된다고 인정된 자
  2. 특히 곤란한 사무를 완전히 수행하여 공로가 있다고 인정된 자
  3. 화재 기타 천재지변을 당하여 본회 재산보호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된 자
  4. 기타 업무수행에 있어 특히 공로가 있다고 인정된 자
- ② 특별승진 및 승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8조 제2항, 3항 및 제2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1조(승진 및 승급의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승진 및 승급할 수 없다.

1.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으로 휴직 중에 있는 자는 제외 한다.) 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가. 견책, 근신 및 그 밖에 비슷한 처분을 받고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나. 감봉처분을 받고 12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다. 강등 및 정직된 자로 복직된 지 18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채용비리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징계를 받은 후 18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32조(근무성적 평정)** ① 사무직 및 기능직원에 대하여는 정기 또는 수시로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 평정의 결과는 승진임용, 특별승급, 특별상여수당 지급, 교육훈련,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 하여야 한다.

② 근무성적의 평정은 근무실적 평정, 직무수행능력 평정, 직무수행태도 평정 및 기타요소에 대한 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33조(직렬분류)** ① 본회에 두는 직원의 직렬은 다음과 같다.

1. 별정직
  2. 일반직
  3. 기술직
  4. 계약직
- ② 별정직은 다음과 같다.
1. 사무국장(3·4급)
- ③ 일반직의 직급은 5~9급으로 구분한다.
1. 5급(과장)
  2. 5급·6급(센터장)
  3. 6급(팀장)
  4. 7급(대리)
  5. 8급(주임)
  6. 9급(사원)
- ④ 기술직의 직급은 6~9급으로 구분한다.
1. 기술6급(팀장)
  2. 기술7급(대리)
  3. 기술8급(주임)
  4. 기술9급(사원)

⑤ 계약직은 필요에 따라 정원의 범위 안에서 5~9급까지 분야의 전문가를 공개채용 할 수 있다.

**제34조(임면)** 직원의 임면은 사무국장의 제청에 의하여 회장이 임면한다.

**제35조(기구)** 사무국에 다음 기구를 둔다.

1. 경영지원과(경영지원팀, 회계팀)
2. 시설운영과(시설운영팀, 서호체육센터, 광고체육센터)
3. 체육지원과(체육지원팀, 종목육성팀)
4. 직장부운영과(직장부운영팀, 선수촌운영팀)

**제36조(정원)** ① 사무국의 정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정한다.

② 사무국 정원은 별표 제1호와 같다.

**제37조(사무국)** ①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국 전 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행정전반을 총괄한다.

② 경영지원과장은 사무국장이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과장은 과원을 지휘 감독하며 사무국장이 유고시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 순위에 의한 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팀장은 팀원을 지휘 감독하며 과장이 유고시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팀 순위에 의한 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8조(부서의 신설 및 병합)** 회장은 사무형편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서에 팀을 신설하거나 폐지 또는 병합을 할 수 있다.

**제39조(업무분장)** 각 과 및 팀의 업무분장은 별표 제4호와 같다.

**제40조(사무인계)** ① 사무인계는 담당급 이상의 직에 있는 자가 전보, 퇴직 및 휴직사유로 담당직을 떠날 때 또는 국외여행 기타 사유로 1개월 이내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행한다.

② 사무를 인계할 때에는 인계하여야 할 모든 사항을 기록한 인계서를 3부 작성하여야 하며 인계가 끝난 후 인계·인수자가 각 1부씩 날인하여 보관하고 그 1부는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휴직)**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공무 이외의 질병 또는 상해로 말미암아 병가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였거나 공무로 인한 상해로 병가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였을 때
2. 전염병 감염으로 타 직원의 건강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3.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때
4.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불량할 때
5. 직제와 정원의 조정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감원이 되었을 때
6.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되었을 때

②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할 때.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는 간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등 「지방공무원법」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③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 제1·2호와 제2항의 경우는 1년 이내로 한다.
2. 전항 제3호의 경우는 그 복무기간이 끝날 때까지로 한다.
3. 전항 제4·5호의 경우는 만 6개월로 하고 기간 내에 복직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4. 전항 제6호의 경우는 3개월 이내로 한다.

④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에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 제3호 및 공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휴직기간 중의 보수는 다음과 같다.

1. 제1항 제1·2·4·5호의 경우에는 봉급의 7할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전액을 지급한다.
2. 휴직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5할
3. 제1항 제3·6호의 경우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2조(휴직의 목적 외 사용)** ① 이 규정 제41조 및 제46조에 따라 휴직 중인 직원이 휴직사유와 달리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 휴직의 목적 달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이라 한다.

② 회장은 직원이 휴직기간 중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제41조 5항 1·2호에 따라 받은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43조(휴직검증위원회의 운영 및 구성)** ① 회장은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심사를 위해 휴직검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동 조의 위원회는 제25조에 따른 인사위원회로 대신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여 선출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휴직 실태점검 및 복무상황 결과 등을 바탕으로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 휴직의 목적 달성 가능성
2. 휴직의 목적 외 사용 기간
3. 고의성 여부
4. 사회통념상 허용가능 여부
5. 기타 휴직목적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위원회는 심사대상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심사대상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⑦ 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

⑧ 회장은 제4항에 따른 심사결과 휴직의 목적외 사용에 해당하는 경우 제42조 제2항에 따른 징수조치를 할 수 있고 그 정도가 과하여 제96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⑨ 기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해서는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4조(휴직 실태점검)** ① 회장은 휴직 직원이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을 하지 않도록 휴직 전 복무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휴직기간에는 그 실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5조에 따른 복무상황 보고서의 허위 여부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은 매 반기별로 하되 그 결과는 각각 7월 15일, 1월 15일까지 별지 16호 서식을 첨부하여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휴직자의 복무상황 보고)** ① 이 규정 제41조와 제46조에 따라 휴직 중인 직원은 휴직기간 중 별지 17호 서식을 첨부하여 회장에게 복무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는 매 반기별로 하되 사무국 규정 제41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 및 제46조 제1항에 따른 휴직은 매 분기별로 한다. 다만 회장은 직원의 휴직·복직 시점과 보고시점이 근접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1. 휴직 시작 후 1개월 이내 복무상황 보고는 생략할 수 있다.
2. 복직 전 1개월 이내 복무상황 보고는 복직시에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휴직자는 보고시점과 관계없이 복무상황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46조(육아휴직)** ① 직원이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 하기 위하여 휴직(이하“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단,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직원을 해고 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법률」을 따른다.

## 제5장 근로시간

**제47조(근무시간)** ① 직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40시간으로 하며, 1일 근무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중식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제48조(휴게시간)** ① 직원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직원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49조(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등의 근무)** ① 사무국장은 업무 형편상 필요한 때에는 소속 직원에게 시간 외 근무 또는 야간근무(하오 10시부터 익일 상오 6시까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자에게는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



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단, 초과근무 월상한시간은 30시간 이내로 하며 업무 특성상 의전 등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한해서는 10시간을 추가할 수 있다.

**제50조(당직근무)**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 ② 일직은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이거나 일직근무가 개시 될 때까지 한다.
- ④ 당직근무자에 대한 실비보상 수당은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따른다.
- ⑤ 숙직근무에 대해서는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근무종료 시간이 속하는 날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 ⑥ 일직과 숙직은 각각 구분하여 근무명령을 행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상황 및 당직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휴일인 경우에도 동일인에게 연속적으로 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 ⑦ 이 규정에 없는 당직근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수원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준용한다.

**제51조(시간외 근무 명령 및 확인절차)** ① 초과 근무를 하고자 하는 직원은 사전에 소속 부서장으로부터 초과 근무 명령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전에 초과근무명령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초과근무 사유서를 제출하고 그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 ② 초과근무수당은 개인별, 초과근무 일자별 근무명령에 따라 근무한 경우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초과근무명령은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에 따라 명령하되, 월 상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1조(탄력적근로시간제)에 의거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통하여 대체휴무를 부여한다.

## 제6장 휴가 및 휴일

**제52조(휴일)**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을 휴일로 한다.

-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 2. 기타 정부 또는 본회에서 정한 휴일
- 3. 창립기념일(통합체육회 창립 6월 24일)

**제53조(휴가)** ① 직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 ② 연가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고,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자는 2년 마다 1일씩 가산하되 최고 한도를 25일로 하며, 1년 미만 또는 1년간 8할 미만 출근한 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 유급휴가를 지급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되며, 본회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
  - 1.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직한 기간
  - 2.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제56조 제4항 규정에 따른 휴가실시
- ⑤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지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 ⑥ 사무로 인한 결근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 산입한다.

⑦ 병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2월의(연60일의)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공무로 인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 중일 때에는 그 기간을 6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1. 질병으로 인하여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2.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집무할 수 없을 때

⑧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⑨ 공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병역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 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해야 할 때
2.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3. 천재지변, 교통차단 등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때
4.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5.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 할 때
6.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의 경우

**제54조(연가의 사용과 보상)** ① 직원은 연가를 당해 연도에 한하여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직원은 제1항의 휴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본회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③ 본회는 본회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 업무상 재해나 질병으로 인한 병가, 산전산후 휴가를 이유로 연가 휴가에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본회 사정으로 인하여 직원이 연가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본회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가 보상비로 연가를 가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 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 수는 10일을 초과 할 수 없다.

**제55조(연가의 사용 촉진)** 연가의 사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그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으며, 귀책사유는 직원에게 있다.

1.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직원 각자의 미사용 휴가 일수를 알려 주고, 직원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연차휴가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2. 제1호 규정에 의한 촉구에도 불구하고 미사용 휴가의 사용을 촉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미사용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연차휴가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끝나기 2월전까지 미사용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직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56조(특별휴가)** ① 직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표 제5호의 기준에 따른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임신 초기 여성 직원은 모성보호를 위해 출산 전 5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2항에 따라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단,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 할 수 없다.

④ 임신 중인 직원에 대하여 그 출산 전후에 90일의 출산휴가(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이 되게 하여야 한다.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⑤ 여자직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⑥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직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⑦ 임신 중인 직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직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직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 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⑧ 회장은 소속 남성직원의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직원이 신청하면 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⑨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직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⑩ 여성 직원은 임신 후 12주 이내이거나 36주 이상인 직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⑪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직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31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⑫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직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직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⑬ 기타휴가

1. 표창 수상자(회장 이상)
2. 20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 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⑭ 직원의 자녀가 군입영 시에 해당 직원은 자녀의 군입영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⑮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 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 등”이라 한다)의 휴업·휴원·휴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 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 또는 손자녀의 병원 진료,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 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 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⑯ 제9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직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유급으로 한다.

## 제7장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지원

**제57조(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사용자는 임신한 직원이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신부 정기건강 검진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② 태아검진 횟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임신 7월까지는 매 2월 1회
2. 임신 8월에서 9월까지는 매 1월 1회
3. 임신 10월 이후에는 매 2주 1회

③ 사용자는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임신한 근로자는 가급적 병원과 인접한 병원을 이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8조(육아시간)** ①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직원이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

② 근로자는 제1항의 수유시간을 청구할 때, 가족관계부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9조(임신중 근로시간 단축)** ① 체육회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직원이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경우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직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③ 체육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0조(임신 근로자 근로시간 변경)** ① 임신 한 직원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개시 및 종료시각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정상적인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임신 한 직원의 안전 및 건강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제1항의 변경신청은 변경 예정일 3일 전까지 소정의 신청서와 진단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61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직원이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2. 같은 영유아의 육아를 위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 포함)을 하고 있는 직원이 신청한 경우
3.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직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 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 체육회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 ② 제1항의 단서에 의거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육아휴직을 이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직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1년 이내로 하여야 하며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여야 한다.

**제62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① 체육회는 제61조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직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지 않는다.

- ② 제61조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직원의 근로조건(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을 포함한다)은 체육회와 그 직원 간에 서면으로 정한다.
- ③ 체육회는 제61조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직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 할 수 없다. 다만, 그 직원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주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사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직원의 육아기 근로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제63조(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① 체육회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원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2. 직원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3. 55세 이상의 직원이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4. 직원의 학업을 위한 경우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체육회가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체육회는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 ④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⑤ 체육회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체육회는 직원의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직원을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 ⑦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4조(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① 체육회는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직원에게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제63조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한 직원의 근로조건(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을 포함한다)은 체육회와 그 근로자 간에 서면으로 정한다.
- ③ 체육회는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직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그 직원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④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근로기준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직원의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 제8장 급 여

**제65조(급여구분)** ① 직원의 급여는 다음과 같다.

1. 기본급 : 봉급
2. 상여수당
  - 가. 정근수당
  - 나. 정근수당 가산금
  - 다. 성과상여금
3. 가계보전수당
  - 가. 가족수당
  - 나. 자녀학비보조수당
4. 초과근무수당
  - 가. 연장근로수당
  - 나. 휴일근무수당
  - 다. 야간근로수당
  - 라. 관리업무수당
5. 실비보상 등
  - 가. 정액급식비
  - 나. 직급보조비
  - 다. 직책급업무추진비(직무경비)
  - 라. 명절휴가비
  - 마. 연가보상비

**제66조(연봉제)** ① 5급(과장) 이상 직원과 계약직은 연봉으로 지급한다.

② 연봉액 책정 및 지급 방법은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제67조(급여계산)** ① 급여는 임명, 전보, 승진, 승급 또는 감봉 기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모두 발령일을 기준으로 하며 실지 근무일수에 의하여 일괄 지급한다.

②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퇴직 또는 면직될 때에는 그 월분의 급여 전액을 지급한다.

③ 급여의 지급기간 계산은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고 공휴일의 휴무는 출근일수에 산입한다.

**제68조(초임금)** ① 신규채용자의 초임금은 직급별로 구분된 최저호봉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직무와 동일한 경력이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초임 호봉에 별표 제3호에 의한 경력 환산 호봉을 가산한다.

② 하위직급에서 상위직급으로 승진시는 승진 전 호봉에서 1호봉을 하향 확정한다.

**제69조(지급일)** 급여는 매월 25일에 지급하며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다만, 직원이 퇴직하였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무국장의 재량으로 그 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70조(봉급감액)** 본 규정에 의한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 일수를 제외하고 결근한 자에게는 매 결근 1일에

대하여 봉급일액의 3분의 2를 감하여 지급한다.

**제71조(기본급)** 사무국 직원의 기본급은 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한다.

**제72조(정근수당)**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 지급기준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봉급지급일에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제73조(정근수당가산금)** 장기근속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 지급기준에 따라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한다.

**제74조(성과상여금)** ①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범위 안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② 수원시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범위 안에서 성과급을 지급한다.

③ 평가 대상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연도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 징계사유 시효가 5년인 비위
2.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음주 운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에 관련된 비위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매매에 관련된 비위
5.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에 관련된 비위
5. 지급대상 기간 중 중징계 처분(파면, 해임, 강등, 정직)을 받은 자.

**제75조(가족수당)** ① 직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② 가족수당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무원 수당규정을 준용한다.

**제76조(자녀학비 보조수당)** ① 고등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 지급기준에 따라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지급한다.

② 자녀가 법령에 의하여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7조(관리업무수당)** 5급 이상(계약직포함) 직원에게는 월 봉급의 9%를 관리업무수당으로 지급한다. 관리업무 수당을 지급 받는 자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8조(초과근무수당)** ① 6급 직위 이하 직원 중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자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안에서 초과근무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 초과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제79조(실비변상 등)** ①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 지급규정을 준용하여 다음의 실비를 지급한다.

1. 정액급식비
2. 직급보조비
3. 명절휴가비

#### 4. 연가보상비

### 제9장 퇴직 및 해고

**제80조(퇴직)** ① 직원이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퇴직원을 제출하고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② 직원이 제13조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81조(정년퇴직)** ① 직원의 직능별 정년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직·기술직: 만 60세
2. 계약직의 정년은 이를 정하지 아니한다.

② 1호의 만 연령에 도달한 해당 년에 생년월일이 6월 이전인 자는 6월 30일에, 7월 이후인 자는 12월 31일에 당연 퇴직한다.

③ 20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 대하여 정년퇴직일 전 1년 이내의 기간에서 사회적응능력 배양을 위한 공로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82조(명예퇴직 등)** ① 직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이 되었을 때 20년 미만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친 경우
2. 직제와 정원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
3. 예산이 감소된 경우

③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이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받거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명예 퇴직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1.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
2.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4.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자.
5. 임원 승진을 전제로 퇴직하는 자, 임원으로 선임되어 퇴직하는 자.

⑤ 제1항의 명예퇴직수당 및 제2항의 수당 지급 대상 범위, 지급액, 지급절차와 제3항에 따른 명예퇴직 수당의 환수액, 환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다.

**제83조(해고)**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고 인정 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고할 수 있다.

1. 금치산,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신체 또는 정신상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함)
4. 휴직자로서 상당한 사유없이 휴직기간 만료 후 7일이 경과할 때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인사위원회에서 해고가 결정된 경우
6.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84조(해고의 제한)** ① 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아니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라 일시 보상을 하였을 경우에는 해고 할 수 있다.  
② 산전·산후의 여성직원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1년 이내 유아휴직 기간 동안은 해고하지 아니한다.

**제85조(해고의 통지)** ① 체육회는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 서면으로 그 사유 날짜를 기재하여 통지한다.  
② 체육회는 제1항에 따라 해고를 통지하는 경우 해고일로부터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 전에 해공예고를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1. 직원이 계속 근로한 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직원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에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가람  
④ 체육회는 제2항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 제10장 퇴직금

**제86조(퇴직금)** ① 직원으로서 1년 이상 재직한 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한다.  
② 회장은 직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원이 퇴직하기 전에 당해 직원이 근속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직원과 협의 하에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퇴직연금에 가입코자 하는 직원에 한하여 실시한다.

**제87조(기금조성)** ① 퇴직기금은 체육회에서 기여하는 퇴직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로서 이를 별도로 계정한다.  
② 체육회의 퇴직적립금은 체육회 정원에 의한 매 회계연도 급여예산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88조(지급기준)** ① 퇴직금은 근속년수 1년당 1개월분의 평균 급여로 한다.  
② 평균 급여라 함은 퇴직한 달이 속하는 해의 연간 보수액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③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에는 그 퇴직금의 2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한다.  
④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에 있거나 형사재판에 계류 중에 있는 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무혐의 또는 무죄가 확정될 때까지 퇴직금의 지급을 보류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경우 지급해야 할 금액이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한 최저기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⑥ 제85조 제2항에 의거 중간정산한 직원이 퇴직하거나 사망하였을 때의 퇴직금은 총 근속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지급률에서 중간정산 지급률을 공제한 지급률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89조(퇴직금의 중간정산)** ① 퇴직급여의 중간 정산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한한다.

1. 무주택 직원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 직원이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직원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다.
  3. 직원, 직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직원 또는 직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직원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직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② 제1항 1호 내지 3호 경우로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 적립금의 50%를 한도로 하며, 3호의 경우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90조(조기퇴직수당)** ①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일반직 직원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사무국의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그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력직 직원으로 한다.

② 또한, 당 회의 요청에 의해 퇴직하는 직원을 포함하며 별정직은 예외로 한다.

③ 조기퇴직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1년 이상 5년까지 기본급의 2월분, 6년 이상 10년 미만 기본급의 4월분, 10년 이상 근속한 자는 기본급의 6월분을 지급한다. 다만, 정년 또는 근무상한 연령까지의 잔여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91조(근속연한계산)** 근속연한은 발생일부터 기산하여 퇴직 또는 사망한 날까지의 월수를 계산한다. 다만 잔여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달로 계산한다.

**제92조(근속결격)** 휴직 및 정직기간은 근속연한에 통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휴직 출산휴가, 육아휴직 및 공상(업무상 부상·질병휴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근속연한에 통산한다.

**제93조(수령권자)** 퇴직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유족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중 유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4조(지급일)** 퇴직금의 지급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금액을 지급한다.

## 제11장 상 별

**제95조(포상)** 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회장이 이를 포상한다.

1. 품행이 단정하고 업무에 근면하여 타에 모범이 된 자
2.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특히 곤란한 업무를 수행한 자
3. 인사위원회에서 포상하기로 결정한 자

**제96조(징계사유)** 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징계한다.

1. 법령, 본회 규정, 기타 제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경우
3. 본회의 명예훼손, 기밀누설 또는 규율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하였을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본회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
5. 기타 상사의 정당한 지시에 복종하지 아니한 자

**제97조(징계의 종류)** ①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으로 구분한다.

② “중징계”란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을 말하며, “경징계”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제98조(징계의 기준)**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 혐의자에 대한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느우치는 정도,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제10호의 징계기준, 별표 제12호의 청렴의무 위반 징계기준, 별표 제13호 음주운전 징계기준 등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가 징계 등 사건을 의결 할 때에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기강확립에 주력하고,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음주운전 사건비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성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는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제99조(징계의 효력)** ①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②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기간으로 하고 봉급의 3분의 1을 삭감한다.

③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 삭감한다.

④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 삭감한다.

⑤ 징계처분을 받은 임직원은 그 처분을 받은 날 또는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목의 기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성폭력·성희롱 및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가산한 기간)동안 승진 임용 또는 승급을 할 수 없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은 후 직무 수행의 공적으로 포상 등을 받은 임직원에 대하여는 승진임용이나 승급의 제한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 강등, 정직 : 18개월
2. 감봉 : 12개월
3. 견책 : 6개월

⑥ 이 규정에 의한 징계는 손해배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⑦ 채용비위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감사 및 인사담당 업무를 담당할 수 없다.

1. 정직 이상 3년
2. 정직 미만 2년

**제100조(징계의 감경)** ① 인사위원회는 정계의결 등이 요구된 사람이 포상경력 등의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임직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정에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하며,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징계의결이 된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2.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음주 운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에 관련된 비위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매매에 관련된 비위
5.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에 관련된 비위
6.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7. 채용비위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 등의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발생된 것이 인정될 경우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제15호의 징계양정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경감할 수 있다.

**제101조(징계의결 요구서)** 사무국장은 직원이 제96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징계의결 요구서를 작성, 인사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102조(징계의결기간)**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5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3조(징계대상자의 진술)**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대상자에게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인사위원회의 개최 사실을 징계대상자에게 별지 제8호 서식의 출석통지서를 통보하여야 하며, 징계대상자가 인사위원회에서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한 때에는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진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④ 징계대상자는 본인에게 이익 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인 또는 관계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제104조(의결보고)** ① 인사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징계의결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가부를 결정하여 집행하거나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집행할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8호 서식의 징계처분 사유설명서에 별지 제10호 서식의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5조(재심청구)** ①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이유서를 첨부하여 1회에 한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의 의결기관, 절차 및 집행 등에 관하여는 제99조 내지 제10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06조(징계사유의 시효)**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금품 및 향응수수, 채용비위, 공금의 횡령, 유용의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제107조(의원면직 제한제도)** 의원면직을 신청한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해당 임직원의 피의사실이

제97조 제2항에서 정한 중징계 대상에 속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 의결을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시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제108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재직 중인 임직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이 제107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제109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임직원이 제97조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안건에 우선하여 그 해당 임직원에게 대한 징계요구안을 심의하여 징계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10조(부정청탁 공개목적 및 범위)** 사무국장은 타 법령에서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 할 수 있으나, 인적사항은 공개범위에서 제외한다.

**제111조(채용비위 행위자 명단 공개)** 사무국장은 임원이 비위행위 중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로서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인적사항 및 비위행위 사실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제112조(채용비위 관련자 합격취소 등) 체육회**의 장은 임원이 채용비위 관련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채용비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서 합격하거나 승진 또는 임용 된 사람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사무국장에게 합격·승진·임용의 취소 또는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심의·의결을 하기 전에 그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2장 교 육

**제113조(교육시간)** 이 규정에서 규정한 교육은 근무시간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교육을 받는 시간은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원과 합의로 근무시간 외에 직무교육을 받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처우에 관하여는 교육의 장소·일정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한다.

**제114조(직무교육)** 체육회는 직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무교육을 시킬 수 있으며 사원은 교육과정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115조(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체육회는 1년에 1회 이상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등을 내용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한다.

**제116조(개인정보보호교육)** ① 체육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취급자인 직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② 개인정보취급자인 직원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연1회 받아야한다.

## 제13장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117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①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한다.

② 1항에 따른 조치사항

1.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무국장에게 신고 할 수 있다.
2. 사무국장은 제1호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사무국장은 제2호에 따른 조사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 직원 등에 대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5. 사무국장은 제2회의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 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6. 사무국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직원 및 피해 직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8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체육회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1시간 이상 실시한다.

## 제14장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

**제119조(사업장내 성희롱 행위 및 금지)** ① 직장 내 성희롱 행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언어적인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경우
  2. 물리적·시청각적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경우
  3. 신체적 접촉등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경우
  4. 기타 당사자가 원하지 아니하거나 사회통념상 인정되기 어려운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경우
- ② 체육회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은 사업장내에서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체육회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한 징계나 그밖의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체육회는 사업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직원을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0조(성희롱 예방교육)** 체육회는 사업장내 종사자간 성희롱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업장 문화를 진작하기 위해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15장 안전보건

**제121조(안전보건관리규정)** ① 체육회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갖춰 두고, 이를 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직원은 안전보건관리계획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122조(안전보건 교육)** 채용회는 직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기교육, 채용 시의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유해위험 작업에 사용 시 특별안전 교육 등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제반 교육을 실시하며 직원은 이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제123조(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 채용회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거나 동력을 작동하는 기계·기구에 대하여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방호조치를 해체하고자 할 경우 담당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 해체할 것
2. 방호조치를 해체한 후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없이 원상으로 회복시킬 것
3. 방호장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부서의 장에게 신고할 것

**제124조(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채용회는 유해·위험작업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하며 직원은 작업시 회사에서 지급하는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125조(건강진단)** ① 채용회는 직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② 직원은 채용회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성실히 받아야 한다.

**제126조(산업안전보건법의 준수)** ① 채용회는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 직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킨다.

② 직원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사항과 그 외의 업무에 관련되는 안전보건에 관하여 상사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정확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제16장 여 비

**제127조(여비)** ① 직원이 채용회의 업무로 출장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국내·국외여비는 공무원의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② 출장 중 공무로 인한 상해 또는 질환으로 여행지에 체재하는 때에는 그 일수를 출장일수에 추가 산입한다. 이 경우 귀임 후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7장 재 해 보 상

**제128조(보상)** ① 업무상 원인으로 불구가 되어 퇴직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직원이 공상을 입었을 시 그 치료 및 입원에 관하여 본회에서 책임 조치한다.

## 제18장 문 서 처 리

**제129조(문서의 접수)** 본회에 송달되는 모든 문서는 문서내용의 처리를 주관하는 각 부서에서 접수한다.

**제130조(기안)** 기안은 업무단위 책임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서식이 따로 정하여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별표 제6호 서식을 적용한다.

**제131조(결재)** ① 기안한 문서는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결재권자의 결재는 결재란에 서명 또는 날인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결재 일시를 표시한다.

③ 결재권자가 출장, 휴가, 기타사유로 상당한 기간 부재중일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의 대결로서 우선 시행하고 결재권자의 후결을 받아야 한다.

④ 긴급한 문서로서 결재권자의 사정에 의하여 결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의 대결로서 우선 시행하고 결재권자의 후결을 받아야 한다.

⑤ 제3항에 의하면 문서를 시행한 후 규정의 결재권자가 후결함에 있어서 그 내용을 수정한 때에는 그 수정한 사항을 수신자에게 통보한다.

⑥ 본회의 위임전결내규를 신설하며 위임전결 사항은 별표 제6호와 같다.

**제132조(준용)** 전조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문서의 작성처리 통제 및 보관보존에 대하여는 공무원 사무관리규정을 준용한다.

## 제11장 재 정 규 정

**제133조(예산운영의 기본원칙)** ① 체육회의 재정은 이를 건전하게 운영함으로써 본회사업의 발전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보조지원 정책을 충실하게 구현하며 타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예산은 그 집행을 면밀히 하고 예산의 편성·집행 시 예산통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모든 지출은 예산통제를 받아야 하며 예산 초과지출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⑤ 세입·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134조(예산편성)** ①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수입이 확실히 예견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선정하고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한 예산안의 재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재원에 의한 것일 때에는 이사회 승인을 얻기 전에 당해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전②항의 경우에 의하여 편성한 예산안은 이사회 승인을 얻음으로서 예산으로 성립된다.

**제135조(예산편성 지침)** 예산은 다음의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

1. 정부의 예산편성 지침이 정하는 사항

2.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

3. 세입 예산은 전항의 구분에 의하여 그 내용을 성질별로 관, 향으로 구분하고 세출예산은 전항의 구분에 의하여 그 내용을 기능별 성질별로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으로 구분한다.



**제136조(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① 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이사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의 예산 불성립 기간에는 가예산안을 편성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 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137조(예산의 유용)** ① 세입·세출예산은 정한 목적이외의 경비로 사용하거나 예산이 정한 각 단위사업, 세부 사업 간에 상호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 중 과목상의 과부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목간 변경은 시와 협의하여 사무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출의 결산보고서에서 명백히 하는 동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38조(예비비)** 체육회의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매 회계 연도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의 예에 준하여 세출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제139조(세입·세출결산보고)** 회장은 회계연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세입·세출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 다음 이사회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0조(회계구분)** ① 체육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또는 일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한하여 이사회회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제141조(회계연도)** 체육회의 회계 연도는 정부의 회계 연도에 따른다.

**제142조(출납폐쇄기간)** 체육회의 출납은 정부의 예에 의한다.

**제143조(출납기한)** ① 체육회의 출납은 회계연도 종료와 함께 폐쇄한다.

② 매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회계연도 종료 후 1월안에 완결하여야 한다. 다만, 국고보조금은 정부의 예산회계법을 준용하여야 한다.

**제144조(회계 관계직원 관직 지정)** 체육회의 회계 및 재산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각각 지정한다.

1. 징수관 ----- 사무국장
2. 분임징수관 ----- 경영지원과장
3. 재무관 ----- 사무국장
4. 분임재무관 ----- 경영지원과장
5. 물품관리관 ----- 경영지원과장
6. 분임물품관리관 ----- 각 팀장
7. 징수원 ----- 경영지원과장
8. 지출원 ----- 경영지원과장
9. 수입금출납원 ----- 경영지원과장
10. 물품출납원 ----- 회계팀장

11. 분임물품출납원 ----- 각 팀장

**제145조(장부비치)** 체육회 사무국에서는 다음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세입(수입) 징수에 관한 장부
2. 수표발행에 관한 장부
3. 지출 원인행위에 관한 장부
4. 지출에 관한 장부
5. 현금 지급에 관한 장부
6. 기타 회계에 관한 장부

**제146조(징수관 직무위임)** 징수관은 분임 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규약,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
2. 교부금, 부과금, 보조금, 잉여금의 징수 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제147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재무관은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예정금액이 1,000만원 미만인 공사, 제조, 용역, 물건매입과 조달물자 금액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행정재산의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 사업비, 반환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 제 규정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 교부

**제148조(세입의 징수와 수납)** ① 체육회의 제세입은 징수 또는 수납할 자격을 가진 직원이 아니면 징수 또는 수납 할 수 없다.

② 전항의 직원이 수납한 제세입은 수입결의서에 의하여 지정된 은행에 지체 없이 예치하여야 한다.

**제149조 (회계책임)** ① 회계 관계 직원은 체육회 소정의 재정보증을 필하지 아니하고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② 현금 또는 물품을 취급하는 출납원 등 회계 관계 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서 본회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상당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선량한 회계직원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직무를 수행하였을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50조(지출의 절차)** ① 사무국장 또는 전조의 경우에 의하여 위임을 받은 소속 직원(이하 재직원이라 한다)이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예산에 의하여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지출원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출원은 제①항의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검토한 후 지출한다.

**제151조(지출의 원칙)** ① 지출은 제반관계 증빙서류가 구비된 지출결의서에 의한다.

② 지출은 수취인 별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급여, 여비, 소액지급, 기타 특별한 경비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52조(지출원의 조사사항)** 지출원은 다음 사항을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 경우 이를 정정하거나 지출을 거부하여야 한다.

1. 법령·조례 또는 규칙의 범위 내에서 집행
2. 배정된 예산범위 내 집행

3. 회계연도 소속구분 문란 금지(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준수)
4.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5. 예산과목 임의 전용 금지 등

**제153조(계약방법과 준용)** ① 물권계약, 채권계약, 신분계약 등 기타 계약행위는 다음의 해당법령을 준용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3. 기타 정부 계약에 관한 법령

② 매매, 임차, 도급 및 기타 계약행위는 오천만원 이상은 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 제12장 물 품 관 리

**제154조(정의)** 물품관리라 함은 체육회 사업 및 운영을 위한 모든 물품의 취급, 보관, 사용 및 처분 등의 행위를 말한다.

**제155조(물품출납원)**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물품출납원을 두되 필요에 따라 각부서 소관 물품관리를 위하여 분임물품출납원을 둘 수 있다.

**제156조(검수원)** 구입물품의 수량, 품질, 규격 등의 계약서 또는 시방서에 명시된 조건과 일치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수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157조(검수원의 책임)** 전조의 규정에 의한 검수결과 계약조건과 상위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검수원은 지체 없이 물품구입자에게 통고하여 대납,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8조(불용품)** 불용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1. 저장물품, 유희품으로 장래 사용하지 아니할 물품
2.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재사용이 불가능한 물품
3. 장기사용으로 노후하여 사용 불가능한 물품
4. 기타 폐품이라고 인정된 물품

**제159조(처분)** ① 물품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초과한 최고입찰자에게 매각하여야 한다.

② 기본재산을 제외한 물품처분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이 결정한다.

**제160조(물품감사)** 체육회는 필요에 따라 물품감사원을 임명하여 물품 및 장부에 관하여 감사 할 수 있다.

**제161조(물품관리 직원의 임무)** 물품관리직원은 모든 물품에 대하여 파손, 훼손, 망실 및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항시 점검하여야 하며 수리가능품은 처리 또는 보수하여 수명을 연장하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다.

**제162조(책임)** ① 물품출납원(분임출납원포함)은 그 소관물품을 관리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본회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상당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이라고 인정이 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물품을 사용하는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물품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액을 변상 하여야 한다.

### 제13장 보 칙

제163조(보칙) 이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예산과 결산회계수입과 지출계약, 물품관리 등 회계 관계 사무에 관하여는 지방행정 및 동법시행령을 준용하며 직원의 사무 및 공무에 관하여는 도체육회처무규정 및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 부 칙 (제정 2022. 2. 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호>

## 사무국 정원표

(단위 : 명)

구 분		정원	비 고
합 계		39	
별정직	3·4급	1	
일반직 계약직	5급	4	
	5·6급	1	
일반직 계약직	6급	8	
	7급	7	
	8급	6	
	9급	3	
기술직	6급	1	물리치료사(1) 기계(2), 전기(4), 가스(1), 운전(1)
	7급	2	
	8급	4	
	9급	2	

## 과별 정원표

(단위 : 명)

구분	계	세부인원		비고
		소계	팀명	
합계				
경영지원과	11	7	경영지원팀 (사무7, 기술1)	
		4	회계팀 (사무4)	
시설운영과	10	5	시설운영팀 (사무4, 기술1)	
		3	서호체육센터 (사무1, 기술2)	
		2	광교체육센터 (사무1, 기술1)	
체육지원과	8	4	체육지원팀 (사무4)	
		4	종목육성팀 (사무4)	
직장부운영과	10	5	직장부운영팀 (사무5)	
		5	선수촌운영팀 (사무1, 기술4)	

<별표 제2호>

직원 채용기준

구 분		자 격 기 준
별정직	3급	1.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4급 이상의 직위에 재직한 자 2. 정부투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에서 이에 상응하는 직급 이상의 직에 재직한 자 3. 체육 관련분야에서 10년 이상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급	1.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5급 이상의 직위에 재직한 자 2. 정부투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에서 이에 상응하는 직급 이상의 직에 재직한 자 3. 체육 관련분야에서 7년 이상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사무직	5급	1.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6급 이상의 직위에 재직한 자 2. 정부투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에서 이에 상응하는 직급 이상의 직에 재직한 자 3. 체육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6급	1.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7급 이상의 직위에 재직한 자 2.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에서 이에 상응 하는 직급 이상의 직에 재직한 자 3.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7년 이상 체육 관련분야에서 근무한 자 4. 체육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7급	1.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2.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에서 이에 상응 하는 직급 이상의 직에 재직한 자 3.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5년 이상 체육 관련분야에서 근무한 자 4.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8급	1.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자 2. 정부투자기관의 이에 상응하는 직급 이상의 직에 재직한 자 3.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체육 관련분야에서 근무한 자 4.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9급	1.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자 (체육 관련분야 전공자 우대)
기술직  ( )는 실무 경력	6급	1. 운전면허 보통 1종 소지자로 실무경력 20년 이상인 자 2. 기사(5년), 산업기사(10년), 기능사 (20년), 물리치료사(10년) 3.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7급	1. 운전면허 보통 1종 소지자로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자 2. 기사(3년), 산업기사(5년), 기능사 (10년), 물리치료사(5년) 3.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8급	1. 운전면허 보통 1종 소지자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2. 기사(1년), 산업기사(3년), 기능사 (5년), 물리치료사(3년) 3.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9급	1. 운전면허 보통 1종 소지자 2.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물리치료사 자격증 소지자 3.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별표 제3호>

경력연수 환산표

(제49조 규정)

경력별	구 분	환산율
갑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한체육회, 시, 도체육회사무처 근무경력</li> <li>○ 국가 및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경력</li> <li>○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임시직 경력(동일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기관 시간강사 경력 제외</li> <li>※ 경노무직 경력 제외</li> </ul> </li> <li>○ 공공법인 근무경력(동일분야)</li> <li>○ 언론사 근무경력(체육분야)</li> <li>○ 대학 전임강사 이상의 체육분야 전문직 경력</li> <li>○ 체육(엘리트, 생활체육) 지도자 경력(전일제 지도자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설체육센터 근무경력 제외</li> </ul> </li> <li>○ 동일직종 경력(운전, 기계 및 전기설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직종에 한함</li> </ul> </li> </ul>	100%
을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 및 시·도 종목단체 사무국 경력</li> <li>○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근무한 임시직 경력(비동일분야)</li> </ul>	80%
병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법인 근무경력(비동일분야)</li> <li>○ 국·공립학교에 상근으로 근무한 임시교원 및 기간제교원 경력</li> </ul>	70%
정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경노무 고용원 근속기간</li> <li>○ 교원기관 시간강사 경력</li> <li>○ 상장기업 주식회사 등에서 근무한 경력</li> <li>○ 사립학교에 상근으로 근무한 임시교원 및 기간제교원 경력</li> <li>○ 기타 해당업무의 규모, 성격, 근무경력의 내용정도에 따라 인정하는 경력</li> </ul>	50%

<별표 제4호>

업 무 분 장 표

과 별	업 무 분 장
<p>경영지원과 (경영지원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인 관리에 관한 사항</li> <li>• 총회 및 이사회,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li> <li>• 기구 조직 및 정원의 관리</li> <li>• 문서의 수발·통제 및 보존 업무에 관한 사항</li> <li>• 인사 및 상훈에 관한 사항</li> <li>• 복무 및 직원교육에 관한 사항</li> <li>• 법제업무에 관한 사항</li> <li>• 규정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li> <li>•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li> <li>• 민원 및 정보공개 관련 업무</li> <li>• 수원시공공기관 경영평가 업무</li> <li>•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사항</li> <li>• 홍보에 관한 사항</li> <li>• 수원스포츠응원단 운영 업무</li> <li>• 기타 타 부서에 속하지 않은 사항</li> </ul>
<p>경영지원과 (회계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 운용 업무의 총괄·조정 업무</li> <li>• 예산 및 결산, 회계에 관한 사항</li> <li>• 계약 및 입찰 업무</li> <li>• 보조금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li> <li>• 물품 구매 및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li> <li>• 보수 및 퇴직금 관리에 관한 사항</li> <li>• 연말정산 등 세무 관련 업무</li> <li>• 직원 후생 및 복지에 관한 사항</li> <li>• 감사업무에 관한 사항</li> <li>• 전산시스템 관련 업무</li> <li>• 차량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li> <li>• 수원시태권도시범단 운영 업무</li> </ul>
<p>시설운영과 (시설운영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육시설물 수탁 관리 업무</li> <li>• 시설관리 특별회계 업무(예산·결산·회계정리)</li> <li>•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li> <li>• 민방위·소방에 관한 사항</li> </ul>
<p>시설운영과 (서호체육센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호체육센터 관리에 관한 사항</li> <li>• GX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에 관한 사항</li> <li>• 수입 관리에 관한 사항</li> <li>• 고객 관리 및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li> </ul>



과 별	업 무 분 장
<p>시설운영과 (광고체육센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광고체육센터 관리에 관한 사항</li> <li>• GX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에 관한 사항</li> <li>• 수입 관리에 관한 사항</li> <li>• 고객 관리 및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li> </ul>
<p>체육지원과 (체육지원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동계(소년)체육대회 관련 업무</li> <li>• 수원시한마음체육대회 개최에 관한 사항</li> <li>• 학교체육 지원 및 우수선수 육성에 관한 사항</li> <li>• 지도자은행제 및 장수노인대학 관련 업무</li> <li>• 토요일스포츠교실사업 및 도비사업 관련 업무</li> <li>• 클럽 및 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li> <li>• 지도자 관리·지원에 관한 사항</li> <li>• 경기도체육회 지원(공모)사업에 관한 사항(학교, 클럽)</li> </ul>
<p>체육지원과 (종목육성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목단체 회장기대회 관련 업무</li> <li>• 종목단체별 전국생활체육대회 출전에 관한 사항</li> <li>• 수원시생활체육대축전 개최에 관한 사항</li> <li>•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출전에 관한 사항</li> <li>• 종목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li> <li>• 경기도체육회 지원(공모)사업에 관한 사항(종목단체)</li> <li>• 스포츠공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li> <li>• 경기도체육대회 출전지원(종목단체)</li> </ul>
<p>직장부운영과 (직장부운영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장운동경기부 육성관리에 관한 사항</li> <li>• 직장운동경기부 징계 및 포상에 관한 사항</li> <li>• 경기실적 및 기록/평가분석 업무</li> <li>•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및 해체에 관한 사항</li> <li>• 훈련점검/대회출전/전지훈련에 관한 사항</li> <li>• 선수영입위원회 운영업무</li> <li>• 국제교류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li> <li>• 훈련장 시설 및 기자재 관리에 관한 사항</li> <li>• 경기도체육대회 출전에 관한 사항</li> <li>• 전국체육대회 관련 업무</li> </ul>
<p>직장부운영과 (선수촌운영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수촌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li> <li>• 입촌 선수단(남·여) 관리에 관한 사항</li> <li>• 선수촌 비품 관리 업무</li> <li>• 선수촌 특별회계(식당) 관리 업무</li> <li>• 선수촌 구내식당 운영에 관한 사항</li> <li>• 선수촌 재활치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li> </ul>

<별표 제5호>

###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출 산	배우자	10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탈 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비고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 위임 전결 내규

제 정 2016. 6. 24.

**제1조(목적)** 본 내규는 사무국 규정 제94조에 의거 본회 사무국 제반 업무에 대한 위임 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업무의 능률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본회 사무국 위임 전결사항은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본 내규에 의한다.

**제3조(전결권자의 책임)** 본 내규에 의하여 전결한 사항에 관하여는 전결권자는 회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4조(전결사항)** ① 회장은 본 내규에 따라 소관업무에 관한 결재를 별표 제6호 구분에 의해 위임 전결하게 된다.  
② 결재권자가 출장 등 기타 사유로 상당한 기간 부재중일 때에는 그 직무 대행자가 대결할 수 있으며,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결재권자의 후열을 받아야 한다.  
③ 긴급한 문서로서 결재권자의 사정에 의해 결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의 대결로서 우선 시행하고, 결재권자의 후열을 받아야 한다.  
④ 전항에 의해 문서를 처리한 후 정규의 결재권자의 후열 시에 그 내용을 수정한 때에는 그 수정사항을 관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전결사항의 특례)** ① 본 내규에 의한 위임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상급자의 지시가 있을 때
  2. 사안이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경우
  3. 기타 전결권자가 상급자의 결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② 회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본 내규에 정해진 위임에 불구하고, 따로 지시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임 전결사항 중 타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해당부서의 협의를 얻어야 하며, 합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차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6조(전결권자의 표시)** 본 내규에 규정된 권한에 의하여 전결하는 자는 그 위임된 권한의 근거를 관련문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2021. 2. 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6호>

## 위 임 전 결 사 항

업 무 내 용		전결권자		회장
		과장	국장	
1. 사업계획의 수립	기본사업계획 및 운영계획 수립			○
	단위사업의 실행		○	
2. 규정의 제정 및 개정				○
3. 예산안 편성 및 결산				○
4. 재산 취득 및 처분	중요한 재산 취득 및 처분		○	
	사무국 운영에 따른 일반자산		○	
5.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 안건 및 결의사항				○
6. 위원회 운영	위원 위촉 및 해임			○
	위원회 운영(안건)		○	
	계획의 시행	○		
7. 각종회의	상임이사회의 운영		○	
	전무이사 회의	○		
	종목단체장 협의회의		○	
8. 인사관계	기구개편, 정원조정			○
	5급 이상의 직원채용 및 승진·전보			○
	6급 이하의 직원채용 및 승진·전보		○	
	기능직, 고용직 채용 및 승진·전보		○	
	정기승급		○	
	직원의 상벌		○	
	인사, 회계직 등 당연직 임명		○	
9. 상근 임직원의 복무	임원의 해외출장			○
	6급 이상 출장, 휴가 등 복무관리		○	
	7급 이하 출장, 휴가 등 복무관리	○		
	직원의 복무(시간외 근무 등)에 관한 사항	○		
10. 세출예산 집행품의	5백만원 초과 금액		○	
	건당 5백만원 이하 금액	○		
	봉급, 공공요금, 제과과금 등 경상적경비	○		
	종목단체 보조금		○	
	이미 방침이 결정된 경기단체 또는 개인의 정기적 보조금	○		
11. 지출원인행위	5백만원 초과 금액		○	
	5백만원 이하 금액	○		
	규정에 의한 경상경비	○		
12. 수입결의	일일수입결의	○		
	월말결산		○	
13. 특별 기금 관리			○	
14. 종목단체 찬조금 영수 및 교부			○	
15. 세입·세출 일계표 잔고 확인		○		
16. 세입·세출 외 현금관리		○		
17. 예산의 전도 정산보고			○	

업 무 내 용		전결권자		회장
		과장	국장	
18. 보조사업	보조금 교부신청 및 정산보고		○	
	보조사업의 집행결과 보고		○	
19. 직원의 복리후생	건강보험 업무관리	○		
	국민연금 업무관리	○		
	고용보험 업무관리	○		
	직원건강 진단관리	○		
20. 일반업무	중요문서처리		○	
	사무인계인수 보고서(5급이상)		○	
	사무인계인수 보고서(6급이하)	○		
	신원조회		○	
	기타 각종문서 공람처리	○		
	통상적인 경조 부조 업무		○	
	직원의 업무분장 및 조정		○	
	비품관리 및 소모품 관리	○		
	통신시설 운영관리	○		
	제증명 발급	○		
21. 민원 및 분쟁, 소송	제소, 피소 판결사항			○
	진정서 및 민원처리		○	
	소송 진행에 관한 사항과 소명자료 제출		○	
22. 종목단체 지도	회장 인준 승인			○
	전무이사 인준 승인		○	
	대의원총회 개최 및 결과보고		○	
	육성 및 지원계획		○	
	보조사업의 집행점검 및 확인		○	
	체육인 포상 및 징계처리		○	
	종목단체 내부분쟁 조정		○	
	정책 및 중요사항		○	
23. 유관기관협조	일반사항	○		
	종목단체 행사 및 학교체육 진흥계획 수립		○	
24. 종목단체 및 학교체육 진흥	계획의 시행	○		
	국제교류 기본계획 수립			○
25. 국제체육 행사 및 교류	계획의 시행		○	
	대회개최 계획 및 결과보고			○
26. 경기도체육대회 및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대회운영비 보조 및 지원계획		○	
	계획의 시행	○		
	행사계획 수립		○	
27. 체육주간행사	계획의 시행	○		
	기본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
28. 수원시한마음체육대회 및 수원시생활체육대축전	대회운영비 보조 및 지원계획		○	
	계획의 시행	○		
	기본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	
29. 전국(동계)체육대회	종목별 대회참가 격려		○	
	기본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	
30. 전국소년체육대회	종목별 대회참가 격려		○	
	체육시설운영에 관한 정책 및 주요사항		○	
31. 체육시설운영	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일반사항	○		
	체육관 및 시설 사용허가	○		
	체육시설 관련 민원 사항	○		
	월별 실적보고		○	

<별지 제7호>

## 징계의결 요구서

인적사항	① 성명	한글		② 소속		③ 직위(급)	
		한자		④ 주민등록번호		⑤ 재직기간	
	⑥ 주소						
⑦ 징계사유							
⑧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의결							
위와 같이 징계의결을 요구합니다.							
20    년    월    일							
수원시체육회체육회 사무국장    인							
인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9호>

징계 처분 사유서		
① 소 속	② 직 위(급)	③ 성 명
④ 주 문		
⑤ 이 유	별첨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처분권자(처분제청권자)            홍            흠 귀하		
참고 : 이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 본회 사무국 운영 규정 제76조에 의하여 이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징 계 기 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공금횡령		파면			
나. 공금유용, 업무상 배임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다.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
라.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마. 기 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기 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무단결근		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다. 기 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4. 친절·공정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5. 비밀 엄수 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유출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	감봉-견책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및 관리 소홀 등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마. 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6. 청렴의무 위반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폭력(업무상 위력 등,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나. 그 밖의 성폭력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다. 성희롱		파면	파면-해임	강등-감봉	감봉-견책
(성매매)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라. 음주운전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감봉-견책
마. 기 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9. 정치운동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10. 집단행위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11. 채용비위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감봉-견책

###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

구 분		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거나 제공한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거나 제공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거나 제공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징계요구 (처리기준)	징계기준	징계요구 (처리기준)	징계기준	징계요구 (처리기준)	징계기준
100만원 미만	수동	경징계·중징계	강등 ~ 감봉	중징계	해임 ~ 정직	중징계	파면 ~ 강등
	능동	중징계	해임 ~ 정직		파면 ~ 강등		파면 ~ 해임
100만원 이상		중징계	파면 ~ 강등		파면 ~ 해임		파면
<p>※ 비고</p> <p>"금품이나 향응 등"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을 말함</p>							

### 음주운전 징계기준

유 형 별		징계요구 (처리기준)	징계기준	비 고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 0.1% 미만인 경우	경·중징계	감봉~견책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3. "중상해"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4.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란 운전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운전 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였더라도 운전면허 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분을 받아야 한다.
	혈중알코올 농도 0.1% 이상인 경우 또는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정직~감봉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정직~감봉	
음주운전으로 경상해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정직~감봉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임~정직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해임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파면~정직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해임~강등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임~정직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해임~정직		
운전업무 관련 직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파면~해임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강등~정직		

## 채용비위자 징계 기준

### 1. 채 용

구 분 비위의 유형	관련자가 채용되지 않은 경우			관련자가 채용된 경우	
	징계요구 (처리기준)		징계기준	징계요구 (처리기준)	징계기준
응시·자격 요건 미확인 <sup>1)</sup>	경과실	주의·경고	주의·경고	중징계	정직
	고의 중과실	경징계	견책~감봉		
전형 단계별 점수부여 부적정	경과실	주의·경고	주의·경고	중징계	정직~해임
	고의 중과실	경징계 중징계	견책~강등		
채용공고 후 응시·자격 요건 임의 변경 (변경절차 미 이행)	경징계		견책~감봉	중징계	정직~강등
채용절차 <sup>2)</sup> 미준수	절차 미 준수	경징계	감봉	중징계	정직~해임
	주요절차 <sup>3)</sup> 미 준수	중징계	정직~강등		

구 분 비위의 유형	징계요구		징계기준
최종합격자 부당결정	경과실	경징계	감봉
	고의·중과실	중징계	해임~파면
임용 전 결격사유 미확인 <sup>4)</sup>	경과실	경징계	감봉
	고의·중과실	중징계	정직~해임

\* 징계시효(5년)내 3회 이상 채용 비위를 행한 경우에는 가중처분을 할 수 있음(예 : 견책 → 감봉)

\*\* 위 비위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위 기준을 참고하여 결정

### 2. 정규직 전환

구 분 비위의 유형	징계요구		징계기준
최초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모두 부정채용 <sup>5)</sup>	중징계		해임~파면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규정 위반은 없으나) 비정규직 최초 채용에 절차 위반 또는 부정채용	경과실	경징계	감봉
	고의·중과실	중징계	정직~해임
정규직 전환 기준 절차 미준수, 전환대상자 선정 부적정	경과실	경징계	감봉
	고의·중과실	중징계	정직~해임
전환평가 과정 <sup>6)</sup> 의 부적정	경과실	경징계	감봉
	고의·중과실	중징계	해임~파면

1) 응시·자격요건 미확인 : 학위·자격증·경력·연령·제출서류 등 채용요건에 대한 미확인

2) 채용절차 : 관련법령, 상위규정, 기관자체 인사규정상의 채용기준 또는 절차

3) 주요절차 : 채용공고 서류, 면접 전형위원 구성, 위원회 제척, 회피 규정의 준수, 전형단계별 합격인원의 결정 등 합격자나 응시자의 평정 순위가 바뀔 수 있는 절차를 말함

4) 임용전 결격사유 미확인 : 관계법령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직원의 범죄사실 조회 등)는 적용 제외

- 5) 부정채용 : 재직자/친인척(배우자, 4촌 이내 혈족과 인척) 특혜, 부정청탁, 상관 지시 등 부정채용이 비정규직 최초 채용 및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드러난 경우
- 6) 전환평가 과정 : 정규직 전환평가의 기초자료가 되는 근무성적평가, 성과평가 등의 부적정 포함
- <별지 제15호>

### 징계양정 경감 기준

제67조 및 제68조의 1에 따라 인정되는 징계	제69조의 1에 따라 감경되는 징계
파 면	해 임
해 임	강 등
강 등	정 직
정 직	감 봉
감 봉	견 책
견 책	불문(경고)

## 휴직자 근무 실태 자체점검 결과

대상자

부서	직급	성명	휴직기간

자체점검 개요

점검부서	점검기간	점검내용

※ 첨부 : 세부 점검결과 보고서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적발사례 조치결과

부서	적발인원	휴직종류	적발시점	적발사례	조치결과	비고

※ 해당 기간 중 적발된 휴직의 목적 외 적발사례 및 조치결과(인사관련법령상 조치사항 외 기관별 조치한 별도의 불이익 조치 모두 포함)에 대해 작성

기타 건의사항 등

※ 건의사항이 있거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내용이 있는 경우 개조식으로 작성

#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

1. 소 속				
2. 직 급				
3. 성 명(생년월일)	(    년    월    일)			
4. 휴직종류				
5. 휴직기간				
6. 휴직실적				
7. 보수 수령여부	보수 수령( <input type="checkbox"/> 해당됨,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8. 해외체류 여부	해외 체류사실( <input type="checkbox"/> 해당됨,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해 당 시	① 해외휴직 목적상 해외거주 필수여부( <input type="checkbox"/> 해당됨,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 해외거주 필수휴직 : 육아휴직, 해외동반휴직		
	해외거주가 필수가 아닌 경우	② 체류기간	개월	
9.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여부	① 휴직의 목적 달성 가능성( <input type="checkbox"/> 가능, <input type="checkbox"/> 불가능)			
	② 휴직의 목적 외 사용 기간( <input type="checkbox"/> 해당됨,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해당시) <input type="checkbox"/> 1월 미만, <input type="checkbox"/> 1월 이상 ~ 3월 미만, <input type="checkbox"/> 3월 이상 ~ 6월 미만, <input type="checkbox"/> 6월 이상 ~ 1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1년 이상			
	③ 고의성( <input type="checkbox"/> 해당됨,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④ 사회통념상 허용 가능성( <input type="checkbox"/> 허용, <input type="checkbox"/> 불허용)			
	⑤ 기타 휴직 목적에 현저히 위배( <input type="checkbox"/> 해당됨,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10. 휴직자의 복무상황				
년    월    일 휴직자 성명            (인)  수원시체육회장 귀하				





#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수원시체육회**

#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 정 2021. 12. 30.

## 제1장 총 칙

**제1조(설치근거)** 수원시체육회(이하“본회”라 한다)는 정관 제38조에 따라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에 적용한다.

1. 본회
2. 회원단체, 동체육회 및 그 회원단체 또는 지회(이하 “체육회 관계단체”라 한다)
3. 본회의 임원 및 체육회 관계단체의 임·직원
4. 대회 주최 및 참가 임원
5. 체육회 관계단체에 등록된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심판 등 회원과 운동부 등 단체

**제3조(기능)** 위원회는 본회 정관 제38조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본회의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정관의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
3. 체육계 표창에 관한 사항
4. 체육상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5. 정부 및 수원시, 기타 유관기관에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6. 본회의 임원과 본회 관계단체의 임원 및 그 단체에 등록된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심판·선수관리담당자·운동부의 징계에 관한 사항
7. 종목단체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 인정 심의 및 종목단체 임원에 대한 임원심의 재심
8. 본회와 본회 관계단체(그 구성원을 포함한다)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경기, 제도, 단체운영 등)의 조정·중재
9.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 제2장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3명 이하
  3. 위원 9명 이상 15명 이하(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 ②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회장이 본회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회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스포츠 또는 법률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스포츠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인권 전문가로서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④ 본회 정관 제30조제1항 및 제37조제4항의 정관에 해당하는 사람과 수원시 소속 공무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⑤ 위원회의 위원으로 특정 성별의 비율이 재적 위원수의 7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⑥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추천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6조(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본회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임기만료일은 정기총회일 전날이다.

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11조의2에 따른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위원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제8조(회의소집)** ① 회장 또는 위원장의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회의소집은 개최 7일 전까지 시간·일시 및 장소를 기재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8조의2(경비의 지급)** 본회는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며 징계에 대한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그 외의 사항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의2(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정하는 건에 대하여 주심위원을 지정하여 사건의 처리를 주관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조정·중재 소위원회와 그 밖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소위원회 위원은 소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한다.
2.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사전 심의 기능을 수행한다.

③ 회의의 일시·장소·참석자·안건·토의내용·의결결과가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그 회의를 진행한 위원장과 출석위원 중에 위원회에서 추천한 위원 1명이 기명날인한다.

**제10조(긴급한 업무처리)** 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서면결의로 위원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위원 과반수가 정식으로 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 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제척 및 회피)** ①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징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징계 혐의자가 친족(「민법」제777조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인 경우
  2. 해당 심의 건과 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② 심의대상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히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위원장, 부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징계 사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하며, 제2항에 해당하면 회피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1조의2(의무사항)** 위원회의 위원, 간사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원회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유포할 수 없다.
2. 위원회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된다.

### 제3장 법제 및 표창

**제12조(심의대상)** ① 위원회는 법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본회의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본회의 제규정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유권해석
  3. 기타 법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제1항제1호의 의결은 본회 정관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 제·개정한다.

**제13조(포상대상)** 포상은 국제, 전국 및 도대회 우수성적 달성, 체육 보급·육성 등 체육발전에 공헌한 단체(기관) 및 사람에게 수여한다.

**제14조(포상종류)** ① 포상의 종류는 정부 및 수원시, 수원시의회 등 포상과 본회포상으로 구분한다.

② 정부포상은「상훈법」및「정부표창 규정」에 따라 추천한다.

③ 수원시, 수원시의회 등의 포상은 해당 기관의 지침을 따른다.

**제15조(본회 표창의 구분)** ① 본회의 표창권자는 체육회장으로 한다.

② 본회 표창은 수원시체육상 표창이 있다.

③ 체육상 표창은 매년 수원시체육상 시상식 개최 일에 실시하되 필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표창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체육 진흥
2. 생활체육 진흥
3. 학교체육 진흥

④ 그 외 국내 체육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국내외 각종 대회 등에서 국위를 선양한 사람에게 임시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⑤ 표창 수여 세부 기준 및 수여 계획은 별도로 정한다.

**제16조(포상절차)** ① 정부 및 수원시, 수원시의회 등 포상은 수원시종목단체의 장, 동체육회의 장이 추천한 단체 및 사람에 대하여 위원회가 심의하여 요청기관에 추천한다. 다만, 정부 및 수원시, 수원시의회 등의 요청으로 긴급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직접 추천할 수 있다.

② 체육상은 수원시종목단체, 동체육회의 장, 본회가 지정한 체육유관단체의 장이 추천한 단체 및 사람에 대하여 위원회의 추천과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하며, 그 외의 체육회 표창은 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체육상 수상 대상자를 추천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공적조서 2부 및 공적을 증명하는 자료 1부를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본회는 체육회 표창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수여하려는 표창의 종류별로 별지 제2호 서식의 표창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제4장 임원의 심의

**제17조(심의대상)** ① 위원회는 본회 정관 제38조제1항제3호에 의거 다음 각 호를 대상으로 임원심의를 심의·의결한다.

1. 종목단체 임원 및 회장후보자, 동체육회 임원(공무원이 임원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및 회장 후보자
2. 동체육회의 동종목단체 임원에 대한 임원심의 재심의 대상자

**제18조(심의절차)**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국제스포츠기구 임원진출 시 임원경력이 필요한 경우
2. 재정기여, 주요 국제내대회 성적, 단체평가 등 지표를 계량화하여 평가한 결과 그 기여가 명확한 경우

②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자는 선임되기 전에 위원회의 예외적용 여부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회장

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후보자 등록기간 전에 심의 또는 제20조 의거 재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동종목단체 임원심의에 대한 재심의기관으로서 동종목단체 임원심의를 최종 심의·의결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시종목단체 및 동체육회를 거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원심의 신청서(내규에 따름)
2. 이력서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제출하기로 결정한 서류

⑤ 위원회는 임원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시종목단체를 거쳐 심의를 요청한 경우 3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제1항의 예외적용 여부를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제19조(심의결과)** ① 위원회는 객관적인 심의기준을 마련하여 공정한 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기준 평가를 바탕으로 하여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심의하고 의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의기준은 위원회가 정한다.

④ 위원회가 임원심의를 의결하면, 본회는 심의 결과를 임원심의를 요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재심요구)** ① 제19조의 의결에 따라 연임이 제한된 임원 후보자가 그 결과에 불복할 경우 재심 신청의 취지 및 이유와 입증 방법 등을 작성하여 시종목단체 또는 동체육회를 거쳐 본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재심의신청서는 위원회의 결정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종목단체 또는 동체육회를 거쳐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재심의신청서가 본회에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제21조(세부사항)** 이 규정에 정해진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 제5장 징 계

**제22조(스포츠공정위원회의 설치의무)** 수원시종목단체 및 동체육회는 ‘수원시체육회 종목단체규정’ 제38조와 ‘수원시체육회 정관 제38조 및 이 규정에 따라 해당 단체에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3조(증거우선의 원칙)** 위원회 및 제22조에 따른 시종목단체 또는 동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종목위원회 또는 동위원회”라 한다)는 증거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징계하여야 한다.

**제24조(우선 징계처분)** 위원회(종목위원회, 동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사유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관계된 형사사건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수사기관이 이를 수사 중에 있다하여도 제31조제2항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25조(징계대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하여 조사하여 징계 심사할 수 있다.

1. 단체 및 대회운영과 관련한 금품수수, 횡령 배임, 회계부정, 직권 남용, 직무태만 등 비위의 사건
2. 체육 관련 입시비리

3. 폭력·성폭력
  4. 승부조작, 편파판정
  5. 음주운전, 음주소란 행위(강화훈련 기간중), 불법도박
  6. 체육인으로서의 품위를 심히 훼손하는 경우
  7. 부정 참가, 대회진행 방해 등 각종 대회 중 발생한 대회 질서 문란 행위
  8. 기타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건
- ② 본회 정관 제25조제2항 및 수원시종목단체 규정 제20조제4항에 따라 본회 임·직원, 수원시종목단체 임·직원에게 징계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징계한다.
- ③ 본회, 시종목단체, 동체육회의 직원이 징계혐의가 있을 때에는 본회 또는 해당 단체의 인사위원회 등에서 자체적으로 조치한다.
- ④ 제28조제2항과 제34조제6항에 따른 징계혐의자에 대해 위원회가 직접 징계할 수 있다.
- ⑤ 징계혐의자가 사임(사직), 임기만료, 미등록, 명예퇴직 등의 사유로 본회 및 수원시종목단체, 동체육회 및 동종목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더라도 소속 당시 행한 비위행위에 관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25조의2(징계시효)** ① 위원회는 징계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제32조 제5항 각 호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심의·의결하지 못한다. 단, 해당신고·접수일로부터 심의·의결 전일까지 기간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징계시효 만료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1차 징계결정기관에 있다.

**제26조(징계기관의 분류 등)** ① 위원회는 시종목위원회 또는 동위원회가 1차로 결정한 징계사항에 대한 재심의 기관으로서 징계를 최종 결정한다. 다만, 동종목위원회가 결정한 징계사항은 동위원회가 재심의 기관으로서 징계를 최종 결정한다.

② 징계사건에 대한 관할이 불분명한 경우 위원회에서 위원회, 종목위원회 또는 동위원회 중에서 징계 관할을 결정한다.

③ 징계 관할로 결정된 해당 단체는 처분요구일로부터 3개월 내에 위원회를 소집·처리하여야 하며, 위원회 미구성 등 사유로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관할 재심의기관(시·군체육회, 회원종목단체의 경우 경기도체육회, 시종목단체, 동체육회의 경우 본회)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보고받은 해당 기관은 그 사유를 판단하여 징계관할을 다시 결정한다.

**제27조(징계종류)** ① 지도자 및 선수관리담당자에 대한 징계는 다음과 같다.

1. 중징계 : 출전정지, 자격정지, 해임, 제명
  2. 경징계 : 견책, 감봉(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수당을 수령하는 지도자만을 말한다)
- ② 선수에 대한 징계는 다음과 같다.
1. 중징계 : 출전정지, 자격정지, 제명
  2. 경징계 : 견책
- ③ 심판에 대한 징계는 다음과 같다.
1. 중징계 : 출전정지, 자격정지, 강등, 해임, 제명
  2. 경징계 : 견책, 감봉(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수당을 수령하는 심판에 한정한다)
- ④ 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는 다음과 같다.
1. 중징계 : 자격정지, 해임, 제명

2. 경징계 : 견책, 감봉(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수당을 수령하는 임원에 한정한다)

⑤ 운동부에 대해서는 출전정지의 징계를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 각 호의 징계를 받은 지도자, 선수, 심판, 선수관리담당자, 단체 임원은 징계만료 시까지 지도자, 선수, 심판, 선수관리담당자, 단체 임원과 관련된 모든 활동이 제한된다.

**제28조(징계요구)** ① 본회는 징계혐의자와 징계수위를 정하여 해당단체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그 대상이 제25조제2항의 사람인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징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본회는 시종목위원회, 동위원회에서 징계를 하여야 할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즉시 징계를 요구하여야 하며, 징계요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징계처리 결과를 본회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 징계할 수 있다.

**제29조(출석요구)** ① 위원회가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 개최 7일 전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출석요구서가 징계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출석요구서를 징계혐의자의 소속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달하게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요구서 사본을 징계혐의자의 소속단체의 장에게도 송부하여야 하며, 소속단체의 장은 징계혐의자 출석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수 권익 침해(폭력·성폭력) 등 긴급을 요하는 사안의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 3일전까지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요구(서면,전화,메일 등)를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서를 징계혐의자에게 직접 송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출석요구서를 징계혐의자의 소속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요구서를 받은 소속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징계혐의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정당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남기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해외 체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그 밖의 사유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징계 의결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진술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⑦ 징계혐의자가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혐의자는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거부하더라도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제30조(심문과 진술권)** ①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심문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징계의결 요구자 및 신청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1조(징계의 정도 결정)** ① 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징계혐의자의 비위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공적(功績), 적극행정, নিু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할 수 있다. 다만, 제32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감경할 수 없다.

② 위원회(종목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이에 준하는 위반행위를 포함한다)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별표 1에 따라 징계한다.

③ 위원회(종목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제25조제1항제7호(이에 준하는 위반행위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징계한다.

**제32조(징계의 감경 등)** ① 제31조 및 제34조에 따라 확정된 징계와 관련 아래 제4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감경, 사면, 복권,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감경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2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2. 징계절차상의 하자 등 이를 해제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감경 등이 있더라도 징계로 인한 기성의 효과는 변경되지 아니한다.

③ 확정된 징계에 관하여 법원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판결 확정시에 징계가 무효 또는 취소된 것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징계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 등을 할 수 있다.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수원시장, 수원시교육장, 수원시의 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경기도체육회 회장 이상의 표창 받은 공적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감경, 사면, 복권할 수 없다.

1.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金品授受) 비위 및 횡령·배임

2. 체육관련 입시 비리

3. 폭력·성폭력

4. 승부조작, 편파판정

⑥ 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는 시종목단체, 동체육회 및 동종목단체가 감경, 사면, 해제, 복권할 수 없다.

⑦ 사면이란 징계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징계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을 말하며 복권은 징계로 인한 자격정지 등에 대하여 예전의 권리를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3조(징계의 의결 및 통보)** ① 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면, 본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결정서를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 징계혐의자 소속 종목단체 또는 동체육회, 수원시교육청 및 피해자(선수 권익침해 경우)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징계결정서에는 징계종류, 징계사유 및 징계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단, 1차로 결정한 징계사항을 통보하는 경우, 재심의 신청 기한과 방법 등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재심의 신청 등)** ① 징계혐의자는 종목위원회 또는 동위원회가 1차로 결정한 징계사항과 위원회가 1차로 결정한 징계사항에 불복할 때에는 재심의 신청을 하는 취지 및 이유와 입증 방법 등을 명시하여 위

위원회에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은 1차로 결정한 징계 사항에 대해 징계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의결한다.
- ④ 종목위원회 또는 동위원회가 1차로 결정한 징계사항에 대하여 위원회가 재심의 신청을 받아 심의하는 경우 기존 징계를 존중하되, 징계가 심히 부당하거나 위법한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면 할 수 있다.
- ⑤ 위원회가 1차로 결정한 징계사항에 대하여 재심의 신청을 받아 심의하는 경우 새로운 증거와 소명의 정도를 고려하여 가중 또는 감면 할 수 있다.
- ⑥ 위원회는 종목위원회 및 동위원회에서의 징계가 이 규정 양정기준에 위배되거나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징계혐의자의 재심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재심사를 결정하거나 해당 위원회에 재심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⑦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재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차 징계 결정기관과 관련자에게 추가 조사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35조(대회 중 경기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처리절차)** ① 제25조제1항제6호에 따라 대회를 주관하는 본회 관계단체가 위반 행위를 인지한 경우, 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혐의자는 신고 접수된 직후부터 종목위원회, 동위원회 또는 위원회가 징계를 결정할 때까지 해당대회에 참여할 수 없다.

- ② 해당 단체는 행위발생 직후 즉시 종목위원회, 동위원회 또는 위원회 개최를 징계혐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해당단체는 제2항에 따른 통보 후 48시간 이내에 종목위원회 또는 동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④ 종목위원회, 동위원회 또는 위원회는 징계혐의자 및 관련 당사자에게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⑤ 종목위원회, 동위원회 또는 위원회에서 징계가 결정되면, 해당 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결정서를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⑥ 징계혐의자가 제5항에 따른 징계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제34조에 명시된 재심의 절차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의 효력은 정지하지 아니한다.
- ⑦ 동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대회 중 스포츠공정위원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 대회 주관 단체장은 임시 위원회(질서대책위원회 등)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임시 위원회 구성 요건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구성요건과 달리할 수 있다.
- ⑧ 제7항에 따른 임시 위원회의 조치는 해당 대회 참가 제한과 같은 긴급제한 조치에 한한다.
- ⑨ 임시 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징계할 경우 해당 단체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동 대회 종료 후 30일 이내 실시하여야 하며, 관련 재심의 절차는 제34조에 명시된 재심의 절차를 따른다.

**제36조(징계의 효력 등)** ① 종목위원회 또는 동위원회가 의결한 징계는 그 즉시 징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제34조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한 경우 징계의 효력은 일시 정지한다.

- ② 해당단체는 제1항의 징계에 대하여 이를 즉시 문서로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 징계의결 고의 지연에 따른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 재심의 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은 최종결정이며,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징계혐의자가 위원회의 1차 결정에 대한 재심을 신청한 경우 위원회의 재심의 신청에 대한 최종결정시까지 그 징계효력 발생은 일시 정지한다.

**제37조(징계부가금)** ① 위원회(종목위원회, 동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제33조에 따라 징계를 의결할 때에는 그 징계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의 경우에는 해당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 등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결정서를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 해당 단체의 장은 별표 3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부가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혐의자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내에 징계 부가금 감면 의결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단체는 별지 제4호서식 징계부가금 감면결정서를 그 즉시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사람이 법원의 판결(몰수·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날부터 60일 내에 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신청한 경우

2. 위원회가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사람에 대한 법원의 판결(몰수·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 되거나 변상책임 등이 이행된 것을 안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하는 경우 위원회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면 의결하여야 한다.

⑥ 징계혐의자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사람이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아 제3항 또는 제5항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행,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하거나 감면 의결하여야 한다.

**제38조(징계의 보고)** 제22조에 따른 종목위원회 또는 동위원회가 징계의결한 사항은 지체없이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권익 침해 사안에 관한 특별규정)** ① 본회에 신고 접수된 선수 권익침해(폭력·성폭력 등) 사안에 대하여 본회는 1차 조사·구제 기관인 종목위원회 또는 동위원회에 이를 즉시 이송하여 6개월 내에 처리하게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권익 침해가 중대하거나 긴급하게 조사·구제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본회가 직접 조사·구제할 수 있다.

③ 권익 침해 사안에 대한 조사기관은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1. 동위원회는 해당 체육회가 관장하고 있는 운동경기부 소속 선수의 훈련 또는 대회 중 발생한 사안 중 제1호에 해당하는 사안을 제외한 사안을 조사·구제한다.
2. 종목위원회는 수원시대표 및 후보선수 등이 해당 단체를 대표하여 참가하는 대회를 대비한 훈련 또는 대회 중 발생한 사안을 조사·구제한다.
- ④ 본회에 신고·접수된 선수 권익 침해 사안을 1차 조사·구제기관에 이송할 경우 이송 내용을 진정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시종목단체와 동체육회는 본회에서 이송 받은 사안, 직접 신고 접수된 사안, 종목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하기로 결정한 사안 등 소관 권익 침해 사안에 대하여 해당선수 및 지도자가 소속된 운동경기부의 소관 기관장, 민원인에게 그 내용을 즉시 송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선수 격리 보호 등의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⑥ 본회는 제2항에 따라 직접 조사·구제기로 한 사안에 대하여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서면 조사 및 직접 소환조사 또는 현지 실지 조사 등을 통하여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 ⑦ 징계일 현재 선수·지도자등록이 되지 않았으나 별표 1의 제2항(개별기준)의 ‘마’, ‘바’, ‘사’, ‘아’호의 내용에 해당하는 사유가 확인이 된 사람에 대해서는 지도자·선수 등록 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 ⑧ 징계의 효력은 위원회가 그 징계를 의결한 날부터 발생한다.
- ⑨ 위원회는 징계 확정 내용을 징계협약자 및 그 소속단체장, 본회, 징계협약자 소속 종목단체 또는 동체육회, 수원시교육청 및 피해자(선수 권익침해 경우)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⑩ 제9항의 징계처분에 이의가 있는 징계협약자 또는 피해자는 징계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징계처분에 대해 위원회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재심의기간에도 징계의 효력은 정지하지 아니한다.

## 제6장 보 칙

**제40조(개인정보의 처리)** 위원회, 종목위원회 또는 동위원회가 심의와 관련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 해야 하는 경우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40조의2(징계관리시스템구축·운영 등)** ① 본회는 위원회, 종목위원회, 동위원회의 징계 결정사항(징계대상, 위반행위, 징계양정 등) 등록을 위한 시스템(이하 ‘징계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 할 수 있다.  
 ② 본회, 수원시종목단체 및 동체육회는 각 위원회의 건책 이상의 징계 결정사항을 징계관리시스템에 지체 없이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41조(비밀누설금지)** 위원회 업무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42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징계 등에 관한 회의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3조(규정 제·개정)** ① 수원시종목단체 및 동체육회는 이 규정에 따라 해당 단체의 위원회규정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② 본회의 이 규정은 수원시종목단체 및 동체육회의 규정에 우선하며, 해당 단체가 규정을 이 규정에 맞게 제·개정하지 아니하여 해당 규정과 이 규정이 상이할 때에는 반드시 이 규정을 따라야 한다. 다만, 단체의 고유목적 달성과 질서유지 차원에서 필요하거나 단체의 운영 여건상 다르게 하여야 할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한하여 본회와 달리 정할 수 있다.

1. 제4조(위원회 구성)
2. 제3조·제27조·제38조(조사 및 구제 등 기능 추가)
3. 제24조·제30조·별표 1·별표 2(위반행위 기준 신설 관련)

**부 칙 (제정 2021.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위반행위별 징계기준(제31조제2항 관련)

### 1. 일반기준

가. 징계의 정도에 있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별표 기준에 따른다.

나. 징계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경미한 경우”란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피해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비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극히 경미한 경우를 말한다.

2) “중대한 경우”란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 중과실인 경우, 비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중대한 경우를 말한다.

다. 위반행위를 불문하고 2회 위반자에 대해서는 해당 징계기준의 2배 이상 가중 처분하며, 3회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제명 또는 파면한다.

### 2. 개별기준

위반행위	징계대상	징계기준
가. 단체 및 대회 운영과 관련된 금품수수 비위 및 횡령·배임	선수 지도자 심판 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미한 경우: 1년 이상 3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자격정지 1년 이상 3년 미만</li> <li>중대한 경우: 자격정지 3년 이상 또는 제명</li> </ul>
	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미한 경우: 정직 6개월 이상 1년 미만 또는 강등</li> <li>중대한 경우: 해임 또는 파면</li> </ul>
나. 단체/대회 운영과 관련된 직권 남용, 직무태만 등 비위의 사건	선수 지도자 심판 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미한 경우: 견책, 출전정지 또는 자격정지 1년 미만</li> <li>중대한 경우: 출전정지·자격정지 1년 이상 또는 해임·제명</li> </ul>
	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미한 경우: 견책 또는 감봉</li> <li>중대한 경우: 정직, 해임, 파면</li> </ul>
다. 승부조작, 편파판정	선수 지도자 심판 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격정지 3년 이상 또는 영구제명·해임</li> </ul>
	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직 6개월 이상 또는 해임, 파면</li> </ul>
라. 체육 관련 비리 <sup>1)</sup> 입학	선수 지도자 심판 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구제명</li> </ul>
	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임 또는 파면</li> </ul>
마. 폭력	선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미한 경우: 출전정지 또는 자격정지 1년 이상 3년 미만</li> </ul>

위반행위	징계대상	징계기준
	지도자 심판 임원	• 중대한 경우: 3년 이상의 출전정지·자격정지 또는 영구제명
	직원	• 경미한 경우: 견책 또는 감봉 • 중대한 경우: 정직, 해임, 파면
바. 강간, 유사강간 및 이에 준하는 성폭력	선수 지도자 심판 임원	• 영구제명
	직원	• 해임 또는 파면
사. 성추행, 성희롱 등 행위	선수 지도자	• 범죄행위가 인정되나 극히 경미한 경우: 1년 미만의 자격정지 • 경미한 경우: 1년 이상 5년 미만의 자격정지 • 중대한 경우: 5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영구제명
	심판 임원	• 경미한 경우: 1년 이상 3년 미만의 자격정지 • 중대한 경우: 3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영구제명
	직원	• 경미한 경우: 감봉 6개월 이상 또는 정직 6개월 이상 • 중대한 경우: 해임 또는 파면
아.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선수 지도자 심판	• 경미한 경우: 자격정지 1년 이상 3년 미만 • 중대한 경우: 자격정지 3년 이상 또는 제명·해임
	임원	• 경미한 경우: 출전정지 또는 자격정지 1년 이상 3년 미만 • 중대한 경우: 자격정지 3년 이상 또는 해임·제명
	직원	• 경미한 경우: 정직 6개월 이상 1년 미만 또는 강등 • 중대한 경우: 해임 또는 파면
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등	선수 지도자 심판 임원	• 경미한 경우: 견책, 출전정지·자격정지 1년 미만 • 중대한 경우: 출전정지·자격정지 1년 이상, 해임 또는 제명
	직원	• 경미한 경우: 견책 또는 감봉 • 중대한 경우: 정직, 해임 또는 파면

주 1) 입학비리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 ① 입학관련 기록 내지 기재사항을 고의로 조작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하는 행위와 이와 관련하여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 ② 입학과 관련하여 해당학생·선수·학부모·소속 학교·지도자에게 부당하게 재산상 이익을 약속 또는 제공하는 행위와 이를 교사·방조하거나 도움을 주는 등의 행위

③ 기타 학생선수 선발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해치는 행위

<별표 2>

## 대회 중 경기장 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징계기준(제31조제3항 관련)

### 1. 일반기준

- 가. 징계의 정도에 있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별표 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를 불문하고 2회 위반자에 대해서는 해당 징계기준의 2배 이상 가중 처분하며, 3회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제명 또는 파면한다.

### 2. 개별기준

징계 대상	위반행위	징계기준
1. 심판 및 임원 (주최자)	가. 심판배정 상 불공정 행위	자격정지 1년 이상
	나. 과실 및 경기진행 미숙	자격정지 1년 이하
2. 선수	가. 심판 판정 불복 폭언	출전정지 6개월 이상
	나. 심판에 대한 폭행	출전정지 2년 이상
	다. 부정선수 출전	출전정지 1년 이상
	라. 선수상호간 폭행	
	○ 주동자	출전정지 1년 이상
	○ 가담자	출전정지 6개월 이하
3. 지도자	가. 심판판정 불복(경기지연) 폭언	자격정지 1년 이상
	나. 심판 및 선수 등에 대한 폭행	자격정지 5년 이상
	다. 부정선수를 출전시킨 자	자격정지 3년 이상
	라. 선수지도 감독 소홀에 의한 물의를 야기한 자(교사)	자격정지 1년 이상
	마. 물의 야기를 방조한 자	자격정지 6개월 이하
	바. 경기장 집단폭행 사태 가담행위	
	○ 주동자	출전정지 1년 이상
	○ 가담자	출전정지 6개월 이하
4. 기타 임원 (참가자)	가. 심판 판정 불복(경기지연)폭언	자격정지 1년 이상
	나. 심판 및 선수 등에 대한 폭행	자격정지 5년 이상
	다. 물의 야기를 방조한 자	자격정지 6개월 이하
	라. 경기장 집단폭행 사태 가담행위	
	○ 주동자	무기한 자격정지



	○ 가담자	자격정지 5년 이상
5. 단체(팀)	가. 심판불복 경기방해	출전정지 6개월 이하
	나. 경기장 폭행 난동	출전정지 3년 이상

<별표 3>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제37조제2항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금품 및 향응 수수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4~5배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3~4배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2~3배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1~2배
2. 공금 횡령·유용	공금 횡령·유용액의 3~5배	공금 횡령·유용액의 2~3배	공금 횡령·유용액의 2배	공금 횡령·유용액의 2배
<p>※ 비고</p> <p>① 징계부가금 배수는 정수(整數)를 기준으로 한다.</p> <p>② 징계 등 혐의자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벌금·변상금·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유용액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p> <p>③ 징계 등 혐의자가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야 한다.</p>				

<별지 제1호>

(앞면)

## 공 적 조 서

① 성명	(한자원명)													
② 주민 등록번호 (생년월일)								-	③ 군번 (군인의 경우)					
④ 본적(국적)														
⑤ 주 소														
⑥ 직업					⑦ 소속									
⑧ 직위				⑨ 등급 (직급·계급)					⑩ 근무 기간					
⑪ 공적요지 (50자 내외)				⑫ 공적분야										
⑬ 추천 훈종								⑭ 추천 순위						
조 사 자														
⑮ 소속									⑯ 직위					
⑰ 직급									⑱ 성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									성명 :			관인		

(뒷면)

주요 학력 및 경력			
㉑ 년월일	㉒ 이력	㉓ 년월일	㉔ 이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㉕ 년월일	㉖ 내용	㉗ 년월일	㉘ 내용
㉙) 공적사항			



<별지 제3호>

##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결정서

징계 혐의 자 인 적 사 항	① 소 속	② 직 위 (급)	③ 성 명														
④ 의 결 주 문																	
⑤ 이 유																	
<p>202    년            월            일</p> <p>수원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p> <table style="width: 100%; border: none;"> <tr> <td style="text-align: right; padding-right: 20px;">위 원 장</td> <td style="text-align: right;">인</td> </tr> <tr> <td style="text-align: right; padding-right: 20px;">위 원</td> <td style="text-align: right;">인</td> </tr> <tr> <td style="text-align: right; padding-right: 20px;">위 원</td> <td style="text-align: right;">인</td> </tr> <tr> <td style="text-align: right; padding-right: 20px;">위 원</td> <td style="text-align: right;">인</td> </tr> <tr> <td style="text-align: right; padding-right: 20px;">위 원</td> <td style="text-align: right;">인</td> </tr> <tr> <td style="text-align: right; padding-right: 20px;">위 원</td> <td style="text-align: right;">인</td> </tr> <tr> <td style="text-align: right; padding-right: 20px;">위 원</td> <td style="text-align: right;">인</td> </tr> </table>				위 원 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 의결주문 : 징계 종류, 징계부가금 대상금액 및 부과배수 등 기재

<별지 제4호>

## 징계부가금 감면 결정서

인사	적항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주소			
의주	결문				
이유					
<p>년 월 일</p> <p>수원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p> <p style="text-align: right;">위원장                      ①</p>					

※ 의결주문 : 징계부가금은 0배(0원)에서 0배(0원)으로 감면한다는 형식으로 기재





#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수원시체육회**

# 각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 정 2021. 4. 27.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원시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 규정 제35조에 따라 이사회의 자문기구로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학교체육위원회, 생활체육위원회, 경기력향상위원회, 그 밖에 본회 규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이사회 의결로 설치되는 위원회에 적용한다.

## 제2장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3명 이하
  3. 위원 11명 이상 19명 이하(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 ②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회장이 본회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4조(위원의 위촉 등)** ① 위원은 위원회의 목적과 활동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자로서 회장이 위촉 하되 위원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본회 규정 제30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2.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의 구성 비율은 본회 규정 제35조 제3항을 준용 하여야 한다.
  3. 경기력향상위원회의 경우 회원종목단체의 등록 선수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6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본회 정기총회 개최일을 기준으로 한다.

- 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촉 해제)**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 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제11조의 제척·기피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5. 위원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제8조(회의의 소집 등)** ①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로 본다.

**제10조(긴급한 업무의 처리)**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서면결의로 위원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위원 과반수가 정식으로 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제척 및 기피)**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경비의 지급)** 본회 규정 제38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보수·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 부 칙 <제정 2021. 04.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인사위원회 규정



**수원시체육회**

# 인사위원회 규정

제정 2022. 02. 16.

**제1조(설치근거 및 명칭)** 본 위원회는 본회 사무국 규정 제25조에 의거 설치운영하며,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위원회는 본회 직원에 대한 공정하고도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함으로서 행정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제3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본회 사무국 규정 제33조에 의한 직원에 적용된다.

**제4조(구성)** ① 본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외부위원을 2분의 1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본회 이사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③ 부위원장은 본회 사무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회장이 위촉하되 변호사 1명, 노무사 1명, 조교수 이상 1명이 포함되어야 하며, 사무국에서 추천한다.

⑤ 본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본회 직원 중 경영지원과장이 하되, 특별한 경우 회장이 지명할 수 있다.

⑥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 위촉 후보자에 대하여 직무윤리를 사전에 진담함으로써 위원회의 심의·의결 관정에 이해 당사자가 부당하게 개입할 가능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별지 제1호, 제2호>

**제5조(기능)**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사관리의 기본방침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직원의 채용 및 승진, 직권면직에 관한 사항
3. 직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사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장이 부의한 사항

**제6조(운영)** ①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총괄하며, 위원장 유고시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3.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 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4. 위원회가 심의할 안건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할 때는 이를 서면결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위원회 회의에 출석 하거나 의결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미리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질병, 사고 또는 국외여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 할 수 없을 때
2. 국회, 사법기관 등에 출석하는 등 중요한 공무를 수행하는 때
3.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③ 사무국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위원에게 안건 및 관련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제척)**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관계에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및 법률자문을 한 경우
- ② 전항에 의하여 인사위원회의 그 직무를 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위원은 전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재적위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③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④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7조의 2(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하여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11조에 따른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7조 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위원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제8조(진술권 부여)** 본 위원회는 의안에 관계되는 피대상자로 하여금 서면 또는 구술로서 자기에게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케 할 수 있다. 또한 필요에 따라 증인의 심문할 수 있다.

**제9조(심의)** ① 본 위원회의 의안을 처리함에 있어 필요에 따라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거나 특별한 학식, 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② 본 위원회의 심의안에 대해서는 간사가 의결서를 작성하여 출석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③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 중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 사항은 위원회에 재심의케 할 수 있다.

**제10조(인사위원회 회의록)**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 위원의 서명, 날인을 받아 보관한다.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서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의사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11조(회의의 비공개와 누설금지) 위원회의 회의내용을 요약하여 홈페이지에 공개 하여야한다. 다만, 위원회의 내용이 보호할 가치가 있거나 개인정보 등 침해할 경우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참석자는 발표된 것을 제외하고는 회의내용 및 직무상 취득한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수당) 회의에 참석하는 외부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부 칙 <제정 2021. 04. 27.>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 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관 련 : 「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 시행령 제4조

연번	진 단 내 용	체크사항	
1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기관에 근무하고 있다.	예( )	아니요( )
2	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사업 관련지역에 부동산 또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예( )	아니요( )
3	위원회의 직접적인 심의 대상이 되는 인가·허가·면허·특허 등의 당사자이다.	예( )	아니요( )
4	위원회 기능과 직접 관련된 공사·용역·계약 또는 연구·논문 등을 진행 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예( )	아니요( )
5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소송 등을 진행 중이다.	예( )	아니요( )
6	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타 위원회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	예( )	아니요( )
7	위원회의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의무 관계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예( )	아니요( )

※ “예”라고 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호>

## 서약서

관련 : 「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위원회 지침

직위 : ○○○위원회 위원(장)

성명 : ○ ○ ○

상기 본인은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장)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2.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4.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5.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 할 경우 회피
6.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7.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행위 금지
8.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년            월            일

○ ○ ○ (서명)



# 기간제 근로자 취업규칙



**수원시체육회**

# 기간제 근로자 취업규칙

제 정 2021. 4. 27.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체육회(이하 “체육회” 또는 “사용자”라 칭함)에 근무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기간제근로자) 및 기간의 정함이 없는(무기계약직근로자)(이하 “직원” 또는 “근로자”라 칭함)의 복무, 근로시간, 인사, 양성평등 및 일·가정양립지원, 안전보건, 교육, 징계 및 해고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규정 및 범위)** ① 직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 및 체육회에 적용되는 처무규정 등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규칙은 근로의 내용을 불문하고 체육회에 근로하는 모든 ‘기간제근로자’ 및 ‘무기계약직근로자’에게 적용된다.

③ 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적용한다.

## 제2장 채용 및 근로계약

**제3조(채용기회)** 체육회는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연령, 신앙, 사회적신분, 출신지역, 출신학교, 혼인·임신·연령, 출산 또는 병력(病歷) 등에 의한 차등을 두지 않는다.

**제4조(전형 및 채용서류)** ① 체육회에 입사를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1통
2. 자기소개서 1통
3.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통
4. 응시원서 1통

② 직원은 외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③ 단 경력직, 특수경력직 및 자격소지자 등의 채용 필요한 경우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

④ 남녀의 성 및 기타 관련법령이 정하는 합리적인 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소정의 자격이 요구되는 경우 이를 소지하지 않은 자를 채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근로계약)** ① 체육회는 채용이 확정된 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자에게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내어 준다.

② 체육회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기준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취업규칙의 작성·신고사항)에서 정한 사항을 명확히 제시한다.

③ 체육회는 제2항의 내용 중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확히 제시하여 교부한다. 또한 기간제 근로자인 경우 근로계약기간도 함께 명시한다.

④ 체육회는 근로계약 체결 시 제2항 및 제3항의 사항이 적시된 취업규칙을 제시하거나 교부함으로써 제2항의 명시 및 제3항의 서면명시 및 교부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

### 제3장 복 무

**제6조(복무의무)**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근로자는 맡은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근로자는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고 체육회기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단,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공익신고자'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근로자는 체육회의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상사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근로자는 근로자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체육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근로자는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출근, 결근)** ① 근로자는 업무시간 시작 전까지 출근하여 업무에 임할 준비를 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결근 당일이라도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무단결근을 한 것으로 본다.

**제8조(지각, 조퇴 및 외출)** ① 근로자는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부서의 장 또는 직근 상급자에게 알려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전에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이라도 지체 없이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근로자는 근로시간 중에 사적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 다만,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퇴 또는 외출 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속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근로자가 지각, 조퇴 및 외출한 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공민권행사 및 공의 직무 수행)** ① 체육회는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을 행사하거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그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한다.

② 체육회는 제1항의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출장)** ① 체육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로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체육회는 행선지별 여비, 숙박비, 현지교통비 등 실비에 상당될 수 있는 비용을 지급한다.

## 제4장 인 사

### 제1절 인사위원회

**제11조(인사위원회의 구성)** ①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수원시체육회 인사위원회 규정에 의해 구성한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근로자의 표창에 관한 사항
2. 근로자의 징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근로자의 인사에 관하여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제13조(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제13조의 의결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징계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회의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의결사항이 특정위원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당해위원은 그 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⑦ 위원회의 운영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 제2절 배치·전직 및 승진

**제14조(배치, 전직, 승진)** ① 체육회는 근로자의 능력, 적성, 경력 등을 고려하여 부서의 배치, 전직, 승진 등 인사발령을 하며,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② 체육회는 제1항의 인사발령을 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녀를 차별하지 아니한다.

③ 승진 등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3절 휴직 및 복직

**제15조(휴직)** ① 체육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의 휴직 외에는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

1. 업무 외 질병, 부상, 가사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2. 병역법, 기타 법령에 의해 징집 및 소집되었을 때 : 징집 및 소집기간
3. 연수, 직무 등의 사유로 체육회가 휴직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 :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② 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거주지의 변동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체육회에 즉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6조(육아휴직)** ① 체육회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가진 남녀 근로자가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육아휴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한다. 단,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체육회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으며 특히 육아휴직기간에는 해고하지 아니한다.

④ 체육회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고용보험법령이 정하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제17조(가족돌봄휴직 등)** ① 체육회는 근로자가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2. 연장근로의 제한
3.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의 조정
4. 그 밖에 사업장 사정에 맞는 지원조치

③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체육회는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는 제외한다.

**제18조(복직)** ① 근로자는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복직원을 제출해야 하며, 휴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만료일 7일전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승인을 얻어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체육회는 휴직중인 근로자로부터 복직원을 제출 받은 경우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휴직 전의 직무에 복직시키도록 노력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와 유사한 업무나 동등한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는 직무로 복귀시키도록 노력한다.

**제19조(근속기간의 계산)**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제17조 제1항 제2호의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년수에서 제외한다.

## 제5장 근로조건

### 제1절 근로시간

**제20조(근무형태)** 근무형태는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 근로자대표와 합의하여 교대근무제를 시행할 수 있다.

**제21조(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한다. 다만 직종의 특성상 주 6일을 소정근로일로 정할 수 있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하되, 제23조의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09:00부터 18:00시까지로 한다. 단, 교대근무에 따라 근무시간은 변경 될 수 있다.

③ 18세 미만 근로자의 경우 1일의 근로시간은 7시간 이내로, 1주의 근로시간은 35시간 이내로 한다.

**제22조(휴게)**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중 12:00부터 13:00까지로 한다. 다만, 업무사정에 따라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체육회는 근로자에 대하여 1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한다.

② 체육회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40시간 이상을 근무한 경우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4조(간주근로시간제)** ① 근로자가 출장, 파견 등의 이유로 근로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일 8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근로자가 출장, 파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일 10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근로자의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하여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5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① 연장근로는 1주간 휴일을 포함하여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자의 동의하에 실시할 수 있다. 단, 18세 미만 근로자는 1일 1시간, 1주일에 5시간을 한도로 근로자의 동의하에 실시할 수 있으며,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한도로 근로자의 동의하에 실시할 수 있으며,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는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없다.

② 연장·야간(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8시간 이내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 초과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④ 체육회는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대신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제26조(야간 및 휴일근로의 제한)** ① 18세 이상의 여성 근로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로하게 하거나 휴일에 근로를 시킬 경우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실시한다.

② 임신부와 18세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를 시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실시할 수 있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제27조(근로시간 및 휴게·휴일의 적용제외)**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거나 휴일에 근로하더라도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감시·단속적 업무로서 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취급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야간에 근로한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 제2절 휴일·휴가

**제28조(유급휴일)** ①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일요일을 유급주휴일로 부여한다.  
② 근로자의 날(5월 1일)과 수원시체육회 사무국규정 제30조 창립기념일(6월 24일)을 유급휴일로 한다. 다만, 근로자의 날과 창립기념일에 근로를 한 경우 대체휴무를 줄 수 있다.  
③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은 제11조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9조(연차유급휴가)** ①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②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③ 3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항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제30조(연차휴가의 사용)** ①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체육회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할 수 있다. 체육회의 사용촉진조치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금전으로 보상 하지 아니한다.

**제31조(연차유급휴가의 대체)** 체육회는 연차유급휴가일에 대신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제32조(하계휴가)**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유급으로 하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휴가개시일 3일 전에 부서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경조사 휴가)** ① 체육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유급의 경조사휴가를 부여한다.

1. 본인의 결혼: 5일
  2. 자녀의 결혼: 1일
  3. 배우자의 출산: 10일
  4. 입양 : 20일
  5.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사망: 5일
  6.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사망: 3일
  7.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 3일
  8.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의 사망 : 1일
  9.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 재자매의 배우자 : 1일
  10.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탈상 : 1일
- ② 제1항에 따른 경조사 휴가기간 중 휴일 또는 휴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휴가기간을 계산한다.

**제34조(생리휴가)** 체육회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월 1일의 무급생리휴가를 부여한다.



**제35조(병가)** ① 체육회는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 등으로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간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60일을 초과할 경우 봉급의 30%(휴업수당)를 지급한다. 다만 사용자의 승인으로 병가의 기간 및 유급여부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상해나 질병 등으로 1주 이상 계속 결근 시에는 검진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해 치료를 요하는 경우 그 치료를 요하는 연간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 동안 기본급을 휴업수당(고용노동부 70%, 체육회 30%)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단 6개월을 초과할 경우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

④ 업무상 병가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서 휴업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사용자는 기본급에서 그 지급받은 금액을 뺀 금액의 휴업수당을 지급한다.

**제36조(휴직)**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공무 이외의 질병 또는 상해로 말미암아 병가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였거나 공무로 인한 상해로 병가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였을 때
2. 전염병 감염으로 타 직원의 건강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3.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때
4.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불량할 때
5. 직제와 정원의 조정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감원이 되었을 때
6.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되었을 때

②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항 제1·2호의 경우는 1년 이내로 한다.
  2. 전항 제3호의 경우는 그 복무기간이 끝날 때까지로 한다.
  3. 전항 제4·5호의 경우는 만 6개월로 하고 기간 내에 복직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4. 전항 제6호의 경우는 3개월 이내로 한다.
- ③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에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 제3호 및 공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④ 휴직기간 중의 보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기본급 전액을 지급한다.
  2. 휴직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5할

### 제3절 모성보호

**제37조(임산부의 보호)** ①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준다. 이 경우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 부여한다.

②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해당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휴가를 부여 한다. 다만, 모자보건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인공중절 수술은 제외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근로자의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
2.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근로자의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
3.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근로자의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4.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근로자의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 ④ 체육회는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신청할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가 기간 중에 근로자가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 받은 출산전후휴가 등 급여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체육회는 최초 60일분(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는 75일분)의 급여와 통상임금의 차액을 지급한다.
- ⑥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시키지 아니하며, 요구가 있는 경우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킨다.
- ⑦ 체육회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 ⑧ 체육회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⑨ 체육회는 임신부 등 여성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65조에 따른 도덕상 또는 보건상의 유해·위험한 직종에 근로시키지 아니한다.

**제38조(난임치료휴가)** ① 체육회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체육회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체육회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신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② 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다.

**제40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체육회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남녀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체육회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체육회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⑤ 체육회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경우 고용보험법령이 정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제41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① 체육회는 제40조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40조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육아기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을 포함한다.)은 체육회와 그 근로자 간에 서면으로 정한다.

③ 체육회는 제40조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체육회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제42조(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근로자는 제18조와 제41조에 따라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지 그 총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1. 육아휴직의 1회 사용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3.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1회만 할 수 있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분할 사용(1회만 할 수 있다)
5. 육아휴직의 1회 사용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제43조(육아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아동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제24조의 휴게시간 외에 1일2회 각 30분씩 유급 수유시간을 준다.

## 제6장 임 금

**제44조(임금의 구성항목)** ①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기본급 및 초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으로 구성한다.

② 제26조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야간에 근로한 경우(22:00~06:00),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각각 시간급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되,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제2항의 통상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는 기본급으로 하되, 시간급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제45조(임금의 계산 및 지급방법)** ① 임금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해당 월의 말일 근로자에게 근로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② 신규채용, 승진, 전보, 퇴직 등의 사유로 임금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46조(비상시 지급)**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한다.

1. 근로자 또는 그의 수입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하는 자의 출산, 질병 또는 재해의 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2. 근로자 또는 그의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의 혼인 또는 사망 시 그 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3. 근로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1주일 이상 귀향하는 경우

**제47조(휴업수당)** ① 체육회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의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정한 금액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48조(상여금지급)** ① 체육회는 예산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퇴직자의 경우 상여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계속근로 3개월 미만인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7장 퇴직·해고 등

**제49조(퇴직 및 퇴직일)** ① 체육회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근로자를 퇴직시킬 수 있다.

1. 본인이 퇴직을 원하는 경우
2. 사망하였을 경우
3.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규정 제53조에 따른 정년에 도달하였을 경우
4.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5. 해고가 결정된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퇴직의 퇴직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가 퇴직일자를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되었을 경우 그 날
2. 근로자가 퇴직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 이를 수리한 날. 단, 체육회는 업무의 인수인계를 위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날로부터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퇴직일자를 지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3. 사망한 날
4.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퇴사일은 규정 제53조에 따른다.
5.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날
6. 해고가 결정·통보된 경우 해고일

**제50조(해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고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함)
2. 휴직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휴직기간 만료일 후 7일이 경과할 때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징계위원회에서 해고가 결정된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51조(해고의 제한)**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아니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

②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제52조(해고의 통지)** ① 체육회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통지한다.

② 체육회는 제1항에 따라 해고를 통지하는 경우 해고일로부터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를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입사 후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53조(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정년)** ①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개정 2021. 2. 24.>  
 ② 제1항의 만 연령에 도달한 해의 해당 월 마지막 날을 만료일로 한다. <개정 2021. 2. 24.>

**제54조(차별금지)** 퇴직·해고·정년에서 남녀를 차별하지 않는다.

## 제8장 퇴직급여

**제55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등)** ① 체육회는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② 체육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제1항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대신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제56조(중간정산)** 체육회는 주택구입 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 제8장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57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① 직장 내 괴롭힘이란 임·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② 직원은 다른 직원 뿐 아니라 협력사 직원에 대하여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8조(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체육회에서 금지되는 구체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지속 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3.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5.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7.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8.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9.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10. 그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제59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① 체육회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1시간으로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2.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3. 직장 내 괴롭힘 상담절차
4.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
5.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6.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7. 그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④ 체육회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주요 내용을 직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60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체육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체육회는 전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③ 체육회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별도로 정한다.

## 제10장 표창 및 징계

**제61조(표창)** ① 체육회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표창할 수 있다.

1. 체육회의 업무능률향상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된 자
2. 체육회의 활동에 크게 기여한 자
3. 업무수행 성적이 우수한 자
4. 기타 표창의 필요가 인정되는 자

② 표창 대상자 및 표창의 방법은 인사위원회를 거쳐 결정한다.

**제62조(징계)** 체육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부정 및 허위 등의 방법으로 채용된 자
2. 업무상 비밀 및 기밀을 누설하여 체육회에 피해를 입힌 자
3. 체육회의 명예 또는 신용에 손상을 입힌 자
4. 체육회의 영업을 방해하는 언행을 한 자
5. 체육회의 규율과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겨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6. 정당한 이유 없이 체육회의 물품 및 금품을 반출한 자
7.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자
8. 체육회가 정한 복무규정을 위반한 자
9.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자
10.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자
11.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제63조(징계의 종류)**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견책 : 징계사유 발생 자에 대하여 시말서를 받고 문서로 견책한다.
2. 감봉(감급) : 1회에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총액은 월 급여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금액을 감액한다.
3. 정직 : 중대 징계사유 발생 자에 대하여 3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에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 해고 :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제64조(징계심의)**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 7일 전까지 인사위원회의 위원들에게는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징계대상 근로자에게는 서면으로 별지2의 출석통지를 각 통보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조사한 서류와 입증자료 및 당사자의 진술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 공정하게 심의한다. 이 경우, 징계대상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을 하였을 때는 별지2 하단의 진술권포기서 또는 별지3의 서면진술서를 징구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③ 인사위원회의 위원이 징계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을 때에는 그 위원은 그 징계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인사위원회는 의결 전에 해당근로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

⑤ 인사위원회는 징계 대상자가 2회에 걸쳐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명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소명을 포기 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소명 없이 징계의결 할 수 있다.

⑥ 간사는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한다.

**제65조(징계결과 통보)** 징계결과통보는 해당 근로자에게 별지5의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에 의한다.

**제66조(재심절차)** ①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는 징계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징계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재심을 요청받은 경우 징계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재심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제62조 및 제63조를 준용한다.

## 제11장 교육 및 성희롱의 예방

**제67조(직무교육)** ① 체육회는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무교육을 시킬 수 있으며 근로자는 교육과정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직무교육과 제66조에 의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근무시간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교육을 받는 시간은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근로자와 합의로 근무시간 외에 직무교육을 받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처우에 관하여는 교육의 장소, 일정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한다.

③ 체육회는 교육에 있어 남녀를 차별하지 않는다.

**제68조(성희롱의 예방)** ① 체육회는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1년에 1회 이상 성희롱 관련 법령의 요지, 성희롱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방침, 성희롱 피해자의 권리구제 방법과 가해자의 조치 등을 내용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한다.

② 체육회의 모든 임원 및 근로자는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③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 물의를 일으킨 임·직원에 대하여는 해고 등의 징계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성희롱 피해자와 같은 장소에 근무하지 않도록 인사이동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④ 체육회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을 해결을 위하여 별도의 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충처리위원은 남녀 동수로 구성하고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69조(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① 체육회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다.

② 1항에 따른 교육은 매년 1회, 1시간 이상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장애인의 인권,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내용으로 실시하며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전항의 교육은 직원연수·조회·회의 등의 집합교육,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또는 체험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한다.

④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2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을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보급한 교육자료 등을 배포·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2장 안전보건

**제70조(안전보건관리규정)** ① 체육회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갖춰 두고, 이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작업장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5.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② 각 부서는 체육회의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라 각 작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71조(안전보건 교육)** 체육회는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기교육, 채용 시의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유해위험 작업에 사용 시 특별안전 교육 등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제반 교육을 실시하며 근로자는 이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제72조(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 체육회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거나 동력을 작동하는 기계·기구에 대하여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방호조치를 해체하고자 할 경우 소속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 해체할 것
2. 방호조치를 해체한 후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없이 원상으로 회복시킬 것
3. 방호장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부서의 장에게 신고할 것

**제73조(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체육회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작업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작업시 체육회에서 지급하는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7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체육회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에 대하여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취급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



어야 한다.

**제75조(작업환경측정)** ① 체육회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되, 원칙적으로 매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② 제1항의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 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근로자 대표를 입회시킨다.

③ 체육회는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려주며 그 결과에 따라 당해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건강진단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제76조(건강진단)** ① 체육회는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다. 단, 사무직은 매2년에 1회 실시한다.

② 체육회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 특수·배치전·수시·임시건강진단 등을 실시한다.

③ 근로자는 체육회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성실히 받아야 한다.

**제77조(산업안전보건법 준수)** ① 체육회는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킨다

②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사항과 그 외에 업무에 관련되는 안전보건에 관하여 상사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정확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제13장 재해보상

**제78조(재해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와 사망하였을 때의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다.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회가 보상한다.

### 제14장 취업규칙

**제79조(취업규칙의 비치)** 체육회는 본 규칙을 사업장 내의 사무실·휴게실 등에 비치하여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80조(취업규칙의 변경)** 이 규칙을 변경할 때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칙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날 부터 시행한다.

# 취업규칙 별지서식

---

# 근로계약서

수원시체육회장(이하“사용자”라 한다)과 000(이하“근로자”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 1. 근로자의 인적사항

성명	성별	연령	생년월일	최초계약일
000	남/여	만00세	00.00.00.	2019. 07. 08.
주소		전화번호(핸드폰)		비고
수원시 00구 000로		010-0000-0000		

## 2. 근로계약기간

- 근로기간 : 20  년 00월 00일 ~ 20  년 00월 00일까지 한다.
-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근로자”가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가 발생하여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신원·경력·학력 등을 확인한 결과, 서류 전형 시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근로자”가 형사상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 금치산·한정치산 선고 또는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 “근로자”가 해고의 징계를 받은 경우
  - 주기적 평가결과에 따라 당해 직무수행 부적격자로 판단되는 경우
  - 직제와 정원의 개폐 등에 의하여 감원이 불가피한 경우

## 3.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 근무장소(부서) : 0000센터
- 업무내용 : 0000
- “사용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담당업무와 근무지를 변경할 수 있다.

## 4. 근로시간

-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준수하고 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 초과수당 및 대체휴무를 지급한다.

- 표준근로시간

오전 : 06:00 ~ 15:00(휴게시간 09:00~10:00)

정시 : 09:00 ~ 18:00(휴게시간 12:00~13:00)

오후 : 13:00 ~ 22:00(휴게시간 18:00~19:00)

※ 시설별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무시간을 명확히 명시한다.

## 5. 임금

○ 임금은 월 0원으로 한다.

○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주당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급휴일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6. 임금지급일 및 지급방법

○ 임금 산정 기간은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하고, 임금지급일은 매월 30일(2월은 28일)로 한다.

○ 임금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로 한다.

○ 임금은 “근로자”의 예금계좌에 온라인 입금한다.

## 7. 휴가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 “근로자”가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예비군·민방위 훈련 소집, 업무관련 국가기관 소환 등으로 근무할 수 없는 때에는 사전에 “사용자”에게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공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 “근로자”의 특별휴가는 수원시체육회 처무규정 제20조를 준용하여 부여할 수 있다.

## 8. 임금에서의 원천공제

○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 지급 시 사용자종근로소득세, 사회보험료 등 법령이 정한 제세공과금을 원천공제 하여야 한다.

## 9. 고지의무

○ “근로자”는 본인의 주소, 연락처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7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근로자”는 “근로자”의 사정으로 계속 근무할 수 없는 때에는 퇴직일 20일 전까지 “사용자”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 10. 비밀엄수의 의무

- “근로자”는 채용기간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 11. 퇴직금

-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받는다.

#### 12. 겸직금지

- “근로자”는 직무와 관련된 영리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13. 준칙규정

- 본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수원시체육회 취업규칙」을 따른다.
-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근로조건이 변경이 있는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는 변경된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 14. 기타사항

- 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00월 00일

대 표 자 : 박광국(135-82-02877)

(근로자) 수원시 00구 00로 00  
성 명 : 000(000000-1)

## 근로자 각서

주 소 : 수원시 00구 00로 00

생 년 월 일 : 000000-1

성 명 : 000

상기 본인은 수원시체육회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함을 동의하며 채용 후 제반규정 및 규칙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속하고 위반 시 이의 없이 사직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00. 00.

수원시체육회장 귀하

[별지 2]

## 출 석 통 지 서

인 적 사 항	① 성명	한글		② 소 속	
		한자		③ 직위(급)	
	④ 주소				
⑤ 출석이유					
⑥ 출석일시		년 월 일 시 분			
⑦ 출석장소					
유의사항		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할 것. 2.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할 것.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처리 한다.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div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            인사위원회위원장 (직인)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귀 하         </div>					

-----절 취 선-----

## 진 술 권 포 기 서

인 적 사 항	① 성명	한 글		② 소 속	
		한 자		③ 직위(급)	
	④ 주소				
본인은 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3]

## 서 면 진 술 서

소 속		직위(급)	
성 명		제출기일	년 월 일
사 건 명			
불 참 사 유			
<p>진 술 내 용</p> <p style="text-align: center;">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서면으로 진술하오며 만약 위 진술내용이 사실과 상이한 경우에는 여하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성 명 (인)</p> <p>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p>			

[별지 4]

## 징 계 의 결 서

	소 속	직 급	성 명
인 적 사 항			
의 결 주 문			
이 유			
년 월 일 인사위원회			
		위 원 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간 사	(인)

※ 징계이유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규정을 기재한다.

[별지 5]

<u>징계 처분 사유 설명서</u>		
① 소 속	② 직 위(급)	③ 성 명
④ 주 문		
⑤ 이 유	별첨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처분권자 (처분제청권자)		(직인)
귀 하		
<p>참 고 : 이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 제63조에 의하여 이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p>		

[별지 6]

## 근로조건 변경 합의서

총칙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근로조건 변경에 대하여 합의합니다.

변경사항

당 초	변 경	사 유

적용기간 :

근로계약의 변경 간주

근로조건 변경에 대한 본 합의로 기 체결된 근로계약의 내용 또한 변경된 것으로 간주 함

년 월 일

근로자 : (인)

사용자 : (인)

[별지 7]

## 사 직 원

하기 본인은 아래와 같이 퇴직코자 하오니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직 책	
입사일	
퇴직희망일	
퇴직사유	
업무인수인계	
비품반납 등	

년 월 일

수원시 체육회장 귀하

귀하의 퇴직의 청약을 승낙하고 이를 수리합니다.

년 월 일

수원시 체육회 회장 박 광 국 (인)

귀하





# 성희롱 · 성폭력 예방규정



**수원시체육회**



# 성희롱·성폭력 예방 규정

제 정 2021. 04. 2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수원시체육회장과 소속 구성원(수원시체육회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으로 한다.

② 이 내규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 게도 적용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기관 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회장의 책무)** ① 회장은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2. 체육인 인권침해 신고 상담센터의 설치·운영
3.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
4.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5. 성희롱·성폭력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6. 소속구성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홍보
7.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
8.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체육인 인권침해 신고상담 센터)** ①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처리를 위하여 성희롱 예방 담당부서(경영지원팀)에 체육인 인권침해 신고 센터를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체육인 인권침해 신고센터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2인 이상 지정하여야 하며, 남성 및 여성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③ 체육인 인권침해 신고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성폭력 피해에 대한 상담·조언 및 고충의 접수
2.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3.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4. 성희롱·성폭력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5.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 업무

④ 체육인 인권침해 신고센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사이버신고센터)** ① 회장은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모바일에서 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사이버신고센터 등 운영을 조직 구성원들에게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제7조(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① 성희롱 예방 담당부서는 고충상담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교육수강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신규로 임명된 고충상담원은 성희롱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임명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수하여야 하며 전문교육 후 2년이 지나면 재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고충상담원이 고충처리 업무를 행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④ 제5조제3항의 체육인 인권침해 신고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⑤ 성희롱·성폭력 상담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체육인 인권침해 신고센터 업무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예방교육)** ① 성희롱 예방 담당부서장은 매년 연초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령 및 지침
2.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 기준
3.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4. 성희롱·성폭력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6. 기타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신규임용 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회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효과 제고를 위하여 1년에 1회 관리자 대상 별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성희롱 예방 담당부서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내용을 구성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나 인터넷 사이트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구성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9조(고충상담 신청)** ①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소속구성원은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체육인 인권침해 신고센터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원은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신청 등 처리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고충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는 경우에는 수원시 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함)에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인권센터 소속 시민인권보호관(이하 '인권보호관'이라 한다)는 조사를 개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안에서 조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 방법 및 절차는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제 20조 및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7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 회장은 피해자 등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회장(인사·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회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피해자등,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조사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파면, 해임,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지하는 행위
7. 그 밖에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③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치료 지원, 행위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학습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④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 인권보호관은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3조(상급기관의 관리·감독 강화)** ① 성희롱·성폭력 행위자가 체육회의 기관장이거나 5급에 있는 자인 경우에는 이 지침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수원시인권센터로 성희롱·성폭력 고충에 대한 조사를 이관하고, 이후의 조치도 수원시인권센터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한다.

② 제2항에 따라 조사를 이관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고 체육회에서는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4조(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처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수원시 직장운동경기부 단원은 “수원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⑤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 성희롱·성폭력 방지 관련 전문가들로 위촉한다.

⑥ 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고충상담원으로 한다.

⑦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위원회를 반드시 경유하며, 예외적이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한다.

⑧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제척)**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관계에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및 법률자문을 한 경우

② 전항에 의하여 고충심의위원회의 그 직무를 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위원은 전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재적위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6조(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2조의 2 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제1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위원 중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고인은 특정위원을 기피신청할 수 있고, 해당 위원은 회피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인권보호관 결정사항 이행 여부
2. 2차피해 예방조치 적정 여부
3. 피해자 보호 및 사건 예방을 위한 정책방향 결정
4.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 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회장에게 보고 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사건의 종결)**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사건을 종결한다.

1. 제11조제1항의 조사 또는 제13조제3항의 심의 결과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2. 제13조제3항의 심의 결과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

**제19조(징계)** ① 회장은 제14조제1호에 해당하는 성희롱·성폭력의 경우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른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근로권, 학습권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④ 조사 중인 성희롱·성폭력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재발방지조치 등)** ①회장은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한다.

② 회장은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성희롱·성폭력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행위자는 재발방지 교육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조사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 장관과 수원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권한의 위임)** 회장은 이 내규에서 정한 권한의 일부를 사무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부 칙 <제정 2021. 4. 27.>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신청인		고충내용	처리결과	회신 일자	확 인	
		성명	소속부서				담당자	담당부서장

<별지 제2호>

성희롱 · 성폭력 조사 신청서					
접수일	20 . . .		담당자	(서명)	
당사자	신청인	성명		소속	
		직급		성별	
	대리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성명		소속	
		직급		성별	
	행위자	성명		소속	
		직급		성별	
신청 내용	※ 6하원칙에 의해 문제가 되는 행위, 지속성의 여부,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을 기록합니다.				
요구사항	1. 성희롱의 중지(    )		2. 공개사과(    )		
	3. 징계 등 인사조치(    )		4. 기타(    )		
처리결과					
※ 관련 자료를 첨부한다.					



# 정보공개 업무처리 규정



**수원시체육회**

# 정보공개업무처리 규정(안)

제 정 2021. 04. 27.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수원시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가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시민의 공개 청구 및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본회 행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행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라 함은 본회가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 원칙)** 본회가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규정에 정해진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2장 정보공개청구권자와 의무

**제5조(정보공개청구권자)** ① 모든 시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6조(의무)** ① 본회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시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한다.

② 본회는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시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본회장이 정하는 정보



② 본회는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도 시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① 본회가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 중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을 비치 및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장소를 확보하고 공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제3장 정보공개절차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 본회가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비공개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정보공개 청구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1조(정보공개여부의 결정)** ① 본회는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을 한 공공기관은 지체 없이 소관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①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내지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본회 임·직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④ 심의회 위원장은 본회 수석부회장이 된다.

**제13조(정보공개여부결정의 통지)** ① 제11조에 의하여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당해 정보의 원본이 오손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④ 제11조에 의하여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4조(부분공개)** 공개청구한 정보가 비공개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정보의 전자적 공개)** ①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당해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 한 그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16조(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하여는 제11조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1. 법령 등에 의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2. 일반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3.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
4. 그 밖에 본회장이 정하는 정보

**제17조(비용부담)**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 제4장 불복구제 절차

**제18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본회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본회로부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본회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본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 전자문서 또는 유선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본회는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제2항에 의한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행정심판)**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본회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내용에 관하여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20조(행정소송)**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본회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소송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21조(제3자의 비공개요청 등)** ① 제11조 제3항에 의하여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본회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본회가 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공개결정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명시하여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당해 본회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본회는 제2항에 의한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의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 제5장 기 타

**제22조(기타사항)** 이 규정에 규정하지 아니한 정보공개업무처리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부 칙 <제정 2021. 4. 27.>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회장선거 관리 규정



**수원시체육회**

# 회장선거 관리규정

제 정 2022. 12. 30.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원시체육회 정관 제24조에 따라 본회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이하 “회장선거”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회장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령, 경기도체육회 시·군체육회 규정 또는 본회 정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이 규정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3조(선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수원시체육회는 수원시체육회장 선거에 따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회장 임기 만료일 전 80일까지 선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인 수의 결정 및 배정
2. 선거인 후보자 명부의 작성
3. 선거인명부의 작성
4. 선거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5. 선거운동 방법 등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 결정
6. 회장선거와 관련한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7. 선거 또는 당선 효력 등의 이의제기에 관한 심의 및 결정
8. 회장선거 후보자 정책토론회 개최여부 결정
9. 정관 제24조 제10항에 따른 국제관계 업무 시의 활동계획이 회장선거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
10. 그 밖에 선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설치된 날부터 선거일 후 60일까지 존속하되, 필요시 이사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존속 중에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 위원회 존속기간은 그 선거일 후 60일까지로 연장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수원시체육회와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이 때 “수원시체육회와 관계”된 사람은 대한체육회(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포함), 시·도종목단체(시·군·구 종목단체 포함) 및 시·군·구체육회(읍·면·동체육회 포함)의 임직원, 각종 위원회 위원을 말한다.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1. 수원시체육회 및 수원시체육회 회원단체의 대의원, 임직원
  2. 제9조에 따라 선거인 후보자를 추천하는 단체의 대의원, 임·직원
  3. 정당의 당원
- ③ 위원회의 위원은 수원시체육회체육회에 비당원확인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하되, 위원장은 수원시체육회와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 중 호선하여 정한다.
- ⑤ 회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촉한다.
  1. 사임의사를 표명한 경우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친족(민법 제777조의 친족을 말한다)이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4. 회장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경우
- ⑥ 위원회의 위원 재적수가 7명 미만이 될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위원을 보선하여야 한다.
- ⑦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회장이 수원시체육회의 직원 중에서 정한다.

-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 간사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위원회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유포해서는 아니 된다.
    2. 위원회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 ④ 위원회는 그 존속기간이 종료한 때에는 작성·보유한 모든 서류를 수원시체육회로 인계하여야 한다.

- 제6조(선거관리 위탁신청)** ① 수원시체육회는 회장 임기만료일 전 180일까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에 서면으로 선거관리 위탁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수원시체육회는 제1항의 위탁신청 기한을 확정할 수 있도록 정관 제29조 제6항에 따른 회장 임기만료일의 기준이 되는 정기총회 일을 정하여야 한다.

- 제7조(선거기간)** ① 회장선거의 선거기간은 10일로 한다.
- ② “선거기간”이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한다.

**제8조(선거일)** ①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는 현 회장의 임기만료일 전 30일까지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는 그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이 때 “그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에 의한 경우에는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
2. 수원시체육회장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③ 선거일은 수원시체육회와 선관위가 협의하여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선거일을 변경하거나 연기할 수 있다. 다만, 선거인명부 작성 개시일 전일까지는 선거일을 확정하여야 한다.

④ 수원시체육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선거일을 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수원시체육회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 제2장 선거인 명부의 작성

**제9조(선거인)** ① 정관 제24조 제1항에 따른 회장선출기구는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정관 제11조제1항에 따른 대의원
2. 수원시체육회의 정회원단체 대의원 중 추천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

② 선거인은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은 선거권을 가진다.

1. 만 18세 이상이어야 함
2. 정관 제11조 제1항의 대의원이거나 수원시체육회 정회원단체의 대의원인 사람

③ 관리단체로 지정된 수원시체육회의 정회원단체는 제2항의 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④ 제2항 제2호에 따른 대의원이 단체의 장인 경우 사고 또는 회장선거 이외의 선거의 출마로 인해 직무대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도 선거인이 된다. 다만, 단체장이 궐위되어 직무대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직무대행자가 선거인이 된다.

⑤ 후보자, 수원시체육회의 상임 임원 및 직원, 위원회의 위원은 선거인이 될 수 없다.

**제10조(선거인수의 결정 및 배정)**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인구 수 기준에 따라 선거인 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인구 5만명 미만인 시·군·구 : 선거인수 최소 50명 이상
2. 인구 5만명 이상 10만명 미만인 시·군·구 : 선거인수 최소 100명 이상
3. 인구 10만명 이상 30만명 미만인 시·군·구 : 선거인수 최소 150명 이상
4. 인구 30만명 이상 200만명 미만인 시·군·구 : 선거인수 최소 200명 이상

② 제1항에 의한 선거인수를 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람은 선거인이 된다.
2.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종목단체(정회원) 및 동체육회에 1명 이상의 선거인수를 배정한다.

③ 수원시체육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1항부터 제2항에 따른 선거인수 결정 및 배정기

준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기도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1. 전체 대의원 수가 선거인 구성기준 수보다 적을 경우
  2. 제9조에 따른 선거권자 전체를 선거인으로 하는 경우
- ④ 제1항의 인구수는 통계청 및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자료로 하고, 선거일 전 60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의 자료를 활용한다.

**제11조(선거인 후보자의 추천)** ① 위원회는 선거일 전 35일까지 종목단체 및 동체육회에 제10조에 따른 각 단체별 선거인수를 통보하고, 선거일 전 25일까지 제9조의 대의원 명단과 각 대의원의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② 수원시체육회의 정회원단체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각 단체별로 선거일 전 25일까지 제9조의 대의원 명단과 각 대의원의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를 공문으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회원단체는 제2항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선거인 후보자 추천 명단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2조(선거인 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위원회는 수원시체육회의 정회원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선거인 후보자에 대하여 중복여부 및 제9조에 따른 선거인 자격 유무를 확인하여 선거인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동일인이 두 개 이상의 단체에 의하여 추천된 경우 해당 선거인 후보자의 의사에 따라 어느 단체의 선거인 후보자가 되는지를 결정하며, 동일인을 추천한 다른 단체에는 재 추천을 요청하지 않는다. 다만, 선거인명부 작성일 전일까지 당사자의 의사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이를 결정한다.

③ 선거인 자격이 없는 사람이 선거인 후보자로 추천된 경우에는 재 추천 요청 없이 배제하여야 한다.

**제13조(선거인명부의 작성)** ① 위원회는 선거일 전 15일부터 3일간 추천 받은 선거인 후보자 중에서 제10조에 따라 수원시체육회의 정회원단체에 배정되었던 선거인수를 기준으로 무작위 추첨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선거인명부는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종료일 다음날에 확정하여야 한다.

②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은 다른 선거인으로 교체할 수 없다.

③ 위원회는 확정된 선거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선거인명부의 열람 등)** ① 위원회가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때와 확정된 때에는 즉시 그 등본(전산자료 복사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1통씩을 선관위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2일간 선거인명부의 열람기간을 두어, 선거인이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③ 선거인명부는 열람 기간 종료일 다음날 확정한다.

④ 후보자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선거기간 개시일의 오전 9시부터 선거인명부 사본의 교부를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즉시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는 선거인이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동의한 범위 안에서 선거인의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 주소(이하 '선거운동용 정보자료'라 한다.)를 선거인명부 교부 시 함께 교부할 수 있다.
- ⑥ 후보자는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교부받은 선거인명부 사본 및 선거운동용 정보자료를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다루어야 한다.
  - 1. 다른 사람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 2. 선거운동 목적 이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3. 선거일 이후 즉시 파기해야 한다.
- ⑦ 제6항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위원회는 제33조에 따라 위반행위자에 대해 제재할 수 있다.

### 제3장 후보자의 자격 및 등록

**제16조(후보자의 자격)** ①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장선거 후보자가 될 수 없다.

- 1. 수원시체육회 정관 제3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 2. 국민체육진흥법 제43조의2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 3. 국회의원
- ② 체육단체(“체육단체”란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의 회원단체, 시·도체육회의 회원단체 및 그 회원단체를 말한다. 이하에서 이와 같다.)의 회장을 포함한 비상임 임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의 임기 만료일 전 90일까지 후보자 등록의사를 수원시체육회의 사무국에 서면(별지 제4호 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체육단체의 회장이 제2항에 따라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제출한 때부터 선거일까지 체육단체의 정관에 따라 체육단체의 부회장(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자는 제외한다)이 직무를 대행하되, 체육단체의 부회장 전원이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사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를 제출한 체육단체의 회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 그 다음날부터 종전의 직무로 복귀한다.
- 1. 제2항의 후보자 등록의사를 수원시체육회에 서면으로 철회한 경우
  - 2. 후보자 등록 마감일까지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3. 후보자 등록 이후 후보자에서 사퇴한 경우
-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를 제출한 체육단체의 회장은 다음 각 호의 국제관계 업무에 한해 체육단체를 대표할 수 있다.
- 1. 국외에서 개최되는 체육 관련 행사·대회·회의 및 교섭 등
  - 2. 국제올림픽위원회, 아시아올림픽평의회,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가 주최하거나 주무부처와 합의한 국

내개최 국제행사(대회, 회의를 포함한다)

- ⑥ 제2항에 따라 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단체의 비상임 임원은 제출한 때부터 선거일까지(다만, 철회하거나 사퇴할 경우에는 그 날까지로 한다.) 회장선거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⑦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수원시체육회 또는 체육단체의 상임 임원 및 직원은 회장의 임기만료일 전 90일 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 ⑧ 수원시체육회는 제2항에 따라 체육단체 비상임 임원의 등록의사 표명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한 사람의 소속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⑨ 수원시체육회는 제8조 제4항에 따라 선거일을 공고할 때 후보자 등록 자격 및 요건을 함께 게시하여야 한다.

**제17조(기탁금)** ①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등록신청 시에 2천만 원<sup>1)</sup>의 기탁금을 선관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기탁금의 납부는 선관위가 기탁금의 예치를 위하여 개설한 금융기관(우체국을 포함한다)의 예금계좌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의 명의로 입금하고 해당 금융기관이 발행한 입금표를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18조(후보자 등록)** ①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2일부터 2일 동안 선관위에 서면으로 후보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등록신청서의 접수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1.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후보자 등록신청서
  - 2.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 가. 가족관계증명서(생년월일 포함)
    - 나.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 다. 정관 제30조 제1항의 단체에 소속된 경력이 있는 후보자의 경우, 소속한 경력이 있는 단체가 발행한 후보자의 징계사실 유무에 관한 확인서(별지 제5호서식)
    - 라. 정관 제24조 제6항 및 이 규정 제16조제2항의 후보자 등록의사 또는 정관 제24조 제7항 및 이 규정 제16조 제7항의 사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체육단체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경우에 한함)
  - 3. 체육단체에 소속된 경력이 없는 후보자의 경우, 체육단체 소속 경력 부존재 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
  - 4.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임원결격사유의 부존재 확인을 위한 본인 서약서
  - 5. 제17조에 따른 기탁금 또는 기탁금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6.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7. 기타 관리상 필요한 서류로서 선관위가 정하는 서류
- ③ 후보자 등록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1) 수원시체육회에서 자율 결정하여 금액 변동 가능. 2천만 원의 내외 금액으로 권장

등록이 무효가 된다.

1.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2. 제2항 제1호, 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 ④ 후보자가 사퇴하려는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제4장 선거운동과 금지행위 등

**제19조(선거운동의 정의)**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제20조(선거운동 기간)**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한정한다. 다만, 제26조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일에 자신의 소견을 발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선거운동의 주체 및 방법)** 후보자가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22조(어깨띠·윗옷)**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나 윗옷(上衣)을 착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제23조(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화를 이용하여 송화자·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법
2. 문자(사진·음성·화상·동영상 등을 포함한다)를 전송하는 방법

**제24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①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 수원시체육회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방법
2.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을 전송하는 방법

② 선관위는 이 규정에 위반하는 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된 때에는 그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자·운영자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항 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자·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보가 삭제된 경우 해당 정보를 게시한 사람은 그 정보가 삭제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선관위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선관위가 제2항에 따라 규정에 위반되는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한다.

1. 규정에 위반되는 정보가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의 주소
2. 규정에 위반되는 정보의 내용
3. 요청근거 및 요청내용
4. 요청사항의 이행기간
5. 불응시 조치사항

⑤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선관위는 이의신청서에 기재사항이나 서명 또는 날인이 누락되었거나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이의신청인에게 보정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선관위는 이의신청이 제3항의 이의신청기간을 지난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을 각하한다.

⑦ 선관위는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자·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제2항의 요청을 철회하고 이의신청인에게 그 처리결과를,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의신청인에게 그 뜻을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경기 및 훈련시간 제외)에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의 선거운동을 위한 명함을 선거인에게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제26조(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 ① 선관위에서 위촉한 투표관리관 및 투표관리관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투표관리관등'이라 한다)은 선거일에 투표를 개시하기 전에 선거 개최 장소(이하 이 조에서 '투표소'라 한다)에서 선거인에게 기호 순에 따라 각 후보자를 소개하고 후보자로 하여금 자신의 소견을 발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표시간은 후보자마다 10분의 범위에서 동일하게 배정하여야 한다.

② 후보자가 자신의 소견발표 순서가 될 때까지 투표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견발표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투표관리관등은 후보자가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 등을 비방하는 발언을 하는 때에는 이의 중지를 명하여야 하고 후보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소견발표를 중지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투표관리관등은 투표소에서 후보자가 소견을 발표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투표소 밖으로 퇴장시킬 수 있다.

⑤ 선관위는 소견발표 개시시간·장소 및 발표시간을 정한 후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할 때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일이나 투표소가 변경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소견발표 일시 또는 장소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고 후보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⑥ 위원회와 선관위는 선거일 전일까지 후보자 소견발표에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 ⑦ 투표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후보자를 소개할 사람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원시체육회의 임직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공정한 사람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또한, 후보자를 소개할 때에는 해당 후보자의 소견발표 순서에 그 기호, 성명 및 경력을 소개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경력은 해당 후보자의 후보자등록신청서에 기재된 경력에 따른다.
- ⑧ 후보자가 소견발표를 하는 장소에는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시설물·인쇄물, 그 밖의 선전물을 설치·게시 또는 첩부할 수 없다.

**제27조(기부행위)** 이 규정에서 “기부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을 대상으로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 1. 제9조에 따른 선거권자나 그 가족(선거인의 배우자, 선거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 선거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 2. 제9조에 따른 선거권자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

**제28조(기부행위제한)** ①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 ②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해당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 ③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선거에 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다.
- ④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제29조(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 1. 직무상의 행위
  - 가. 기관·단체·시설(나목에 따른 수원시체육회를 제외한다)이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금전·물품을 그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포상을 포함하되, 화환·화분을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 나. 해당 수원시체육회가 해당 법령이나 정관·규정 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물품을 그 수원시체육회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 다. 물품구매·공사·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 외에 법령에 근거하여 물품 등을 찬조·출연 또는 제공하는 행위
- 2. 의례적 행위
  - 가.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에 따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친족"이라 한다)의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나. 친족 외의 사람의 관혼상제의식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축의·부의금품(화환·화분을 제외한다)을 제공하거나 주례를 서는 행위

다.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참석한 하객이나 조객 등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음식물 또는 답례품을 제공하는 행위

라. 소속 기관·단체·시설(수원시체육회는 제외한다)의 유급 사무직원이나 친족에게 연말·설 또는 추석에 의례적인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마. 친목회·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각종 사교·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그 단체의 정관 등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바.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성당·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물품의 제공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3.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구호적·자선적 행위에 준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라 통상적인 범위에서 1명에게 제공할 수 있는 축의·부의금품(1인당 5만원 이내), 음식물(3만원 이내), 답례품(1만원 이내) 및 의례적인 선물(3만원 이내)의 금액범위로 한다.

**제30조(기부행위제한기간)**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기간(이하 "기부행위제한기간"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2. 정관·규정 등에 따른 재선거, 보궐선거: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제31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등)** 수원시체육회의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2.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3.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제32조(금지행위 등)**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회장으로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 및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자나 후보자에게 제1호에 따른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제1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받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의 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단, 공개된 체육단체 사무실을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회장선거와 관련하여 연설과 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된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제33조(제재조치)** ① 위원회는 회장선거에 관하여 「위탁선거법」 및 동법 시행규칙 또는 정관 및 이 규정의 준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반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재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중지·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 등록무효, 당선무효 및 선거무효

나. 선거권 박탈(선거인에 한한다)

다. 수원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인사위원회 또는 위반행위자의 소속단체에게 징계 요청(추후 수원시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 시·도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군·구체육회의 선수·지도자·심판·동호인으로서의 등록 제한 및 임직원으로서의 채용·활동 제한을 포함한다)

마. 관할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

바. 같은 호 각 목의 제재는 병과 할 수 있다.

2. 제1호 이외의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가.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중지 요청 또는 경고, 시정명령(1차에 한한다)

나. 선거인에게 위반사실 및 제재내용 공지

다. 선거일 각 투표소에 위반사실 및 제재내용 게시

라. 같은 호 각 목의 제재는 병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의 의결정족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2. 제1항 제1호 라목부터 마목까지 및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③ 선관위가 선거 위반행위자를 위원회 또는 수원시체육회에 통보할 경우, 위원회 또는 수원시체육회는 규정에 따라 제재하고 그 결과를 선관위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장 투·개표 및 당선인 결정 등

**제34조(선거방법 등)** ① 선거는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한다.

② 투표는 선거인이 직접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투표는 선거인 1명마다 1표로 한다.

**제35조(투표용지)** ①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표시하되, 기호는 후보자의 게재순위에 따라 “1, 2, 3” 등으로 표시하고, 성명은 한글로 적어야 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한자를 함께 적는다.

**제36조(투표시간)** 투표시간은 위원회와 선관위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37조(기탁금의 처리)** 수원시체육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해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후보자의 기탁금 전액을 반환하고, 반환하지 않은 기탁금은 수원시체육회에 귀속한다.

1. 당선인이 된 경우
2. 후보자가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득표한 경우
3. 후보자가 사망한 경우

**제38조(당선인 결정)** ① 유효투표 중 다수의 득표를 한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다수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 후보자가 1명인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39조(회장 당선인 공고)** 수원시체육회는 회장 당선인이 결정되면 지체 없이 별지 제9호 서식에 의거 회장 당선인을 수원시체육회 홈페이지 또는 주 사무소 건물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0조(선거 또는 당선 효력 이의제기)** ① 선거 또는 당선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는 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다만, 선거 사무의 관리집행 상의 하자 또는 투표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는 선관위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본문에 따른 이의제기는 후보자 및 선거인에 한해 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발생한 날(투표의 효력에 관하여는 선거일을 말한다)로부터 10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41조(선거 또는 당선 효력 심의·의결)** ① 제40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이의제기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하며, 그 결정 내용을 지체 없이 이의를 제기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그 심의·의결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의제기에 대한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장 보 칙

**제42조(전자투표 및 개표)** ① 이 규정 제3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여 투표 및 개표(이하 “전자투표 및 개표”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투표 및 개표를 실시할 경우 제1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거인명부 작성 시 선관위의 안내에 따라 별도의 전자투표 및 개표용 선거인명부(전산파일본 포함)를 작성하여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타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항은 선관위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43조(재선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후보자가 없는 경우
  2. 당선인이 없는 경우
  3. 법원 또는 위원회가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 결정을 한 경우
- ② 재선거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가 선관위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44조(보궐선거)** ①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다만, 궐위된 날로부터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궐선거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가 선관위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45조(그 외의 사항)** ① 수원시체육회는 이 규정을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② 수원시체육회 선거와 관련하여 정관 및 이 규정 등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③ 「위탁선거법」 및 그 시행규칙과 이 규정이 서로 상충될 경우, 「위탁선거법」 및 그 시행규칙이 우선한다.

#### 부 칙 (2021. 12. 30.)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를 거쳐 경기도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 비 당 원 확 인 서

1. 선거명: 수원시체육회장선거
2. 성 명:                   (한자:                   )
3. 생년월일:
4. 주 소:

위 본인은 ○년 ○월 ○일(선거운영위원회 구성일 기준) 현재 기준  
으로 어느 정당의 당원도 아님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 ○ ○ ①

수원시체육회    귀중

[별지 제2호 서식]

## 수원시체육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

성 명:

생년월일:

위 본인은 제○대 수원시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수원시체육회 정관 및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따른 관련사항과 절차 등을 사전에 숙지하고 동 등록의사 표명서를 수원시체육회 사무국에 제출합니다.

### ※ 관련 신분상의 변화

- 단체장 : 동 의사표명서를 제출한 때부터 수원시체육회장 선거일까지 국제관계 업무를 제외한 모든 직무가 정지되고 부회장이 직무대행
- (단체장 제외)비상임 임원 : 동 의사표명서를 제출한 때부터 선거일까지 수원시체육회장 선거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 불가

년 월 일

성명

(서명)

수원시체육회 귀중

---

첨부자료: 소속단체가 발행한 임원확인서

[별지 제3호 서식]

# 공 고

수원시체육회 제○대 회장 선거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음

1. 회장 선거일

- 일 시 :    년    월    일    시
- 장 소 :

2. 회장 후보자 등록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시까지(○일간)

3. 선거운동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시까지(○일간)

년    월    일

선 거 운 영 위 원 회

[별지 제4호 서식]

## 선거인 후보자 추천 명단

공문 접수일:      년    월    일

단체명	성명	성별	생년월일	소속 및 직위	주소	전화번호	e-mail	비고

주: 1. 단체명은 선거인 후보자 추천 단체의 이름을 적습니다.(예시- 수원시축구협회 등)

[별지 제5호 서식]

### 후보자 징계사실 유무 확인서

수원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 후보자 인적사항 등 >	
성 명	
주민등록표 상 생년월일	
징계사실 유무	<input type="checkbox"/> 징계사실 있음 <input type="checkbox"/> 징계사실 없음
< 징계내역 >	
① 징계내역 1	
징계일자	년 월 일
징계사유	<input type="checkbox"/> 승부조작 <input type="checkbox"/> 편파판정 <input type="checkbox"/> 폭력·성폭력 <input type="checkbox"/> 횡령 <input type="checkbox"/> 배임 <input type="checkbox"/> 직권남용 <input type="checkbox"/> 직무태만 <input type="checkbox"/> 기타( )
징계 시 신분 및 징계종류	<input type="checkbox"/> 선수 ☞ <input type="checkbox"/> 제명 / <input type="checkbox"/> 자격정지(기간: )
	<input type="checkbox"/> 지도자 ☞ <input type="checkbox"/> 제명 / <input type="checkbox"/> 해임 / <input type="checkbox"/> 자격정지(기간: )
	<input type="checkbox"/> 심판 ☞ <input type="checkbox"/> 제명 / <input type="checkbox"/> 강등 / <input type="checkbox"/> 자격정지(기간: )
	<input type="checkbox"/> 임원 ☞ <input type="checkbox"/> 제명 / <input type="checkbox"/> 해임 / <input type="checkbox"/> 자격정지(기간: )
	<input type="checkbox"/> 직원 ☞ <input type="checkbox"/> 파면 / <input type="checkbox"/> 해임 / <input type="checkbox"/> 강등 / <input type="checkbox"/> 정직(기간: )
	<input type="checkbox"/> 기타 회원 등( ) ☞ <input type="checkbox"/> 제명 / <input type="checkbox"/> 자격정지(기간: )
② 징계내역 2	
	이하생략
「회장선거관리규정」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징계사실 유무를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수 원 시 체 육 회 장 (직인)	

[별지 제6호 서식]

## 체육단체 소속 경력 부존재 확인서

성명:

생년월일:

위 본인은 제○대 수원시체육회장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함에 있어 회장 선거관리규정 제18조제2항에서 명시한 체육단체에 소속된 경력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수원시(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별지 제7호 서식]

## 임원의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서약서

성 명:

생년월일:

위 본인은 제○대 수원시체육회장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함에 있어 수원시체육회 규정 및 회장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하는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 등록무효, 당선무효 및 법률적 책임을 다할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수원시(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별지 제8호 서식]

## 위법게시물의 삭제요청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청인	성명 (한자)		생년월일	
	주소			
삭제요청 사항				
이의신청 사유				
<p>「회장선거관리규정」 제24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제기하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 ○ ○ 인</p>				
수원시(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별지 제9호 서식]

## 회장 당선인 공고

년 월 일 실시한 선거에서 결정된  
제○대 수원시체육회 회장선거 당선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당 선 인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직업 및 직위 :

년 월 일

수 원 시 체 육 회

[별지 제10호 서식]

(선거)·(당선)의 효력에 관한 이의신청서

이 의 제기자	성 명	(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이의사실	이의제기 내용			
	이의제기 사유			
<p>년 월 일 실시한 제○대 수원시체육회장 선거에 대하여 「회장선거 관리규정」 제4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제기합니다.</p> <p>년 월 일 이의제기자 ○ ○ ○ (서명)</p> <p>선거운영위원회 귀중</p>				

주: 1. 이의제기 사유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이의제기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첨부합니다.



#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근무 규정



**수원시체육회**

#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근무 규정

제 정 2021. 4. 27.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원시 생활체육 진흥을 목적으로 현장 지도와 각종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국가체육지도자자격증(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대상으로 수원시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채용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생활체육지도자”(이하 “지도자”라 한다)는 지역의 생활체육 현장 지도와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을 위해 경기도 및 시·군체육회에 배치된 지도자를 말한다.

## 제2장 채 용

**제3조(생활체육지도자운영위원회의 설치)** 본회는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생활체육지도자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도자 채용에 관한 사항
2. 지도자 상벌에 관한 사항
3. 지도자 검직 허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지도자 배치 및 근무와 관련한 중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2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며,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부위원장, 연장자 순으로 그 임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학계, 주무부처 담당관, 외부전문가, 지역생활체육 발전에 기여한 인사 등으로 구성한다.

④ 간사는 위원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업 담당자 또는 총무 담당자로 하고, 회의결과를 기록하여 위원장의 날인을 받아 해당 체육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4조제1호의 사항을 심의할 경우 위촉 위원 외 추가 위원 1명을 두어야 한다. 이 때 수원시체육회 위원회의 경우 해당 경기도체육회 지도자 관련 업무 담당자(과장 이상), 경기도체육회 위원회의 경우 수원시체육회 사무국장으로 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신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⑦ 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하며, 재적위원의 과반수 참석으로 개최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위촉기간이 경과한 후 재 위촉되지 않으면 해촉된 것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즉시 해촉한다.

1. 사망 시
2. 본인이 해촉을 원할 때
3.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한다.)
4. 기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

**제6조(채용)** ① 지도자는 시·군체육회장의 파견 요구를 받아 경기도체육회장이 채용(선발)하고, 계약은 시·군체육회장이 한다. 단, 채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시·군체육회로 위임할 수 있다.

② 배치인원 및 제수당 등에 대해서는 정부예산 사정에 따라 매년 주무부처장관이 정하고, 채용공고는 경기도체육회장이 실시하되, 시·군체육회로 위임할 경우 시·군체육회장이 실시한다.

③ 경기도 또는 시·군체육회장이 지도자를 선발할 때에는 실기 및 면접시험을 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제3조에 따른 위원회 위원을 감독관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지도자 선발의 결과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시·군체육회가 채용을 위임받은 경우, 채용 시 경기도체육회 지도자 배치사업 관련 업무 담당자(과장 이상)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해야 하며, 불참 시 위임할 수 있다.

**제7조(시험의 단계)** ① 시험은 제1차, 제2차, 제3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제1차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2차 및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선발실시기관은 시험일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차 시험 및 제3차 시험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선발의 방법)** ① 제1차 전형은 서류심사로, 제2차 전형은 필기시험(지도 종목 수업 지도안 작성) 및 수업능력 평가(실기 지도 포함), 제3차 전형은 적성면접 평가로 한다.

② 제2차 전형은 현장 지도 종목 수업의 실연(實演) 등을 통하여 지도자로서의 의사소통 능력과 종목지도 능력을 중점 평가한다.

③ 적성면접은 생활체육지도자로서의 적성·인격 및 소양을 평가한다.

④ 수원시체육회장은 채용에 필요한 세부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선발 종목 결정 및 가산점)** ① 지도자 선발 종목은 경기도체육회장이 지도자를 선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체육회장의 요구를 받아 경기도체육회장이 최종 결정하며, 시·군체육회장이 경기도체육회장의 위임을 받아 지도자를 선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체육회장이 최종 결정한다.

② 단, 선발 공고 자격 종목의 “국가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았지만, 지도 가능한 타 종목 “국가체육지도자 자격증” 소지자도 응시 가능하다.

③ 응시자 중 교육대학(원), 사범대학(대학의 교육과)의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와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와 체육회 회원종목단체(이하 “회원종목단체”라 한다)의 전국대회 입상자에 대하여 제1차 및 제2차 시험 성적 만점에 10퍼센트의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④ 응시자중 대한체육회 가맹단체의 선수등록 출신은 5퍼센트, 전국대회 및 국제대회 입상자는 10퍼센트, 국가대표 출신은 15퍼센트의 가산점을 제1차 및 제3차 전형 성적에 부여 할 수 있다.

⑤ 응시자 중 청년층(만 29세 이하)에게는 10퍼센트의 가산점을 제1차 또는 제3차 전형 성적에 부여할 수 있다.

**제10조(시험의 실시 및 공고)** ① 시험은 지도자의 결원 및 배치인원 증원 발생 시 국가체육지도자 자격증소지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② 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일시·장소·방법·종목·배점비율·응시자격·원서제출절차 기타 시험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기일 1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5일전까지 이를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출원서류)**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정의 응시원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체육지도자자격증의 사본(자격증을 취득할 수수료 예정자는 연수기관의 발급예정증명서)
2. 종목별 대회 입상 경력 증명서(전국종목별연합회 및 대한체육회 종목별 가맹단체)
3. 이력서, 자기소개서

**제12조(합격자의 결정)** ① 제1차 서류심사는 선발 인원에 4배수 이하일 경우 면제한다.

② 제1차 서류심사 합격 인원은 선발 인원의 최소 4배수 이상으로 한다.

③ 제2차 시험(필기 및 수업능력평가) 및 제3차 시험(적성면접평가)의 성적을 100점 만점으로 합산하여 시험성적의 다 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가 있는 때에는 다음의 순위에 따라 결정한다.

1. 제2차 시험의 고득점자
2. 제3차 시험의 고득점자
3. 생활체육지도자운영위원회의 결정자

⑤ 시험성적이 60점 미만인 경우는 불합격 처리한다.

**제13조(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자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5. 병역의 의무를 기피 중인 사람
6. 지도자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타 시·군·구체육회에서 징계처분 등으로 사직한 사람
7. 기타 채용권자가 지도자로 채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4조(채용계약)** ① 지도자의 채용계약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단,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2년으로 계약할 수 있다.

② 지도자의 채용계약 기간은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해당연도 중도 채용자는 채용일부부터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신규채용 또는 재계약시 근로 계약기간 종료일은 정년해직 기준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재계약)** ① 회장은 제14조의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근무성적평점에 따라 재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근무성적 평점이 60점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즉시 시·도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체육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시·도체육회 지도자 배치사업 관련 업무 담당자(과장 이상)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해야 하며 해당 지도자는 위원회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필요시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②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 중에 근로계약이 만료된 사람의 재계약은 제46조의 재계약 특례에 따른다.

**제16조(채용 구비서류)** 채용이 확정된 지도자는 채용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11조에 의해 제출한 서류는 제외한다.

1. 지원서(별지 제1호 서식)
2. 이력서
3. 개인정보동의서
4. 자격증 사본
5. 경력증명서
6.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7. 건강진단서(의료기관 발행)

**제17조(전환배치)** ① 회장은 2년 이상 근속한 지도자에 한정하여 쌍방의 회장과 해당 지도자가 동의하는 경우, 일 대 일로 다음 각 호의 상호 전환 배치를 할 수 있다.

1. 지도자 전담 간 전환(일반↔어르신)
  2. 경기도 내 지도자 간에 전환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전환 배치되는 경우, 해당체육회의 정원 조정은 불가하고, 전환 대상자의 전 근무지에서의 경력은 전체를 인정해야 한다.
- ③ 전환배치 시 즉시 상급단체에 보고해야한다.

**제18조(근무성적 평정)** ① 회장은 지도자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근무성적 평정표(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한다.

- ② 근무성적 평정은 사무국장과 지도자 관리 부서의 장이 실시하고 회장은 평정결과를 확인한다.
- ③ 정부가 육성하는 스포츠클럽에 파견된 지도자에 대해서는 해당 클럽 사무국장이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한다.
- ④ 수원시체육회는 지도자 현장 활동 점검을 실시하여 지도자가 허위로 근무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지도자 배치사업 지침을 위반하여 근무한 경우 해당 지도자 근무평정이 이를 반영한다.

**제19조(휴직)**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휴직발령을 할 수 있다.

1.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직을 하게 된 때 : 징집 및 소집기간
  2.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을 하게 된 때 : 법률에서 정하는 기간
  3. 업무상 재해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최대 2년
  4. 업무에 재해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최대 4개월
  5.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최대 4개월
- ② 지도자가 휴직을 원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휴직일 15일전 휴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휴직자의 의무 및 급여)** ① 휴직 중인 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회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업에 종사하지 아니할 것
  2. 휴직 중 거주지, 신분관계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신고할 것
-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외의 지도자의 휴직기간은 무급으로 한다.
1.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자에 대해서는 평균급여의 8할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업무상재해 인정기간 동안 계속 지급한다. 단 업무상 재해로 인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휴업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그 금액 한도 내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업무외 재해로 인한 휴직자에 대해서는 최초 3월간은 평균급여의 6할을 지급하되, 3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1조(복직)** ① 지도자는 휴직기간 종료 전 30일 이내 또는, 휴직사유 종료 즉시 복직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제출해야 한다.

- ② 지도자의 휴직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휴직사유의 계속 발생으로 정상적인 근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지도자를 퇴직 처리할 수 있다.
- ③ 회장은 지도자의 휴직사유가 소멸한 경우에 해당 지도자로의 복직원 제출이 없더라도, 복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22조(정년)** ① 지도자의 정년은 만60세로 한다.

- ② 정년에 달한 달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 7월에서 12월 사이의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제23조(퇴직)** ① 회장은 지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의원퇴직 : 본인의 원에 의한 퇴직
2. 당연퇴직
  - 가. 본인의 사망
  - 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
  - 다. 정년 도달
3. 직권퇴직 : 지도자를 해고 또는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제24조(근로계약의 해지 등)** ① 지도자는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퇴직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별지 제7호 서식의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지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구속, 업무외 재해 및 기타 사유로 장기간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30일 전 예고)
2. 계약 1년 이내에 10일 이상 무단결근하는 경우 또는 평소 출근성적불량을 이유로 3회 이상 주의를 받은 경우
3. 정신 또는 신체상 결함으로 직무수행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 될 때
4. 제13조의 채용결격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된 때
5. 준수하여야 할 복무사항 및 근로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6. 사업의 중단 또는 예산의 감축 등 기타 해당 체육회 형편상 지도자의 고용이 필요하지 아니할 때
7. 채용구비서류에 신원, 경력, 학력 등 주요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8. 정당한 사유 없이 휴직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또는 휴직사유 소멸 후 30일 이내에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 할 수 없는 경우
9. 기타 이에 준하는 지도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퇴직이 결정되었을 때

**제25조(해고의 예고)** 회장은 지도자를 해고 또는 직권해지 할 경우 해고일 30일전 사유 및 시기를 명시하여 해고의 예고를 해당 지도자에게 서면으로 통지(별지 제8호 서식)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6조(퇴직의 제한)** 지도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지도자의 퇴직을 제한할 수 있다.

1.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수사 중 또는 기소 중인 때
2. 감사기관(부서) 등에서 정직 이상의 징계 처분을 요구하거나 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제27조(담당업무)** ① 지도자는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지역 주민에 대한 생활체육활동 지도
  2. 생활체육동호인활동 조사, 지도 및 관리
  3. 생활체육 프로그램 기획·보급
  4. 기타 생활체육 지도활동과 관련된 업무
  5. 생활체육 관련 상담·행정업무
- ② 지도자는 전공종목 외에 지역주민이 선호하는 종목을 함께 지도할 수 있다.
- ③ 지도자는 매년 초에 연간 생활체육활동 지도계획서를 작성하여 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3장 근 무

**제28조(준수의무)** 지도자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성실의무 : 지도자는 체육회 및 본회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따라 직무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2. 친절·공정·청렴 의무 : 지도자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항상 친절하고 공정·청렴하여야 하며, 그 직무에 관련하여 타인으로부터 사례, 증여, 향응 등을 받지 않아야 한다.
3. 품위유지의무 : 지도자는 본회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항상 언행을 조심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4. 비밀엄수의무 : 지도자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본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무단으로 공표하지 않아야 한다.
5. 직장이탈금지무 : 지도자는 소속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결근, 지각, 외출 등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제29조(근무시간)** ① 지도자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중식시간 제외), 주40시간(초과 근무 시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지급)으로 하고, 근무 시기는 지역실정에 따라 조정하고 1일 지도방문 횟수 등은 세부 운영 지침에 따른다.

② 회장은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휴일근무가 요청되는 경우 사전에 다른 휴일을 고지하여 휴일을 대체할 수 있고, 재정여건에 따라 휴일근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③ 본회 사무국장은 근태관리 기록부(별지 제5호 서식)를 비치하고 지도자의 근태상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④ 지도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근무일지를 매일 작성하여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야하며 사무국에 월별 보관하여야 한다.
- ⑤ 회장은 인력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유연근무제를 실시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장이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30조(출장)** ① 회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도자의 출장을 명할 수 있다.(생활체육지도자통합관리 시스템 “실적보고서” 작성 및 비치)  
 ② 출장 여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현장지도 1일 1회 출장 시 1만원, 1일 2회 이상 출장 시 1만5천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도서지방의 경우 1일 이내 출장이 곤란할 경우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결근)**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일 퇴근시각 전까지 담당책임자에게 신고하여 승낙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 등으로 전일에 신고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당일 업무시각 전까지 연락하여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신고 또는 연락이 없는 경우와 담당책임자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결근하는 경우에는 무단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32조(교육)** ① 체육회 및 지역체육회의 회장은 지도자의 프로그램 개발능력과 기본자질 함양을 도모하고 지도자로서의 소양을 고양하기 위하여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 지도자는 체육회 또는 지역체육회의 회장 및 회장이 위임한 사람의 지도활동 프로그램 개발능력함양 교육과 사무국 외에서의 각종 교육에 있어서 최대의 교육효과를 얻기 위해 성실히 교육에 임하여야 한다.  
 ③ 경기도 및 시·군·구체육회는 체육회에서 실시하는 지도자 교육 미 수료자(무단불참자 및 교육태도 불성실자 등)에 대해서는 지도자 근무평정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33조(타 직업종사의 제한)** ① 지도자가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직업에 별도로 종사하고자 할 경우 해당 체육회장으로부터 승인 받아야 한다. 단, 정부 일자리 사업에는 중복 참여할 수 없으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하는 영리활동 겸직은 금지한다.  
 ② 제1항 지도자 겸직 승인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지도자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 유관단체(종목별 협회 등)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③ 타 기관(단체)의 사업에 지도자를 파견 또는 근무하도록 할 때는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의2(스포츠클럽의 파견)** ① 정부에서 육성하는 스포츠클럽에 파견된 지도자는 생활체육지도자의 근무조건(근무시간, 휴가, 휴직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지도자의 스포츠클럽 파견수당은 해당 클럽에서 지급할 수 있고, 파견기간은 해당 시·군·구체육회에서 정한다.

**제34조(손해배상)** 지도자가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회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35조(관리)** ① 체육회 및 시·도체육회는 본회에 대하여 지도자 운영실태 점검 및 수시 업무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도자의 관리를 위해 생활체육지도자통합관리시스템(slims.sportal.or.kr) (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운영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1. 시도체육회는 채용 시 지도자의 인사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2. 지도자는 지도활동 후 2일 내에 시스템에 실적보고를 하여야 한다.
3. 기타 세부사항은 시스템 매뉴얼 및 운영지침에 따른다.

**제36조(휴일)** ① 지도자의 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휴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3. 근로자의 날
4. 기타 정부 또는 체육회에서 정한 휴일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업무형편상 필요한 경우에는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37조(연차휴가)** ① 1년 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지도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② 3년 이상 근속한 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근속연수 매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 회장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휴가는 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지도자의 청구(별지 제9호 서식)가 있을 때 부여한다. 다만, 업무 형편상 지도자가 신청한 기간에 휴가를 주기 어려울 때에는 회장이 휴가일을 변경하거나 휴가일을 지정하여 휴가 할 수 있게 한다.

⑤ 본회의 사정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지도자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부 보호휴가로 휴업한 기간
3.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제38조(생리휴가)** 여성지도자가 생리휴가를 신청할 때에는 월 1일의 휴가(무급)를 주어야 한다.

**제39조(공가)** 회장은 지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시간을 공가(유급)로 허용해야 한다.

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소집 등에 의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3.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4.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에 출석할 때
5.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특정한 행사에 참가할 때
6.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및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등을 받을 때
7.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 8.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에 응시하거나 연수과정에 참여할 때
- 9. 체육회 또는 지역체육회가 주관하는 지도자 직무교육에 참여할 때

**제40조(경조사휴가)** ① 회장은 지도자의 가정의례와 관련된 다음의 기간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1. 결혼 : 본인결혼 5일, 자녀결혼 1일
- 2. 사망
  - 가.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 나. 본인 및 배우자의(외)조부모 : 2일
  - 다. 자녀 및 그 자녀의 배우자 : 2일
  - 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 3. 출산 : 배우자 출산 5일

② 경조사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제41조(병가)** ① 회장은 지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간 60일 범위 안에서 병가를 승인 할 수 있다.

-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
  - 2. 감염병에 걸려 그 직원의 출근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 ② 병가기간 중 급여는 최초 20일 이내는 전액 유급으로 지급하고 20일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평균급여의 3분의 1만 지급한다.
- ③ 3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연간 누계 6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한다.

**제41조의2(난임치료 휴가)** 회장은 지도자가 난임치료를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3일 이내(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의 휴가를 부여한다.

**제42조(휴가기간 중의 휴일)** 휴가기간 중의 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 일수에 휴일을 산입한다.

**제43조(임산부의 보호)** ① 임신 중의 여성지도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임신 중인 여성지도자가 유산의 경험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임신 중인 여성지도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해당 지도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지도자의 임신 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휴가를 부여 한다. 다만, 모자보건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인공중절수술은 제외한다.

1.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 ④ 출산전후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 ⑤ 임신 중의 여성지도자에게 연장근로를 시키지 아니하며, 요구가 있는 경우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킨다.
- ⑥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지도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지도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 ⑦ 제6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지도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⑧ 임신부 등 여성지도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5조에 따른 도덕상 또는 보건상의 유해·위험한 직종에 근로시키지 아니한다.
- ⑨ 임신 중인 여성지도자가 제5항의 쉬운 종류의 근로로의 전환을 요청하였으나 해당 체육회 사정상 쉬운 종류의 근로로의 전환이 어려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지도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제1항에 의한 산전후 휴가 이외에 30일의 무급휴가를 출산 전에 한하여 부여할 수 있다.

**제44조(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임신한 여성지도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신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여성지도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다.

**제45조(육아휴직 등)** ① 지도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1.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체육회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지도자
  2.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지도자
-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 ③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지도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되며,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제46조(재계약 특례)**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 중에 근로계약이 만료된 지도자의 경우 동일자녀 1회에 한정하여 다음년도 재계약을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7조(육아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아동이 있는 여성지도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제29조제4항의 휴게시간 외에 1일 2회 각 30분씩 유급 수유시간을 준다.

## 제4장 수 당

**제48조(급여의 결정)** 지도자의 임금은 급여로 책정하며 주무부처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정한다. 단, 지역체육회별로 예산 범위내에서 급여 및 수당을 보조할 수 있다.

**제49조(급여지급일)** 급여는 매월 25일에 지도자 본인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휴일이나 토요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50조(계산기간)** 급여의 계산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제51조(지급방법)** 지도자의 급여에 변동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계산한다.

1. 급여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하여 일할 계산을 원칙으로 한다.
2. 일할계산은 그 달의 급여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눈다.
3. 1년 이상 근속자가 15일 이상을 근무하고 퇴직할 때에는 당해 월 급여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직권퇴직 또는 해고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무단 결근자는 결근일수에 상당하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2조(퇴직급여)** ① 지도자가 1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할 경우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 ② 퇴직급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에 가입함을 원칙으로 하고 세부내용은 그 규약을 따른다.
- ③ 퇴직급여의 중간정산은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시행령에 명시된 사유를 제외하고 제한한다.
- ④ 본회는 지도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납금의 납입 및 지도자의 퇴직연금 수령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2조의2(공제)** 지도자의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금 및 보험료 등을 공제한다.

1. 갑종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
2.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중 지도자 부담분

**제52조의3(시간외수당의 관리)** ① 시간외수당은 제29조에 따라 연장근무시간내에서 지급한다.

- ② 시간외수당의 관리방식은 본회가 정하되, 부서장 이상의 확인에 의해 인정한다.
- ③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 기준을 준용한다.

## 제5장 징계, 해직 등

**제53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① 지도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고 : 근로계약을 해지한다.
2. 정직 :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3. 감봉 :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1회에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총액은 월급여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금액을 감액한다.
4. 견책 :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

**제54조(징계양정의 기준)** ①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행위 유형·정도 및 고의·과실에 대한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개선의 정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제1호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징계의결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비위행위가 업무처리과정의 단순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그 정상을 참작하여 그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제55조(징계사유)** ① 지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한다.

1. 체육회 및 해당 체육회의 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근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체육회 및 해당 체육회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4. 고의 또는 중과실로 체육회 및 해당체육회에 재산상의 손실 또는 손해를 끼쳤을 때
5.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즉시 처리할 문서를 보류, 방치 또는 폐기하거나 근무일지의 허위작성, 동호인의 지도 업무를 불성실하게 하였을 때
6. 기타 위의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② 제1항의 징계사유에 의하여 본회에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책임에 따라 변상토록 할 수 있다. 이때 지도자가 받은 징계처분은 그 배상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6조(징계절차)** ① 회장은 지도자에 대한 징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를 작성하여 해당 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하고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회장은 징계대상 지도자에게 징계사유와 위원회 심의회의 장소·일시를 통보(별지 제11호 서식)하여야 하며, 이 때 해당 지도자는 위원회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③ 징계대상 지도자가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서면진술을 할 수 있으며, 진술의 의사가 없을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④ 회장은 위원회의 징계결정이 내려지는 즉시 해당 지도자에게 별지 제14호 서식의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지도자가 징계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서면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상급단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별지 제15호 서식)

1. 이의 제기의 취지
2. 이의 제기의 이유 및 입증방법 등
3. 징계결정 서면통지서
4. 기타 필요한 서류 등

⑥ 징계 결과에 대해서는 즉시 상급단체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재심에 의한 징계처분은 원 징계처분보다 가중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새로운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재심에 의한 징계처분의 효력은 원 징계처분일에 소급한다.

**제57조(범죄고발)** ① 지도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형사 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따라 이를 고발하여야 한다.

1. 뇌물수수, 공금횡령, 배임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2.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3. 범죄내용이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
5. 기관특성상 비위발생 빈도가 높아 각 기관별로 특별히 지정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6. 기타 범죄의 횡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 고발은 회장의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범죄혐의사실을 목인한 지도자에 대해서는 징계 등 엄중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기타 고발 조치는 ‘공무원의직무관련범죄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640호)’에 따른다.

## 제6장 보 칙

**제58조(건강진단)** 지도자는 매 2년마다 일반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채용 시 건강진단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건강진단을 생략한다.

**제59조(재해보상)** ① 지도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재해보상금 지급에 갈음한다.

② 회장은 재해보상에 대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60조(보고)** ① 회장은 신규채용, 해직, 징계 등 지도자 신분변동에 대하여는 경기도체육회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체육회장은 주무부처의 요구가 있을시 지도자 관련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61조(준용준칙)** ①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체육회 제 규정에 근거하여 지역체육회회에서 별도 구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이 규정에 대한 세부규정을 제정·운용할 수 있다.

## 부 칙 <제정 2021. 4.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현재 근무 중인 지도자는 동 규정에 따라 채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별표 제1호>

## 징계양정기준

비위의도 및 과실 비위의 유형	비위의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b>1. 성실의무위반</b>				
가.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해고	해고	해고-정직	정직-감봉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해고	해고	정직	감봉
다.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해고	해고	정직-감봉	견책
라. 기타	해고	정직	감봉	견책
<b>2. 복종의무위반</b>				
가. 지시사항 불이행 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해고	해고	정직-감봉	견책
나. 기타	해고	정직	감봉	견책
<b>3. 직장이탈금지 위반</b>				
가. 무단결근	해고	해고	정직-감봉	감봉-견책
나. 기타	해임	정직	감봉	견책
<b>4. 비밀엄수의무 위반</b>				
가. 비밀의 누설·유출	해고	해고	해고-정직	감봉-견책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해고	해고-정직	정직	감봉-견책
다. 비밀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해고	해고-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라. 개인정보 무단 조회·열람 및 관리소홀 등	해고	해고-정직	감봉	견책
마. 그 밖에 보안 관계 법령위반	해고	해고-정직	감봉	견책
<b>5. 청렴의무 위반</b>				
	해고	해고	정직	감봉-견책
<b>6. 품위유지의무 위반</b>				
가. 성폭력(미성년자)	해고	해고	해고-정직	정직-감봉
나. 그 밖의 성폭력	해고	해고	해고-정직	정직-감봉
다. 성희롱 등	해고	해고-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라. 기타	해고	해고-정직	감봉	견책
<b>7.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b>				
	해고	해고	해고-정직	정직
<b>8. 선거운동금지 위반</b>				
	해고	해고	정직	감봉-견책

※ 비고 : 제6호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별표 1의 2>

## 징계양정기준

행위 유형	수수금액			
	50만원 이하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200만원 초과
의례적인 금품·향응수수의 경우, 허가받지 않은 활동으로 인한 금품·향응수수의 경우	감봉	정직	해고	해고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수수를 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감봉·정직	해고	해고	해고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수수를 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또는 공금을 횡령·유용한 경우	정직·해고	해고	해고	해고

<별표 1의 3>

## 징계양정감경기준

인정되는 징계양정	감경된 징계양정
해 고 정 직 감 봉 건 책	정 직 감 봉 건 책 불 문 (경고)

<별지 제1호 서식>

# 지 원 서

접수번호	
------	--

사 진
-----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령)		- (만 세)
	자격증	주종목	
		부종목	

근무 희망지	1 지역	
	2 지역	
	3 지역	
본인은 수원시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모집에 응모코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날인)
수원시체육회장 귀하		

## 접 수 증

■ 접수번호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20 년 월 일

수원시체육회장

## 수 험 표

사 진	접수번호	
	주민등록번호	
	성 명	
실기종목		

20 년 월 일

수원시체육회장

<별지 제2호 서식>

## 계약직직원 채용계약서

수원시체육회와 계약직직원으로 계약을 함에 따라 제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합니다.

- 다 음 -

### 1. 계약 체결자

사 용 자	사 업 체 명	○○체 육 회
	소 재 지	
	대 표 자	
계 약 직 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주 소	

### 2. 계약조건

#### 가. 기본사항

계 약 기 간	20 년 1월 1일 ~ 20 년 12월 31일			
보 수	금여 월 원			
신 분	계약직 직원(생활체육지도자)			
취 업 장 소				
담 당 업 무	지역 생활체육 현장지도 및 생활체육 동호인 육성			
근 무 및 시 간	근 무 일	주 휴 일	근 무 시 간	휴 게 시 간
	월 ~ 금	일요일	09:00~18:00	12:00~13:00
근 무 시 간	○ 근로자는 지도자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상기의 근무시간, 근무일, 휴게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에 동의한다. (예, 일요일 근무시 주중 1일 휴무)			
급 지 급 시 여 기	매월 25일			
급 지 급 방 여 법	개인통장으로 지급			

#### 나. 기타사항

본 계약은 계약일부터 유효하며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근무규정에 따른다.

20 년 월 일

사용자	수원시체육회 회장 (인)(서명)	근로자	수원시체육회 계약직원 (인)(서명)
-----	----------------------	-----	------------------------

<별지 제3호 서식>

## 근무성적 평정표

피 평 정 자	소 속		평 정 자	소 속	
	성 명			직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성 명	

◆ 평정기간 : . . . ~ . . . (평정기준일 : . . . )

평정요소	배점	평정기준	평정 등급 및 점수					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근무실적	40	○ 생활체육 지도활동 계획대비 실적(지도건수)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탁월</td> <td>우수</td> <td>보통</td> <td>미흡</td> <td>불량</td> </tr> <tr> <td>100~90%</td> <td>89~80%</td> <td>79~70%</td> <td>69~60%</td> <td>60%미만</td> </tr> </table>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00~90%	89~80%	79~70%	69~60%	60%미만	40-36	35-31	30-26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00~90%	89~80%	79~70%	69~60%	60%미만											
2.프로그램	20	○ 생활체육 지도활동 프로그램 수립 능력	20-18	17-15	14-12	11-9	8-0								
3.현장평가	20	○ 생활체육 지도활동 프로그램 현장 적용 및 운영 능력	20-18	17-15	14-12	11-9	8-0								
4.직무능력	20	○ 근무 책임감 및 성실성	20-18	17-15	14-12	11-9	8-0								
직무태도 (감점)		○ 징계처분(1회당)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정직</td> <td>감봉</td> <td>견책</td> </tr> <tr> <td>15</td> <td>10</td> <td>5</td> </tr> </table>	정직	감봉	견책	15	10	5							
		정직	감봉	견책											
		15	10	5											
		○ 복무위반(1회당)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무단결근</td> <td>무단지각</td> <td>무단조퇴</td> </tr> <tr> <td>5</td> <td>3</td> <td>3</td> </tr> </table>	무단결근	무단지각	무단조퇴	5	3	3							
무단결근	무단지각	무단조퇴													
5	3	3													
○ 사업지침 위반(1회당)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허위 지도활동</td> <td>그 외 지침 위반</td> </tr> <tr> <td>10</td> <td>5</td> </tr> </table>	허위 지도활동	그 외 지침 위반	10	5	-	-	-	-	-						
허위 지도활동	그 외 지침 위반														
10	5														
○ 체육회 교육 참여자세(1회당)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무단불참</td> <td>무단퇴소</td> <td>태도불량</td> </tr> <tr> <td>5</td> <td>3</td> <td>2</td> </tr> </table>	무단불참	무단퇴소	태도불량	5	3	2									
무단불참	무단퇴소	태도불량													
5	3	2													
합 계 점 수(총점 100점)															

- ※ 지역체육회는 “근무실적(40)”을 제외한 평정요소에 대해서는 세부 평정방식(평정척도 등)을 마련하여 지도자 근무성적 평정을 시행해야 한다.
- ※ 평정자는 평정결과가 피평정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됨을 인식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한다.
- ※ “근무실적(40)”은 정량지표이므로 생활체육지도자 통합관리시스템 지도활동 “계획 대비 실적(실행률)”을 확인하여 평정결과를 산출한다.
- ※ “프로그램(20), ”현장평가(20)“, ”직무능력(20)“은 사무국장(처장)과 지도자 관리 보직자가 각각 평정한 점수의 평균 점수를 평정점으로 한다.
  - 지도자 관리 보직자가 없는 지역체육회는 사무국장 평정점수만 반영한다.
- ※ “직무태도” 감점사유가 발생할 시, 각 평정요소에 대한 합산 점수를 산출한 후 평정점수에서 감점 처리한다.
  - 지도자교육 수료 항목은 대한체육회에서 지역체육회로 통보한 내용에 따라 감점 처리한다.

<별지 제4호 서식>

### 근태관리 기록부

소 속	
종 목	
성 명	

일자	근 무 시 간			확 인			비고
	출근시간	퇴근시각	근무시간	본 인	계 원	책임자	

※ 비고란에는 결근, 지각, 조퇴, 휴가 등 근태 참고사항을 적는다.



<별지 제5호 서식>

# 휴 직 신 청 서

인 적 사 항	① 성 명	한 글		② 소 속	
		한 자		③ 생년월일	
	④ 주 소				
⑤ 휴 직 사 유					
⑥ 휴 직 기 간					
⑦ 첨 부 서 류					
<p>본인은   년   일   일부로 휴직하고자 하오니 허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margin-top: 40px;">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20px;">신청인                   인</p> <p style="margin-top: 100px;">수원시체육회 회장 귀하</p>					

### 복 직 신 청 서

인 적 사 항	① 성 명	한 글		② 소 속	
		한 자		③ 생년월일	
	④ 주 소				
⑤ 휴 직 사유					
⑥ 휴 직 기 간					
⑦ 첨 부 서 류					
본인은 년 일 일 부로 휴직기간이 종료되어 복직하고자 하오니 허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수원시체육회 회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 사 직 서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사직희망일자		
사직이유 (※구체적으로 기재)		
<p data-bbox="389 1368 1235 1413">위와 같이 사직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data-bbox="724 1585 895 1626">년 월 일</p> <p data-bbox="922 1747 1358 1787">위 작성자 (인)</p> <p data-bbox="268 1897 624 1937">수원시체육회 회장 귀하</p>		

<별지 제8호 서식>

### 해고(예고) 통보서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해고예고통지일		
해 고 일 자		
해 고 사 유 (※구체적으로 기재)		
<p>이 규정 제25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해고 예고를 통지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수원시체육회 회장 (인)</p> <p>수원시체육회 회장 귀하</p>		

## 휴가 사용신청서

인적 사항	① 성 명	한 글		② 소 속	
		한 자		③ 생년월일	
	④ 주 소				
⑤ 휴 가 사 유					
⑥ 휴 가 기 간					
⑦ 첨 부 서 류		(병가, 공가, 경조사 휴가 사용시)			

본인은 상기와 같이 휴가를 사용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 ○ 체육회 회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 징계의결요구서

인 적 사 항	성 명	한 글		소 속		직 위	
		한 자		생 년 월 일		채 용 일	
	주 소						
징 계 사 유							
위와 같이 징계의결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징계의결요구권자							인

<별지 제11호 서식>

# 출석통지서

인적 사항	① 성 명	한 글		② 소 속	
		한 자		③ 직 위(급)	
	④ 주 소				
⑤ 출 석 이 유					
⑥ 출 석 일 시					
⑦ 출 석 장 소					
유 의 사 항		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할 것 2.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할 것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 처리한다.			
이 규정 제56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생활체육지도자운영위원회 위원장 (인)  귀하					

.....(절 취 선).....

# 진술권포기서

인적 사항	① 성 명	한 글		② 소 속	
		한 자		③ 직 위(급)	
	④ 주 소				
본인은 귀 생활체육지도자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생활체육지도자운영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 서 면 진 술 서

소 속		직 위	
성 명		제출기일	년 월 일
사 건 명			
불참사유			
진 술 내 용			
<p>이 규정 제56조제3항에 의거 위와 같이 서면으로 진술하오며 만약 위 진술내용이 사실과 상이한 경우에는 여하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p>			
년 월 일			
성 명 (인)			
생활체육지도자운영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13호 서식>

# 회 의 록

1. 회의일시	
2. 회의장소	
3. 출석위원	(위원장)
	(위원)
4. 출석직원	(간사)
	(서기)
5. 부의안건	
회의내용	







# 임직원 행동강령



**수원시체육회**

# 수원시체육회 임직원 행동강령

제정 2021. 4. 27.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과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수원시체육회(이하 “본회”이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 가. 본회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 나. 인·허가, 검사, 감사,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
  - 다.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라. 본회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 마. 본회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바.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사. 그 밖에 본회의 사무국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
2. “직무관련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 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 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소속 기관 임직원
  -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위탁을 받는 임직원
  - 라. 그 밖에 본회의 사무국장이 정하는 임직원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적용범위)** 이 강령은 본회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①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본회의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본회의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본회의 사무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사무국장에게 해당 사실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직원이 본회의 사무국장이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직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임직원의 4촌 이내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임직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가.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 나.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 다.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그 밖에 본회의 사무국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② 직무관련자 또는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직원의 본회의 사무국장에게 별지 제4호의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국장은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의 대상이 된 임직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고, 해당 임직원은 그에 대한 의견서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제1항 각 호 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본회의 사무국장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나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본회의 사무국장은 소속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3. 직무 재배정
4. 전보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본회의 사무국장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공익 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⑥ 본회의 사무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 제4항에 따른 조치 및 제5항 후단에 따른 확인·점검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직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회의 사무국장이 정한다.

**제6조(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 임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상임이사 및 감사, 이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직위에 임용된 날 또는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본회의 사무국장(본회의 사무국장이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말한다)에게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하였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2.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3. 그 밖에 본회의 사무국장이 정하는 사항

③ 본회의 사무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①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소속된 기관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소속 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본회의 사무국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본회의 사무국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5. 본회의 사무국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② 본회의 사무국장은 소속 임직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해당 임직원에게 명하여야 한다.

**제8조(가족 채용 제한)** ① 임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출연기관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자회사, 손자회사 및 계열회사(이하 '자회사 등'이라 한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인사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원을 포함한다)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자회사 등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자신의 가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자회사 등에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임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자회사 등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자회사 등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 등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본회의 사무국장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적 접촉의 유형, 신고 내용, 신고 방법 등은 본회의 사무국장이 정한다.

**제11조(특혜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본회의 사무국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본회의 사무국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투명한 회계 관리)** 임직원은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3장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6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법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및 용역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본회의 사무국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19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 또는 제공이 제한되는 정보란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말한다.

**제20조(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임직원은 차량, 부동산 등 본회 소유의 재산과 본회의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임직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3.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이나 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소속된 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23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24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임직원이나 파견 임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고·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2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임직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임직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임직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④ 임직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본회의 사무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에게 또는 그 임직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⑦ 임직원은 본회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4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① 임직원은 본회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 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25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사무국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3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사무국 임직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본회의 사무국장에게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무국 임직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 사무국장은 제2항에 따라 사무국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임직원의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사무국 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본회의 사무국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⑥ 사무국 임직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본회의 사무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⑦ 사무국 임직원은 월 2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본회의 사무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검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6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① 사무국 임직원은 본회의 사무국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본회의 사무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본회의 사무국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사무국 임직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임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임직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본회의 사무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27조(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① 임직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직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과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본회의 사무국장에게 미리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경매·

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② 임직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직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이었던 자이거나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사무국장에게 미리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과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임직원 또는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사람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④ 임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직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본회의 사무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제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제28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①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단체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29조(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 감독·감사·조사·평가 등을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임직원은 소속 기관의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감사·조사·평가 등을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2. 감독기관 소속 임직원에게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의 요구

② 감독기관에 소속된 임직원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임직원은 그 이행을 거부하여야 하며, 거부에도 불구하고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19호의2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임직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등

**제30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① 임직원은 알선·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

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 의 통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에 대하여 이 강령을 위반하는 자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본회의 사무국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1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그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본회의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신고인의 신분보장)** ① 본회의 사무국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9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본회의 사무국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회의 사무국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29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강령에 의한 상담·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33조(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 ① 본회의 사무국장은 소속 임직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장으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34조(징계)** ① 본회의 사무국장은 이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본회의 징계관련 규정에 따른다. 다만,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자체 징계양정기준 등에 따라서 처리하되, 별표 4의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하며, 제30조를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35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사무국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 임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임직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임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본회의 사무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사무국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본회의 사무국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6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감사·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제출·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본회의 사무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⑥ 본회의 사무국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8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본회의 사무국장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6장 보칙

**제36조(교육)** ① 본회의 사무국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본회의 사무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 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이권개입·알선·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임직원이 지켜야 할 사항
4.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임직원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7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본회의 사무국장은 이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경영지원과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할 수 있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강령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2. 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해서는 상급기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이 그 기관의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38조(준수 여부 점검)**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 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본회의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포상)** 본회의 사무국장은 강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40조(행동강령의 운영)** 본회의 사무국장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부 칙 <제정 2021. 4.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2호>

##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으로 한다.

### 비 고

- 가. 제1호, 제2호 본문·단서 및 제3호 본문·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 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 또는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 다.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 라. 공공기관의 장은 업무 특성에 따라 위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의 금품등 수수 제한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 1. 공직자별 사례금 상한액

- 가. 법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 40만원
- 나.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가목에 따른 공직자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목에 따른다): 100만원
-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 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 2. 적용기준

- 가.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 나. 제1호 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다.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 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별표 제4호>

###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

비위 유형	수수 행위	금액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직무와 직접적인 관계 없이 금품등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	수 동	감봉·정직·강등	강등·해임·파면	해임·파면	파면
	능 동	정직·강등·해임	해임·파면	파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였으나,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 동	정직·강등·해임	해임·파면	파면	
	능 동	강등·해임·파면	파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 동	강등·해임·파면	파면		
	능 동	해임·파면	파면		

<별지 제1호>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소명인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상급자 (지시자)	성명	직위(직급)

지시받은 사항

소명 내용

년 월 일

소명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상담요청인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상급자 (지시자)	성명	직위(직급)	

지시받은 사항

공정한 직무를  
저해하는 사유

년 월 일

상담요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

##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고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직무 관련 업무	(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직무관련자	성명		
	주소		
	연락처		
	관계	(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참고자료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4호>

## 이해관계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성명	
	주소	
	연락처	
업무 담당 공무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신청 취지		
신청 원인	<b>직무 관련 업무</b> (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b>직무관련자</b> (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참고 자료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기관 귀중



<별지 제6호>

## 업무 담당 공무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신청 취지		
신청 원인	<b>직무 관련 업무</b> (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b>직무관련자</b> (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참고 자료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관 귀중



<별지 제7호>

##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확인·조치 내역서

접수번호		접수일	
업무 담당 공무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관련 사항	직무 관련 업무(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직무관련자(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확인 사항			
조치 내역			
기타 참고사항			

확인점검일

확인점검자

(인)

<별지 제8호>

## 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서

재직하였던 기관·단체 등					
기간	근무처(부서)	소재지	대표자	직위(급)	주요업무내용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					
기간	업체명	사업의 목적	소재지	직위(급)	주요업무내용
기타					
작성일자 : 20 . . . .			신고자 : (인)		

<별지 제9호>

##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고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직무 관련 업무	(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직무관련자인 퇴직공무원	성명		연락처
	현 소속		
	퇴직 전 소속		퇴직일
접촉 일시			장소
접촉 유형	1. 골프, 2. 여행, 3. 사행성 오락, 4. 식사·음주 등의 향응, 5. 기타		
접촉 사유			
비용 부담자			
참고서류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0호>

##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	------	------

보고자 (상담요청인)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직급)

정치인 등 인적사항	성명	직책
	소속	전화번호

요구사항	
------	--

부당한 근거	
--------	--

년 월 일

보고자(상담요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1호>

## 금품등 수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소속	연락처	
	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제공자와 친분관계를 맺게 된 경위			
금품등을 제공받게 된 경위			
금품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2호>

## 외부강의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연락처
요청인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외부강의등 주제		
장 소		
일 시	20 . . . . ~ 20 . . . . 시 분 ~ 시 분	일괄신고 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
사례금	총액 _____ 천원(※ 1회 평균 대가 _____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_____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_____ 천원)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 유의사항

1.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함.
2.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별지 제13호>

## 초과사례금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연락처
요청인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외부강의등 주제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사례금	총액 _____ 천원(※ 1회 평균 대가 _____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_____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_____ 천원)	
초과사례금	초과사례금 액수 : _____ 천원	
초과사례금 반환	반환여부 : _____      반환금액 : _____ 반환방법 : _____	※증빙서류 첨부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4호>

##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소속	연락처
	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신고취지 및 이유		
금품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금품등 반환여부 및 방법	반환여부	
	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자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별지 제15호>

##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직급)			
청구금액						
반환계좌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	금품 (물품)					
	수량 (금액)					
	받은일시					
	반환일시					
	증빙서류 목록	*증빙서류(사본) 첨부				
반환받는 사람	성명		주소			
	연락처		청구인과의 관계			
	직무관련 내용					
기타 사항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7호>

##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

인도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의 폐기처분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20 .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18호>

## 금품등 관리대장

일련번호	신고접수번호	신고일	품목(상표)	수량	가액(상당액)	신고자			제공자			인도일	관리부서(관리자)	보관장소	처리결과	처리일	비고
						소속	직위(직급)	성명	소속	직위(직급)	성명						

<별지 제19호>

##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b>신 고 사 항</b>						
<input type="checkbox"/> 금전 차용			<input type="checkbox"/> 금전 대부			
거 래 상대방	성명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input type="checkbox"/>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직무관련 업무						
계약체결일		상환기일				
거래금액 (이율)		거래원인*				
<input type="checkbox"/> 물품 계약		<input type="checkbox"/> 용역 계약		<input type="checkbox"/> 공사 계약		
거 래 상대방	성명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input type="checkbox"/>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직무관련 업무		계약체결일				
거래금액		거래원인				
<input type="checkbox"/> 부동산, 자동차 등 거래						
거 래 상대방	성명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input type="checkbox"/>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직무관련 업무		계약체결일				
대상		거래 금액				
거래원인						
신고자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참고자료		※소명자료 첨부				

※ 거래원인이란, 계약을 법률상 정당하게 하는 법률상의 원인, 즉 권원을 말함. 법률행위 또는 그 밖의 법률사실 (예컨대, 상속, 경매, 판결 등)일 수 있음

<별지 제19호의 2>

##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요구자	성명			직위(직급)	
	소속				
요구받은 사항					

부당한 요구로 판단한 이유

년 월 일

신 고 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0호>

###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60일
신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피신고자 (신고대상)	성명			
	소속 및 직위(직급)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부동의
신고취지 및 이유				
행동강령 위반행위 내용	일시			
	장소			
	내용			
증거자료 목록				※ 증거자료 첨부
비고				

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고자

○○○장

귀하

<별지 제21호>

## 상담기록관리부

상담일시		상담유형	[ ] 방문 [ ] 전화 [ ] 기타( )
상 담 요청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직위(직급)	연락처	

상담 내용

상담 결과

년 월 일

행동강령책임관

(서명 또는 인)



##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운영실적

(00년 상반기/하반기, 기관명)

### 1. 기본사항

가. 행동강령 적용인원 :       명

※ 적용인원 : 기준일 현재 총 현원(상반기 : 6. 30. / 하반기 : 12. 31. 기준)

나. 클린신고센터 설치수 :

다. 행동강령책임관(기관 본부)

소 속		성 명	
직 위		연락처	
이메일			

라. 행동강령 및 관련 지침

○ 제·개정 내역

명 칭			
제정·개정	제정 (    ), 개정 (    )	일 자	200 .    .    .
주요 내용			

※ 기준일 현재 시행 중인 행동강령 및 관련 지침 파일 제출(첨부①)

## 2. 행동강령 이행환경

### 가. 기관 홈페이지 신고창구 운영

- 신고창구 접속 경로 : (예: 시작화면 → 민원마당 → 부패신고)
- 시작화면 ~ 신고창구까지의 클릭 횟수 : 회

### 나. 국민권익위원회 사이버신고센터 접근 용이성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상담 사이트 링크 여부 : 여·부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상담 사이트까지의 클릭 횟수 : 회

### 다. 신고자 인센티브 부여제도

- 신고자 인센티브 부여제도 : 관련 파일 제출(첨부②)
- 신고자 인센티브 부여제도 운영 현황

구 분	신고 건수	포상 건수	포상금 등 지급실적	인센티브 부여 건수	비 고
계			원(상당)	※ 인사상 우대 등	
내 부					
외 부					

### 3. 추진실적

#### 가. 행동강령 관련 상담 현황

○ 행동강령 관련 상담 및 조치 현황

상담 분야	상담건수	조치건수	비고
<b>총계</b>			
①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②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③ 임원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④ 직무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⑤ 가족채용 제한			
⑥ 수의계약 체결 제한			
⑦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⑧ 특혜의 배제			
⑨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⑩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			
⑪ 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⑫ 투명한 회계관리			
⑬ 이권개입 등의 금지			
⑭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⑮ 알선·청탁 등의 금지			
⑯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⑰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⑱ 사적노무의 요구 금지			
⑲ 직무권한등을 남용한 부당행위의 금지			
⑳ 금품등의 수수 금지			
㉑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㉒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㉓ 직무관련자등과의 거래 신고			
㉔ 경조사의 통지			
㉕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㉖ 기타			

## 나. 외부강의등 신고 현황

구 분	총 계	강의·강연	발표·토론	심사·평가 자문·의결	기 타
신고건수	건	건	건	건	건
신고인수	명	명	명	명	명
외부강의등 시간 (누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대 가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 ※ 1. 소속 기관 임직원의 신고실적도 포함  
 2. 60분까지는 1시간, 1시간 초과 2시간까지는 2시간 등으로 기재  
 3. 동일인이 수 회 신고하여도 신고인은 1인으로 계산

## 다. 금품등 반환신고 현황

### ○ 신고 현황

구 분	건 수	금 액(천원)	비 고
계			
수수 금지 금품등 (공무원행동강령 제14조 관련)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 (공무원행동강령 제15조 관련)			

○ 처리 현황

구분	계	반 환	기 증	폐 기	기 타	처리중
건 수	( )	( )	( )	( )	( )	( )
금 액						

※ 즉시 반환하여 그 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건수만 “건수란”에 ( )로 표시

라. 행동강령 위반행위 적발 현황

위반건수(건)			자체적발률(%)
계 (A+B)	자체적발건수 (A)	외부기관통보건수 (B)	$\frac{A}{A+B} \times 100$

4. 행동강령 실천의지

가. 행동강령 교육

○ 교육인원(누계) :                   명 ※ 소속 기관 교육인원 포함

○ 교육실시 내역 ※ 공공기관 본부 실적만 기재

구분	일시	장소	참석인원(명)	주요내용	교재 제작 여부
누계	-	-		-	-
1	2008. 4. 7.(월)	대강당	457	행동강령 조문별 위반 사례 교육	○ (행동강령 조문별 사례집)
2					
:					

## 나. 행동강령 이행실태 지도·점검

구분	점검 기간	점검 일수	점검 인원	주요 점검사항	위반행위 적발건수
누계	-			-	
1	2008. 4. 7.(월)~11.(금)	5일	7	업무추진비 등의 목적외 사용 여부	1
2					
:					

## 다. 행동강령 수범 우수사례 수상 및 홍보 실적

○ 수범 사례

○ 수상 내역

수상명	수상 일시	수상 내역	비고

○ 홍보 실적

구분	홍보매체	홍보 횟수	홍보 내용	비고
계				

## 5. 행동강령 위반행위자 적발·처리 내역

※ 위반행위자 별로 별도 작성

<b>1. 위반행위자</b>			<b>일련번호</b>	20 -	
소속			직위		
직급	<input type="checkbox"/> 임원	<input type="checkbox"/> 관리자	<input type="checkbox"/> 직원	성명 (실명기재)	
<b>2. 위반행위 및 적발·처분일</b>					
위반행위일	( )년 ( )월	적발일	( )년 ( )월	징계 등 처분일	<input type="checkbox"/> ( )년 ( )월 <input type="checkbox"/> 진행중
<b>3. 위반행위 처리결과</b>					
<input type="checkbox"/> 파면		<input type="checkbox"/> 해임		<input type="checkbox"/> 강등	
<input type="checkbox"/> 견책		<input type="checkbox"/> 불문경고		<input type="checkbox"/> 경고·주의	
<input type="checkbox"/> 정직		<input type="checkbox"/> 감봉		<input type="checkbox"/> 기타(훈계·전보발령 등)	
<b>4. 적발기관</b>					
자체적발		<input type="checkbox"/> 내부공익신고 <input type="checkbox"/> 진정/신고 <input type="checkbox"/> 자체감사 <input type="checkbox"/> 기타(직접기재 : )			
외부기관 적발		<input type="checkbox"/> 상급 감독기관 <input type="checkbox"/> 감사원 <input type="checkbox"/> 검찰청 <input type="checkbox"/> 경찰청 <input type="checkbox"/> 국무총리실 <input type="checkbox"/> 국민권익위원회 <input type="checkbox"/> 기타(직접기재 : )			
<b>5. 행동강령 위반행위 내역</b>					
유형	<input type="checkbox"/>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input type="checkbox"/>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input type="checkbox"/>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input type="checkbox"/> 알선·청탁 등의 금지 <input type="checkbox"/> 임원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input type="checkbox"/>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input type="checkbox"/> 직무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input type="checkbox"/>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input type="checkbox"/> 가족채용 제한 <input type="checkbox"/> 사적노무의 요구 금지 <input type="checkbox"/> 수의계약 체결 제한 <input type="checkbox"/> 직무권한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 <input type="checkbox"/>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input type="checkbox"/> 금품등의 수수 금지 <input type="checkbox"/> 특혜의 배제 <input type="checkbox"/>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input type="checkbox"/>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input type="checkbox"/>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input type="checkbox"/>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 <input type="checkbox"/> 직무관련자등과의 거래 신고 <input type="checkbox"/> 인사 청탁 등의 금지 <input type="checkbox"/> 경조사의 통지 <input type="checkbox"/> 투명한 회계관리 <input type="checkbox"/>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input type="checkbox"/> 이권개입 등의 금지 <input type="checkbox"/> 기타(직접기재: )				
내역	○ 6하 원칙에 의거, 위반행위 내용, 적발·조치 내역을 상세히 기재				



## 6. 기타

- 운영상 애로사항
- 개선조치 요청
- 건의사항 등

<별지 제23호>

## 행동강령 위반행위자 징계의결 미요구 사유서

위반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위반행위	통보받은 문서번호			
	위반내역			

■ 징계의결 미요구 사유

---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서명 또는 인)

---



# 종목단체 회장선거관리 규정



**수원시체육회**

# 종목단체 회장선거규정

제 정 2021. 04. 27.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원시종목단체 규정 제20조에 따라 ○○협회(연맹 또는 회)(이하 “협회(연맹 또는 회)”라 한다)의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이하 “회장선거”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수원시 ○○협회에는 단체명 삽입

**제2조(적용범위)** ① 협회(연맹) 회장선거에 관하여 관계 법령, 수원시체육회 ‘수원시 종목단체규정’ 또는 협회(연맹) 정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 규정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종목단체 회장선거는 체육회가 이 규정을 준용하여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협회(연맹)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장 임기만료일 전 40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시기는 회장 임기만료일 40일 전까지가 최소 기간이며, 단체별 사정에 따라 50일, 60일, 70일, 80일도 가능하지만 그 이하인 30일, 20일은 불가능

1. 선거인 수의 배정
2. 선거인 명부의 작성
3. 선거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4. 후보자의 등록, 사퇴 및 후보자 공고에 관한 사항
5. 선거운동 관리 및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경고 및 조사에 관한 사항
6. 투표, 개표 및 당선인 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선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협회(연맹)와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회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하되 위원장은 호선하며 협회(연맹)와 관계있는 사람은 위원장이 될 수 없다. 단, 회장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관(규약)의 규정에 따라 직무를 대행하려는 사람이 위원을 추천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

## 제2장 선거인 명부의 작성

**제4조(선거인)** ① 회장선출기구는 다음의 각 호의 직군의 사람으로 구성하며, 10인 이상 150인 이내로 구성하여야 한다.

1. 수원시 종목단체규정 제8조 제1항에 따른 대의원
2. 시·군종목단체의 임원

3. 지도자

4. 심판

5. 선수 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는 날부터 4년 이내에 선수이었던 사람

6. 체육동호인

- \* 선거인은 제4조제1항을 준용하여 수원시종목단체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실업팀 감독들에게 선거인을 배정하는 방법도 가능함. 다만, 선거인 구성의 공정성 차원에서 수원시체육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함.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선거인은 제1항의 직군에 중복하여 배정할 수 없다.

③ 선거인 또는 선거인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만 18세 이상일 것
2. 선거인이 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사람인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인준을 받았을 것
3. 선거인이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람인 경우, 대한체육회의 등록시스템에 등록이 되어 있을 것

**제 5 조(선거인 후보자 추천의 요청)**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에 따른 선거인의 구성을 위하여 회장 임기만료일 30일 전까지 동호인 등에 대하여 제6조에 따라 해당 동호회별로 배정된 선거인 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배정된 선거인 수를 통보할 때에는 동호회별로 배정된 선거인 수의 3배수만큼 선거인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함께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가 단체별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해당단체에서 선거인 후보자를 3배수로 추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그 이하로 정할 수 있다.

- \* 선거인 후보자 추천배수는 최소 3배수 이상을 권장함. 4배수, 5배수 등 가능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단체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선거인 후보자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추천하여야 한다.

**제 6 조(선거인수의 배정)**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4조 제1항에 따른 선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거인 수를 배정한다.

1. 수원시 종목단체규정 제8조제1항에 따른 대의원
2. 시·군종목단체가 추천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 가. 시·군종목단체의 임원 1명
  - 나. 지도자 2명(전문체육 1명, 생활체육 1명)
  - 다. 심판 1명
  - 라. 선수 또는 선수이었던 사람 1명
  - 마. 체육동호인 1명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목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거인 수를 추가로 배정한다.

1. 대한체육회 선수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선수(동호인선수로 등록된 사람은 제외한다)의 수를 기준으로 상위 3분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시·도회원단체별로 2명을 배정하며, 상위 3분의 2(상위 3분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에 해당하는 경우 단체별로 1명을 배정한다.
2. 대한체육회 지도자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지도자의 수를 기준으로 상위 3분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시·도회원단체별로 2명을 배정하며, 상위 3분의 2(상위 3분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단체별로 1명을 배정한다.
3. 대한체육회 체육동호인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체육동호인의 수를 기준으로 상위 3분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시·도회원단체별로 2명을 배정하며, 상위 3분의 2(상위 3분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해당하

는 경우 단체 별로 1명을 배정한다.

③ 시·도회원단체의 임원과 시·군·구회원단체의 임원은 제2항에 따라 추가로 배정된 선거인이 될 수 없으며, 제1항 제2호 나 목부터 마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균등하게 선거인이 된다.

④ 제2항에 따른 등록 선수 수, 등록 지도자 수, 등록 체육동호인 수는 회장 임기만료일 전 50일을 그 기준으로 하며, 사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가장 최근의 자료를 기준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선거인 후보자의 추천)** ① 제6조 제1항부터 제2항에 따라 배정된 선거인 수를 기준으로 제5조 제2항에 따라 선거인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선수 및 지도자, 동호인의 임·직원이 임의로 추천할 수 없으며, 해당 직군의 후보자 중에서 무작위 추출방법에 따르거나 기타 공정한 방법에 따라 선거인 후보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종목단체에서 추천하는 선거인 후보자는 각 직군별 선거인의 수가 전체 선거인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을 넘어야 하고, 100분의 40을 넘을 수 없다.

③ 선거인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여성이 전체 선거인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 되는 것을 권장한다.

④ 제3조 제1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될 당시 종목단체가 관리단체로 지정된 경우 또는 선거일 전일까지 종목단체가 관리단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종목단체의 제6조 제1항 제1호의 사람은 선거인에서 제외하며, 제6조 제2항에 따른 선거인 추가 배정에서도 제외한다(이 경우 해당 종목단체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단체를 기준으로 상위 3분의 1, 상위 3분의 2 등 배분을 적용한다).

**제8조(선거인 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종목단체가 추천한 선거인 후보자 명단을 토대로 중복여부 및 제4조 제2항에 따른 선거인 자격 유무를 확인하여 선거인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후보자가 두 개 이상의 단체에 의하여 추천된 경우 해당 선거인 후보자의 의사에 따라 어떤 단체의 추천에 의한 선거인 후보자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며, 동일인을 추천한 다른 단체에는 재추천을 요청하지 않는다.

③ 선거인 자격이 없는 사람이 선거인 후보자로 추천된 경우에는 재추천 요청 없이 배제한다.

**제9조(선거인명부의 작성)**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을 공고한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선거인 명부를 작성 후 확정해야 한다.

②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은 다른 선거인으로 교체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선거인 명부의 작성 시 각 단체가 설정한 직군별 배분 비율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 수원시체육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선거인명부의 열람)**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 1통을 체육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선거인명부의 열람 기간은 3일로 한다.

③ 선거인명부는 열람 기간 종료일 다음날 확정한다.

④ 후보자는 선거인명부 사본의 교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인명부 확정일 전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신청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 제3장 후보자 자격 및 등록

**제11조(후보자의 자격)** ① 수원시 종목단체규정 제27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후보자가 될 수 없다.

② 회장을 포함한 비상임 임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의 임기 만료일 전 50일까지 후보자

등록의사를 사무국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장이 제2항에 따라 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을 때에는 제출한 때부터 선거일까지 수원시 종목단체규정 제22조제1항에 따른 부회장(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자는 제외한다)이 직무를 대행하되, 부회장 전원이 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은 이사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 회장은 그 다음날부터 종전의 직무로 복귀한다.

1. 제2항의 후보자 등록의사를 사무처에 서면으로 철회한 경우
2. 후보자 등록 마감일까지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3. 후보자 등록 이후 후보자에서 사퇴한 경우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국제관계 업무에 한해 회원종목단체를 대표할 수 있다.

1. 국외에서 개최되는 해당종목 대회 및 회의 등
2. 해당종목 국제경기연맹 및 아시아경기연맹이 주최하는 국내 개최 국제행사(대회 및 회의 등 포함)

⑥ 제2항에 따라 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비상임 임원은 제출한 때부터 선거일까지 회장 선거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의결 및 결재에 참여하지 못한다.

⑦ 상임임원 및 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의 임기 만료일 전 5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⑧ 다른 체육단체의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호를 따른다.

1. 체육회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의 임기 만료일 전 5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2. 다른 회원종목단체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후보자 등록 시작일 전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3.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시군구체육회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의 임기만료일 전 5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4. 시도종목단체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동조 제2항부터 7항까지를 따른다.

⑨ 회원종목단체 임직원이 시도종목단체장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의 임기만료일 전 5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⑩ 제4조제1항1호에 따른 단체의 장은 사고 또는 회장선거 이외의 선거의 출마로 인해 직무대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도 선거인이 된다. 다만, 단체장이 궐위되어 직무대행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직무대행자가 선거인이 된다.

⑪ 후보자, 회원단체의 상임 임원 및 직원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선거인이 될 수 없다.

**제12조(기탁금)** ①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등록신청 시 ○○백만원의 기탁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 무분별한 입후보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금액의 기탁금을 정하는 것을 권장

② 기탁금의 납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기탁금의 예치를 위하여 개설한 금융기관(우체국을 포함한다)의 예금계좌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의 명의로 입금하고 해당 금융기관이 발행한 입금표를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13조(후보자 등록)** ①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기간 개시일(선거인명부 열람을 시작한 그 다음 날로 한다) 2일부터 2일 동안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후보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등록신청서 접수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 후보자 등록신청서
2. 주민등록초본
3.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4. 범죄사실 유무 증명 서류
5. 후보자가 소속한 경력이 있는 체육단체가 별지 서식에 따라 발행한 후보자의 징계사실 유무에 관한 문서
6. 기탁금 또는 기탁금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퇴임 증명서(협회(연맹)의 임원이었던 경우에 한함)
8. 기타 후보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즉시 이를 수리한다. 다만, 규정에 따른 서류 등을 갖추지 아니한 등록신청은 수리하지 아니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범위를 정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산하 체육단체의 정관 및 규약이 정하는 임원의 결격사유와 협회(연맹)의 정관(규약)에서 정하는 임원의 결격사유를 취합하여 회장 임기만료 일 전 25일전까지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마감 후에 후보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등 후보등록 자격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⑥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1.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2. 규정에 따른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⑦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등록을 무효로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후보자에게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4조(후보자 사퇴의 신고)** 후보자가 사퇴하려는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등록·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 4 장 선거 및 선거운동

**제16조(선거일)**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의 임기만료일 전 10일까지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선거일을 정하여야 한다.

②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는 그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을 확정하고 선거인명부작성개시일 전일에 선거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선거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하며, 그 기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10일 이내로 정한다.

**제17조(선거운동의 정의)**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의사의 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통상적인 업무행위

**제18조(선거운동의 주체 및 방법)** 후보자가 선거공보·선거벽보·전화·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9조(선거운동 기간)**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한정한다. 다만 후보자가 선거일에 자신의 소견을 발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금지행위 등)**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지하거나 제한되는 행위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 한다) 제31조에서 제3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1조(선거방법 등)** ① 선거는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한다.  
 ② 투표는 선거인이 직접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투표는 선거인 1명마다 1표로 한다.

**제22조(투표소의 설치 등)**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일까지 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제23조(투표용지)** ①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표시하되, 기호는 후보자의 게재순위에 따라 “1, 2, 3” 등으로 표시하고, 성명은 한글로 적어야 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한자를 함께 적는다.  
 ② 후보자 게재 순서 등을 위한 후보자 번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날 추첨으로 결정하되, 추첨순서는 후보자 등록순서에 의한다.  
 ※ 후보자나 대리인이 추첨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를 대리하여 추첨한다.

- 제24조(투표시간)** ① 투표시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② 투표를 마감할 때에 투표소에 투표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부여하여 투표하게 한 후 달아야 한다.

- 제25조(투표·개표의 참관)** ① 후보자는 선거인 중에서 투표소마다 2명 이내의 투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 2일까지, 개표소마다 2명 이내의 개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표참관인은 투표참관인이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② 후보자가 제1항에 따른 투표참관인·개표참관인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투표 및 개표 참관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참관인의 선정이 없거나 한 후보자가 선정한 참관인 밖에 없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4명이 될 때까지 선정한 사람을 참관인으로 한다. 이 경우 참관인으로 선정된 사람은 본인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와 협회(연맹)의 임직원은 투표참관인·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제26조(투표의 효력 등에 관한 이의제기)** ①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는 선거관리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 제기를 하려는 후보자 및 선거인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투표의 효력에 관하여는 선거일을 말한다)부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27조(기탁금의 처리)**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의 기탁금은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전액을 반환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협회(연맹)에 귀속한다.

단, 후보자 등록 마감이후 사퇴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기탁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 5 장 당 선 결 정

**제28조(당선인 결정)** ① 유효투표 중 다수의 득표를 한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다수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 후보자가 1명인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29조(당선무효)** 회장 당선인이 정관(규약)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제30조(회장 당선인 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 당선인이 결정되면 선거일 다음날에 즉시 회장 당선인을 협회(연맹) 홈페이지 및 체육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 6 장 보 칙

**제31조(재선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후보자가 없는 경우
2. 당선인이 없는 경우
3.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무효 결정이 있는 경우

**제32조(보궐선거)** ①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고,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궐선거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33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선거관리위원회는 「위탁선거법」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중지, 경고, 시정 명령,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4조(벌칙)** 선거관리위원회는 정관(규약) 및 이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하여 적발된 자에 대하여 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35조(그 밖의 사항)** 협회(연맹) 선거와 관련하여 정관(규약) 및 이 규정 등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36조(총회에서의 회장 선출)** ① 협회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회장선출기구에서 회장을 선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대의원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장을 선출하려는 경우, 협회(연맹)는 회장을 선거인단이 아닌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는 것 이외에는 이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37조(체육회의 시정 지시 이행)** 회장선거의 절차, 운영 등과 관련하여 체육회 또는 시·도체육회가 시정 지시를 하는 경우, 협회(연맹)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38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에 따른 첫 회장 선거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의결로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시기, 회장의 사퇴일, 선거인후보자 추천, 선거인명부의 작성, 선거인명부의 열람기간, 회장의 결격사유 게시일 등 선거 일정 및 각종 판단의 기준일 등을 단축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이 규정 시행 후 실시되는 첫 번째 선거에 한해서는 종목단체의 사정에 따라 이 규정 제4조부터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종목단체 대의원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

### 선거인 후보자 추천 명단

공문 접수일:      년      월      일

단체명	성명	성별	생년월일	소속 및 직위	주소	전화번호	e-mail	비고

주: 1. 단체명은 선거인 후보자 추천 단체의 이름을 적습니다.(예시-수원시00동호회 등)

[별지 제2호 서식]

## 후 보 자 등 록 신 청 서

1. 성 명: (한자: )
2. 생 년 월 일:
3. 등록기준지:
4. 주 소: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5. 직 업:
6. 학 력:
7. 경 력:
8. 계 좌 번 호: ○○ 은행 ○○○-○○○-○○○○○○○ (신청자와 입금주 동일)

년 월 일 실시하는 수원시○○협회 회장선거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

수원시○○협회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1. 회장선거규정 제13조제2항의 서류  
2. 이력서 1부.(자율 양식)

- 주: 1. 성명은 주민등록초본에 기록된 성명을 그대로 적어야 하며, 신청서에 기재된 성명이 주민등록초본에 기록된 성명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2. 학력은 최종학력을 적고 경력은 중요한 사항(2개 정도)만을 적습니다. 그 외 세부사항은 이력서에 적어 제출합니다.
3. 등록기준지는 주민등록초본에 기록된 대로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4. 첨부서류는 주민등록초본 외에 해당 법령이나 기본규정 등에 따른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의 목록을 적고 그 서류를 제출합니다.

[별지 제3호 서식]

## 임원의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서약서

성 명:

생년월일:

위 본인은 제○대 수원시○○협회장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함에 있어 수원시○○협회 규약(또는 기본규정) 및 회장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하는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 등록무효, 당선무효 및 법률적 책임을 다할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수원시○○협회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별지 제4호 서식]

## 후보자 징계사실 유무 확인서

수원시○○협회 선거관리위원장 귀하	
< 후보자 인적사항 등 >	
성 명	
주민등록표 상 생년월일	
징계사실 유무	<input type="checkbox"/> 징계사실 있음 <input type="checkbox"/> 징계사실 없음
< 징계내역 >	
① 징계내역 1	
징계일자	년 월 일
징계사유	<input type="checkbox"/> 승부조작 <input type="checkbox"/> 편파판정 <input type="checkbox"/> 폭력·성폭력 <input type="checkbox"/> 횡령 <input type="checkbox"/> 배임 <input type="checkbox"/> 직권남용 <input type="checkbox"/> 직무태만 <input type="checkbox"/> 기타( )
징계 시 신분 및 징계종류	<input type="checkbox"/> 선수 ☞ <input type="checkbox"/> 제명 / <input type="checkbox"/> 자격정지(기간: )
	<input type="checkbox"/> 지도자 ☞ <input type="checkbox"/> 제명 / <input type="checkbox"/> 해임 / <input type="checkbox"/> 자격정지(기간: )
	<input type="checkbox"/> 심판 ☞ <input type="checkbox"/> 제명 / <input type="checkbox"/> 강등 / <input type="checkbox"/> 자격정지(기간: )
	<input type="checkbox"/> 임원 ☞ <input type="checkbox"/> 제명 / <input type="checkbox"/> 해임 / <input type="checkbox"/> 자격정지(기간: )
	<input type="checkbox"/> 직원 ☞ <input type="checkbox"/> 파면 / <input type="checkbox"/> 해임 / <input type="checkbox"/> 강등 / <input type="checkbox"/> 정직(기간: )
	<input type="checkbox"/> 기타 회원 등( ) ☞ <input type="checkbox"/> 제명 / <input type="checkbox"/> 자격정지(기간: )
② 징계내역 2	
	이하생략
「회장선거규정」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징계사실 유무를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단체장명 (직인)	

[별지 제5호 서식]

## 제○대 회장선거 후보자 등록부

년 월 일

연번	일자	후보자명	생년월일	직업 및 직위	주소	전화번호	비고



[별지 제6호 서식]

## 제○대 회장선거 후보자 등록 접수증

### ⊙ 후보자

- 성명 : (한자 : )
- 생년월일 :
- 주소 :
- 직업 및 직위 :
- 접수일자 : 년 월 일
- 접수번호 :

상기와 같이 접수 확인함.

## 수원시○○협회 선거관리위원회

-----절-----취-----선-----

### 접 수 증

- 후보자성명 : (한자 : )
- 생년월일 :
- 주소 :
- 직업 및 직위 :
- 접수일자 : 년 월 일
- 접수번호 :

상기인이 년 월 일 실시하는 수원시○○협회 회장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수원시○○협회 선거관리위원회

[별지 제7호 서식]

## 후보자 사퇴 신고서

- 후보자성명 : (한자 : )
- 생년월일 :
- 주소 :
- 직업 및 직위 :
- 접수번호 :
- 사퇴사유 :

본인은 년 월 일 실시하는 수원시○○협회 회장선거의 입후보를 사퇴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후보자 (인)

수원시○○협회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별지 제8호 서식]

# 공 고

수원시○○협회 제○대 회장 선거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음

1. 회장 선거일

- 일 시 :    년    월    일    시
- 장 소 :

2. 회장 후보자 등록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시까지(○일간)

3. 선거운동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시까지(○일간)

년    월    일

수원시○○협회 선거관리위원회

## 투표용지

연번

### 제○대 수원시○○협회장 투표용지

기호	1	2	3	4
후 보 자 성 명				
기표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별지 제10호 서식]

## 선거인 투·개표 참관인 신고서

년 월 일 실시하는 회장선거의 투·개표 참관인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1. 후보자 성명 :
2. 참관인 인적사항

구분	번호	소 속	성 명	성별	생년월일	비고
투표 참관인						
개표 참관인						

년 월 일

신고자 : (인)

수원시○○협회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별지 제11호 서식]

## 본 인 승 낙 서

1. 소 속:
2. 직 위(직 급):
3. 성 명:
4. 생 년 월 일:
5. 주 소:
6. 전 화 번 호:

위 본인은 「회장선거규정」 제25조제3항에 따른 (투표·개표) 참관인으로 위촉됨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승 낙 인 ○ ○ ○ (인)

수원시○○협회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개표결과 보고서

### 1. 개표결과

기 호	성 명	득표수
1		
2		
3		
4		
무 효 표		
계		

후보자            는            년    월    일 실시한 제○대 수원시○○협회 회장선거 개표결과            표를 득표하였기에 당선인으로 결정하였음.

이 개표결과 보고서는 사실대로 기록·작성하였음.

년            월            일

선거관리위원:	(인)	선거관리위원:	(인)
선거관리위원:	(인)	선거관리위원:	(인)
선거관리위원:	(인)	선거관리위원:	(인)
선거관리위원:	(인)	선거관리위원:	(인)
선거관리위원:	(인)	선거관리위원:	(인)

수원시○○협회 선거관리위원회 귀하

[별지 제13호 서식]

(선거·당선·투표의 효력)·(선거사무관리)에 관한 이의신청서

이 의 제기자	성 명	(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이의사실	이의제기 내용			
	이의제기 사유			
<p>년 월 일 실시하는 수원시○○협회 회장선거에서 「회장선거관리규정」 제26조 단서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제기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이의제기자 ○ ○ ○ (인)</p> <p><b>수원시○○협회 선거관리위원회 귀중</b></p>				

주: 1. 이의제기 사유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이의제기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첨부합니다.



[별지 제14호 서식]

## 회장 당선인 공고

년 월 일 실시한 선거에서 결정된  
제○대 수원시○○협회 회장선거 당선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당 선 인

○성 명 :

○생년월일 :

○직업 및 직위 :

년 월 일

수원시○○협회 선거관리위원회

[별지 제15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선거 후보자 제출 양식)

수원시○○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수원시○○협회 **선거 후보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구분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필수	1. 성명, 주소, 생년월일, 직업, 학력, 경력,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 등 2. 주민등록초본(생년월일 포함) 3.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4. 징계사실 유무에 관한 확인서 5. 임원결격사유의 부존재 확인을 위한 본인 서약서 6. 사직 또는 퇴임 증명서류	후보자 본인 확인, 자격 검정, 선거 후보자 공보 발송	<b>선거 관련 법적 확인용 ○년 보관</b>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 등	선거 관련 안내문 발송	
	성명, 은행명, 계좌번호	위탁금 반납 시 사용	<b>선거 관련 법적 확인용 ○년 보관</b>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회장선거 등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자	제공하는 개인정보	제공받는 자의 수집·이용 목적	제공받는 자의 보유기간
수원시○○협회 선거 관련 대의원	1. 성명, 주소, 생년월일, 직업, 학력, 경력,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 2. 징계사실	선거 후보자 검증	<b>선거 종료 후 즉시 파기</b>
수원시○○협회 선수, 지도자, 동호인	3. 임원결격사유 4. 사직 퇴임여부	선거 민원업무 관련 처리	<b>선거 관련 법적 확인용 ○년 보관</b>

※ 위의 개인정보 제공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고지 받았습니다. (예, 아니오)

년    월    일

본인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

수원시○○협회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별지 제16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선거인 후보자 제출 양식)

수원시○○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수원시○○협회 선거인 후보자(대의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구분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필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소속, 직업, 전화번호, 이메일, 단체명 등	대의원 본인 확인 및 선거 투표 시 확인	<b>선거 관련 법적 확인용</b> <b>○년 보관</b>
	전화번호, 이메일 등	선거 관련 안내문 발송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후보자 안내가 지연되거나 투표 후보자 선정 및 투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자	제공하는 개인정보	제공받는 자의 수집·이용 목적	제공받는 자의 보유기간
수원시○○협회 선거관련 후보자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단체명	선거 후보자 공약 안내	<b>선거 종료 후 즉시 파기</b>
수원시체육회 수원시○○협회		선거 민원업무 관련 처리	<b>선거 관련 법적 확인용</b> <b>○년 보관</b>

※ 위의 개인정보 제공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고지 받았습니까.** (예, 아니오)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수원시○○협회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별지 제17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투·개표 참관인 제출 양식)

수원시○○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수원시○○협회 선거 **투표·개표 참관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구분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필수	소속, 직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	선거일 투표·개표 참관인 본인 확인	<b>선거 후 법적 확인 관련</b> <b>○년 보관</b>
	성명, 전화번호	선거 관련 안내문 발송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투표·개표 참관인으로서의 선정 및 선거당일 본인확인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자	제공하는 개인정보	제공받는 자의 수집·이용 목적	제공받는 자의 보유기간
수원시체육회 수원시○○협회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선거 민원업무 관련 처리	<b>선거 관련 법적 확인용</b> <b>○년 보관</b>

※ 위의 개인정보 제공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고지 받았습니다. (예, 아니오)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수원시○○협회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스포츠응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수원시체육회**

# 수원 스포츠 응원단

##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 정 2021. 04. 27.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원시 체육진흥조례 제17조 제2항 및 수원시체육회 규정 제4조에 따라 수원을 대표하여 경기도체육대회 및 국내외 각종대회에 출전하는 수원시 선수단을 응원하여 팀에 활력과 사기를 진작시키고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수원시 체육발전 및 홍보에 기여하기 위한 “수원 스포츠 응원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단체의 명칭은 “수원 스포츠 응원단”(이하 응원단)이라 칭한다.

### 제 2 장 사 업

**제3조(사업)** 응원단은 제1조 목적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각종 국내·외 대회에 출전하는 수원시 선수단 응원.
2. 스포츠를 수원시의 문화상품으로 육성, 보급, 홍보하는 사업에 적극 참여.
3.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참여.
4. 수원시의 각종 체육, 문화행사에서 적극 참여.
5. 수원시의 문화교류 사업 참여.
6. 그 밖에 응원단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한다.

### 제 3 장 구 성

**제4조(구성)** 응원단의 구성은 아래의 각 호와 같이 한다.

1. 응원단은 집행부(단장, 부단장, 간사), 운영위원, 팀장, 단원으로 구성한다.
2. 응원단은 수원시내 거주하는 시민으로 모집하여 구성한다.
3. 응원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자문위원 둘 수 있다.

**제5조(위촉)** 단원 위촉은 아래의 각 호와 같이 한다.

1. 단장은 복수로 추천하고 추천자 중 1인에 대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2. 부단장은 1명에 대하여 수원시체육회 사무국장이 위촉한다.

3. 간사는 단장이 추천하여 추천자에 대하여 수원시체육회 사무국장이 위촉한다.
4. 운영위원 및 자문위원은 추천·선발에 의하여 수원시체육회 사무국장이 위촉한다.
5. 응원단 팀장 및 단원은 모집·선발에 의하여 수원시체육회 사무국장이 위촉한다.

**제6조(임기)** 응원단의 임기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집행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팀장, 단원 및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전임단장 및 팀장은 응원단의 자문위원으로 추대할 수 있다.
3. 스포츠응원단의 활동기간은 임명된 해 3월부터 시작해 2년이 경과한 해의 2월 말까지로 한다.

## 제 4 장 운 영

**제7조(운영비)** 응원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수원시체육회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개정 2021. 04. 27.>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